

남북중심분리 현상 자원지상

주한미군 및 자주전통제권 분리 현상과 전쟁

1996. 11



남북회담사북국

목 차

I. 개 황	3
II. 주한미군의 주둔현황과 역할	5
1. 주한미군의 주둔 및 변천경과	5
2. 주한미군의 현황 및 주요현안	16
3. 주한미군의 안보상 역할	28
III. 작전통제권의 변천과 한·미 안보협력체제 발전과정	33
1.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이양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33
2. 한·미 연합방위체계 발전과정과 작전통제권	41
3. 한·미 안보협력체제 현황과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50
IV. 주한미군 및 작전통제권 문제 관련 남북한 주요주장	60
1. 북한측 주장	60
2. 우리측 입장	69
3. 남북회담시 쌍방주장 비교	79
V. 주한미군의 장래 및 전시작통권 환수관련 정책적 고려사항.....	106

1. 주한미군 문제	106
2. 작전통제권 문제	126

〈부 록〉

1. 북한측 주장 원문	137
가. 주한미군 철수문제	137
나. 작전통제권 문제	193
2. 한·미 안보협력체제 관련자료	209
3. 참고 문헌·자료	299

I. 개 황

- 주한미군 주둔 및 한·미 연합작전지휘체계는 한·미간 안보협력에 있어 핵심적 내용을 이루는 사안으로 한반도 전쟁억제 및 동북아 안정을 유지하는데 크게 공헌하여 왔음.
 -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고 6·25전쟁과 같은 북한의 기습공격시 미군의 자동개입 등 「인계철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한·미 연합군에 의한 연합지휘체계의 활용은 이러한 한·미 안보 협력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효과적인 작전수행을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들어 주한미군의 장래규모·역할문제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한국의 자주국방 노력,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필요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남북한 협상에서 전제조건화함으로써 대남 압력수단으로 최대한 이용하는 한편,
 - 대내·외적으로 주요 계기마다 정부담화·군축방안 발표, 각종 선전매체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존재를 「미군의 남조선 강점」으로 왜곡·선전함으로써 이른바 「반외세 남조선 해방 논리」의 근거로 이용하고 있음.
 - 다만, 최근들어 북한측은 미·북관계 개선노력과 대미평화협정 체결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변화 및 장기주둔에 대한 전술적 인식변화를 보이고 있음.

-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문제에 관해 북한측은 한국정부의 대미종속성 주장과, 특히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시 한국의 당사자 자격 시비시의 주요 논거로 제기하여 왔음.
 - 한국의 당사자 자격에 대해 북한은 “군통수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조선 강점 미군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미·북간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의 한국배제 의도를 드러내 보이고 있음.

- 특히 향후 전개될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4자회담」 등에서도 이러한 북한측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주한미군의 장래문제(규모·역할 등)에 대한 전망과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주한미군의 장래규모와 역할에 관련해서는 미국측의 외교정책 특히 동아시아 정책과 이 지역에서의 미군주둔전략의 변화, 국방예산편성 등 미국내 정치사정, 한국측의 정책방향 및 국민여론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 및 방법의 결정에는 주한미군의 장래규모와 역할, 한국군의 국방력·정보전력 강화,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미간 지휘체계문제 대비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봄.

II. 주한미군의 주둔현황과 역할

1. 주한미군의 주둔 및 변천경과

- 주한미군의 주둔연혁에 관한 시대적 구분은 미군의 주둔성격이나 규모 및 주된 역할 등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구분이 시도되고 있음.
 - 주한미군 주둔효과의 상징성에 따라 제1기 일방적 의존기(1950~1960년대 중반), 제2기 전우관계기(1960년대 중반~1969년), 제3기 불안한 협력기(1970~1979년), 제4기 동반자관계기(1980~현재)로 구분(차영구, Northeast Asian Security : 하영선,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 한·미 군사관계의 역할배분에 초점을 둔 제1기 미군주둔기(1945~1979년) 제2기 동반자관계기(1980년대), 제3기 한국군주도 미군보조기(1990년대)로 구분(조선일보, 1995. 9. 7)
 - 한·미 동맹관계의 제도적 차원에서 제1기 일방적 의존기(1945~1970년대말), 제2기 동반자관계기(1980년대~현재)로 구분(유재갑, 『주한미군과 한·미 안보협력』)
 - 주한미군의 성격에 의한 구분은 제1기(1945~1949년), 제2기 한국안보의 통제자(1950~1969년), 제3기 스파이크만식 균형자(1969~1980년), 제4기 토크빌로의 복귀(1981년~1989년) 등으로 나누는 견해(강성학, 『주한미군과 한·미 안보협력』)가 있음.
- 본고에서는 미국내 주한미군 철수론 등장에 따른 주한미군 규모의 변화에 따라, 제1차 철군(1949년)으로부터 제5차 철군(1990년대)에 걸친 「철군 또는 감군문제」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기로 하며(이춘근, 『주한미군과 한·미 안보협력』), 향후 주한미군의 장래문제에 대

해서는 별도의 장(V)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가. 주한미군의 최초 주둔

○ 주한미군의 최초 주둔경과

- 1945년 8. 15 일본군의 항복
- 동년 9. 2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일반명령 제1호」(General Order No.1)에 의거
- 9. 8 미군 제24군단(3개 사단) 인천항 상륙
- 9. 10 서울에 「주한미군사령부」설치, 9. 12 아놀드 소장 군정장관으로 임명
- 10.21 국립경찰 「경무부」 창설, 11.13 경무국과 군사국을 통합 「국방사령부」 창설
- 1948. 8. 24 「한·미 잠정군사협정」에 의거 「임시군사고문단」(PMAG :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설치

○ 주한미군 주둔의 성격

- 주한미군의 한반도 38선 이남 주둔은 태평양전쟁시 패전 일본군의 무장해제 등 전후처리를 위한 군사적 편의에 의한 것이었음.
- 따라서 주한미군은 순수한 「점령군」으로 주둔, 효과면에서는 한국민의 「해방군」으로서의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었음.
- 주한미군의 주임무는 남한내 질서유지, 「주한미군사령부」는 남한내 유일한 통치기구로 전국적 행정기능을 수행했음.

○ 이 시기 미국의 한국주둔 전략

- 미국은 제2차대전 전후처리 과정에서 소련(스탈린)의 동북아 남진을 막아야 한다는 소극적 방어적 목적에서 미군을 한반도에 진주시켰으며, 유럽중시의 세계전략 구도아래 미군진주와 관련한 정당하고 확실한 전략이나 장기주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음.
- 미국에 있어 남한의 전략적 중요성은 미·소의 대결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부각되었음.

나. 제1차 철군(완전 철군)

○ 철군의 배경·경과

- 1948. 8. 15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 1948. 9. 19 북한지역 주둔 소련군 철수 발표시 주한미군도 철수계획, 여·순반란사건으로 철수 지연
- 1949. 6. 29 500여명의 군사고문단을 제외한 주한미군 완전철수

○ 주한미군 철수의 영향

- 미국의 군사적 자신감 및 한반도의 군사전략적 가치 과소평가 (1949. 3 맥아더 장군의 발언)
- 1950. 1. 21 미 국무장관 애치슨(Dean Acheson)의 선언
 - 남한을 소련과 그 위성국가들에 대처하는 「방어선」(a line of defense) 밖에 둠
 - “방어선 밖에 있는 지역이 침략을 격퇴할 능력이 없다고 판명된다면 그 지역의 독립을 보호하는 일은 유엔헌장하의 모

든 문명세계에 달려있다”고 선언

- 1950년 북한군 6·25남침의 기회 제공

○ 이 시기 주한미군의 역할

- 순수한 정치적 후견자로서 기능

-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 사고를 결여한 불완전한 후견자로서, 소련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를 모면하기 위해 조기철수를 택함.

다. 미군의 재주둔과 정전후 감군(2차 철군)

○ 재주둔 경위

- 6. 25 전쟁발발에 따른 UN의 참가결의에 근거

• 6. 25 공산침략행위 정치요구 결의(S/1501호)

• 6. 27 대한민국에 대한 원조 결의(S/1511호)

• 7. 7 총회의 「주한 유엔군사령부」설치 결의(S/1588호) 등

- 한국전쟁 기간중 주한미군은 한때 36만 이상 참전(제8군 10군단 병력 총 7개 사단, 해병 1개 사단, 공군, 해군)한 바 있음.

* 휴전협정 서명('53. 7. 27) 당시 32만 5천명 주둔

○ 철군 경위

- 1954년 3월 미군 제45사단 병력 철수를 시작으로 1955년까지 주한미군 8만 5천명선까지 철수

- 1954~1957년간 육군 2개 사단(제2, 7사단) 7만여 명을 제외하고 대폭 철수

○ 철군의 영향

- 휴전협정 조인과 2차 철군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안보동맹체제 강화를 위해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 동 조약 제4조의 『미국은 한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그들의 육·해·공군을 배치할 권리 인정』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증강을 미국측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라. 제3차 철군(감군)

○ 철군의 배경·경위

- 1963년 미국방부의 주한미군 감축 논의
- 1965년 한국군 베트남 파병결정으로 논의 유보
- 1969. 7. 25 닉슨 대통령의 「팜 독트린」 발표
 - “아시아 국가들은 공산침략에 대비하여 대미의존을 버리고 스스로 안보체제를 수립해야 함“ (미 지상군 개입회피, 핵우산에 의한 보장)
- 1970. 5 미 국방부, 주한미군 1개 사단 철수계획 수립
- 1970. 7. 6 포터 주한 미대사, 주한미군 1개 사단 감축계획 공식통보
- 1971. 2월 양국 국방장관회의와 애그뉴(Agnew) 부통령의 한국 방문 후 주한미군 철수에 따르는 「한국군 근대화 조건」에 대한 합의 발표
- 1971. 3. 27까지 주한미군 제7사단 병력 2만명 철수완료, 철수 후 병력 4만명으로 축소

○ 3차 철군(감군)의 영향

-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국회결의와 내각총사퇴 불사론을 내세워 미군감축에 반대
- 1973 미 국방부 제2차 축소계획 입안, 실제철수는 이루어 지지 않음.
 - 3차 철군 과정에서 한국에 대해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의 소요자금 지원 결정

마. 제4차 철군(감군)

○ 철군 배경

- 1977. 1 주한미군 감축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카터 대통령 취임
- 1977. 3. 9 카터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향후 4~5년이내에 모든 주한미군 지상전투력 철수' 발표
- 1977. 5. 5 대통령 검토각서(PRM)에서 1982년까지 3단계 철수안 구체화
- 1977. 7. 26 제1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브라운 국방장관 공식 언급
- 카터 행정부는 남한의 경제력 성장과 남북한 군사력 균형의 낙관적 평가, 중·소의 한반도 전쟁재발 불원의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개입 의지 천명만으로도 전쟁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

○ 철군 경위

- 3단계 철수계획
 - 제1단계(1978~1979) : 제2사단 1개여단과 기타 지원병력 등

6천여명 철수

- 제2단계 : 보급·지원병력 등 9천여명 철수
- 제3단계(1981~1982) : 잔여 2개 여단과 사단본부 철수
- 지상군 철수 이후 증강된 공군과 정보통신부대는 계속 주둔
- 미 의회와 군부(특히 주한 미8군 참모장 싱글러브 소장 등)의 반대에 직면, 카터는 1978. 4 주한미군 철수계획 수정 성명(1단계 철수로 한정)
- 1978년까지 3천여명 감축
- 1979. 2월 철군계획 잠정중지, 7월 공식 동결

○ 철군의 성격

- 주한미군의 제4차 철군은 카터 행정부의 인권외교, 박동선 사건 등으로 한·미관계가 악화된 시점에서 추진
- 1970년대 미국의 세계 및 아시아 전략의 변화 반영
 - 1970~71년간 아시아 주둔 미군 32만여명을 철수
 - 대한민국 미군사원조 감소 : 1969년 한국의 총군사비 중 미국의 군사원조 비율 50% 이하로 감소, 1974년 10%, 1977년에는 대한 군사원조 종료

바. 제5차 철군(감군)

○ 철군 배경

- 1978. 11. 7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연합방위전략 강화로 주한미군 철수안 백지화

- 종래의 무상원조와 경제원조에 의한 ‘안보지원관계’(Security Assistance)에서 ‘연합방위계획’(CDIP :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lan)이나 ‘군사비 분담관계’(Military Cost Sharing)로 발전
- 한·미간 「새로운 안보동반자관계」에 관한 인식 확산
 - 1986. 12. 16 '87년도 대한 군사판매차관(FMS) 종결 발표
 - 1987. 2. 25 리차드 아미티지 국방차관,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회 청문회 증언시 “이제 한국은 신흥공업국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한·미 양국의 관계도 과거 ‘보호-피보호관계’를 탈피하고 ‘새로운 안보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킬 단계’로 표현
- 1988년 서울올림픽 기간 중 주한미군 일부 증강(2~3천명)
- 1989. 6 레빈 미 상원의원, 5년이내 주한미군을 만명으로 감축하자는 「단계적 감축안」 제기
- 범퍼스 의원 등 6명, 「주한미군 감축법안」 제출
- 1989. 9. 26 동 법안을 “감축에는 반대하되 한국의 방위분담은 늘린다”는 「스티븐슨 수정안」으로 통과
 - 1992년 10월이후 주한미군 지상군을 2만1천명 수준으로 한정
 - 최단시일내 한·미간 연도별 감군규모와 한국측 추가 군사장비에 관한 협의 시작
 - 1990년 5월까지 서울소재 5개 기지 재배치 방안과 지상군 전면철수와 미군전병력 철수의 타당성 검토, 군사장비별 잔류검토 및 유지비용 추산, 한국의 방위부담 증가시 미국의 기술제공 및 계획수립상 지원 등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감축보고서」 제출 등

- 미 의회는 감축, 행정부 측에서는 현상유지 주장
- 1989. 7. 18 제2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워싱턴)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 한, 그리고 한·미 양국정부와 국민이 미군의 주둔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 한 계속 주둔하여야 한다”고 발표

○ 철수 경위

- 1989년 7월 Sam Nunn의원과 John W. Warner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년-워너수정안」이 1990회계년도 예산법안의 일부로 상원 통과
 - 동 수정안은 미국이 동아시아 및 한국내 주둔 군사력의 위치·전력구조·임무를 재평가하고, 한국은 자신의 안보를 위해 보다 많은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부분적·점진적 감축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임.
 - 1990. 4. 10까지 미 대통령에 대한국 협상결과 보고, 발효일로부터 1년이내 추가보고 제출을 규정
 - 1차보고서에 포함할 내용 : 중·소의 최근변화가 미국과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에 미치는 의미 평가, 미군의 주둔위치, 전력구조, 임무의 조정방향, 동맹국의 방위분담 방법에 관한 협의내용 등과 아울러 주한미군의 지역안보역할 필요성 여부를 포함한 「주한미군 장래에 관한 5개년 계획」 등임.
 - 「주한미군의 장래에 관한 5개년 계획」에 포함할 내용 : 주한미군을 한반도 전쟁억제의 주도역할에서 지원역할로 변경하기 위한 재조정, 주한미군의 직접주둔비용의 한국측 부담증

대, 한국민과 주한미군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미군인원 및 시설위치 재조정, 특정 군사임무 및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전하기 위한 신뢰구축조치, 기타 한국의 추가적 책임증대 조치 등임.

- 미 행정부의 의회보고서 제출
 - 1990. 4 제1차 보고서(EASI I)
 - 1992. 5 제2차 보고서
- 「년·워너 수정안」에 따른 미국방성의 3단계 주한미군 재조정 계획안
 - 1990. 2. 10 체니 국방장관, 주한미군 감축 발표후, 아시아 순방시 내용 조정

구 분	병 력 감 축	휴전협정 관리 체제	연합지위 체제
제1단계 (’90~’92)	• 육·공군 6,987명 (육군 5,000, 공군 1,987)	• 군정위 수석대표 한국군 장성 보임 • JSA 한국 경비병 증가	• CFA 해체 • GCC 분리/한국군 사령관 임명 • 작전통제권 환원 검토
제2단계 (’93~’95)	• 감축완료시 미 2사단 2개 여단, 7공군 1개 전투비행단 규모로 재편 * 북한 핵개발 연계 일단 보류	• JSA 경비 임무 인수	• CFC 해체 • GCC 분리/한국군 사령관 임명 • 작전통제권 환원 검토
제3단계 (’96이후)	• 북한 위협정도, 억제 개념, 미군의 지역역할에 따라 주둔규모 결정(최소규모, 장기체류)	• 미 2사단 책임 지역 인수	• 전시작통권 환원 • 한·미기획사령부 정착 • 한·미병렬체제 발전 * 용산기지 이전

자료 : DoD, A Strategic Framework(1990, 1992), pp. 12~25 : 유재갑 외, 앞의 책에서 재인용

- 이 같은 주한미군 감축계획은 「제1단계 감축」 이후 북한 핵 문제 돌출로 「2단계 철수」는 무기정지 상태에 놓임.

- 1991. 11. 21 체니 국방장관, 주한미군 철수중지 공식발표

〈제1단계 감군완료 후의 주한·주일미군 규모〉

군 별	일본 주둔 미군	한국 주둔 미군
총 병력	45,227	37,413
지상군	1,978	27,000
해군(연안배치)	6,498	400
해병대	21,511	500
공군	15,440	9,513

자료 : DoD, Asia-Pacific Strategic Framework Report(Washington, D.C : GPO, July 1992); 유재갑 외, 앞의 책에서 재인용

2. 주한미군의 현황 및 주요현안

가. 주한미군의 규모

○ 주한미군의 규모 추이

- 주한미군은 1945. 9. 8 최초 주둔 이래 크게 5차에 걸친 철군(감군) 과정을 겪어 왔으며
- 현재 주한미군의 총 병력수는 3만 6천여 명임.

〈주한미군 규모의 변화추이〉

연 도	병 력 규 모	연 도	병 력 규 모
1945	72,000	1961	58,000
1947	40,000	1962	57,000
1948	16,000	1963	57,000
1949	500	1964	63,000
1950	214,000	1965	62,000
1951	253,000	1966	52,000
1952	266,000	1967	56,000
1953	325,000	1968	67,000
1954	223,000	1969	61,000
1955	85,500	1970	54,000
1956	75,000	1971	43,000
1957	70,000	1972	41,000
1958	52,000	1973	42,000
1959	50,000	1974	38,000
1960	56,000	1975	42,000

연 도	병 력 규 모	연 도	병 력 규 모
1976	39,000	1985	42,000
1977	42,000	1986	43,000
1978	42,000	1987	45,000
1979	39,000	1988	46,000
1980	39,000	1989	44,000
1981	38,000	1990	43,000
1982	39,000	1991	43,000
1983	39,000	1992	36,400
1984	41,000	1993~95	36,400

* 자료 : 유재갑 외, 앞의 책에서 재인용

-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군규모 11만 5천여 명에서 주한미군의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정도임.

지 역	주한미군	주일미군	7합대	주팜미군
병력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단 : 1개 •전차 : 160대 •장갑차 : 310대 •전술기 : 84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단 : 1개 •전차 : 70대 •장갑차 : 208대 •전술기 : 20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정 : 64척 •전술기 : 140대 	
총 병 력	36,250명	44,800명	27,000명	7,050명

* 자료 :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 참고로 동북아지역 미국과 주변4국과 전력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국 가	동북아 미군	중국군	러시아 극동군	일본자위대
육군(명)	115,100	2,930,000	560,000	237,700
공군(대)	424	6,960	1,760	1,219
해군(척)	64	1,843	380	204

* 자료 :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나. 주한미군 기지 현황

○ 주요기지 현황

－ 용산기지

- 주한미군사령부, 미 8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소재
- 일제시대 일본군 군사시설(한국주차 일본군사령부(1906)→조선군사령부(1914), 2차대전 종전후 미군(제7사단) 접수(1945. 9. 13), 휴전이후 재진주(1953. 8))

－ 미 제2보병사단

-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지에 20여개 기지에 분산
- 캠프 케이시(사단본부), 캠프 레드 클라우드(과거 한·미야전사), 캠프 보니파스(판문점 JSA경비대) 등

－ 오산 공군기지

- 제7공군 제51전투비행단, 제314 항공사단
- 항공통제센터(TACC : Theater Air Control Center), 중앙방공관제센터(MCR : Master Control & Reporting Center), 전투작전정보지원센터(KCOIC : Combat Operations Intelligence Center) 소재
- 제7공군의 기타 기지 및 비행장으로는 김포, 수원, 원주, 청주, 군산(제8전투비행단), 대구, 광주 등

○ 주한미군 토지공여 현황

(1995. 8 현재)

기 지 수	공 여 면 적 (만평)			
	계	전 용	지 역 권	임 시
96개소	8,028	4,172	1,026	2,830

- 전용면적 토지는 전체면적의 52%를 차지
- 용산기지의 경우, 주변지가를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간접비용 발생

○ 주한미군 기지이전 추이

- 주한미군 기지와 관련 서울시 개발계획과의 부조화, 기지촌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음.
- 1990년부터 추진한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1단계로 주한미군 골프장을 폐쇄, 가족공원으로 개방('92. 11. 5)
- 미국의 입장에서조차 비용절감 차원에서 '88년 이후 본격화되어온 미군기지 조정·폐쇄(BRAC : Base Realignment and Closure)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기지 조정·이전에는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임.

다. 주한미군의 화력

○ 주한미군 주요장비 현황

구 분	장 비 명	수 량
지상장비	전차(M1A1)	140
	보병전투차량(M2)	180
	다연장로켓(ATACMS미사일 포함)	40
	자주포	50
	대포레이다(AN-TPQ37)	5
	어벤저 대공미사일 시스템	40
	패트리엇 미사일	48
	공격용 헬기(아파치 등)	147
수송용 헬기(UH-60 등)	165	
항공장비	F-16 전폭기	80
	A-10 지상공격기	21
	U-2 정찰기	3

* 아파치헬기 추가배치 24대(1개 대대) 포함

○ 주요장비 제원

— M1A1 전차

- 120mm주포 정착, 최신 사격통제장비로 주행중 발사 가능
- 최고시속 72km, 화생방전 수행능력, 특수장갑

— ATACMS 다연장 로켓

- 960~1,000개 자탄, 사정거리 150km
- 축구장 2~3개 크기의 지역 초토화 가능

— AH64 아파치 헬기

- 16발의 헬파이어 대전차미사일, 76발의 2.75인치 로켓, 30mm 기관포(포탄 1천 2백발)등 탑재

- 항속거리 6백여 km(북한전역 포괄)
- 야간 또는 악천우시 야간항법 및 조준장비 활용
- 아파치헬기 2개 대대(48대)는 북한 기계화사단 장비의 75% 파괴가능
- M2 보병전투차량
 - 병력수송외에 공격기능 보완
 - 25mm 기관포, 토우미사일 2기(5~6기 추가 탑재)
- F16 전폭기
 - 사정거리 20~40km의 매버릭 공대지미사일, 사정거리 40km의 자동추적 암람(AMRAAM) 공대공미사일 등 탑재
- A-10 지상공격기
 - 일명 「탱크킬러」, 7t의 폭탄 및 미사일 탑재, 적전차 등 기계화부대 공격
- 그 밖에 공중정찰기로 U-2R기, OV-ID, RF-4정찰기 등
- 이 같은 주한미군의 화력을 돈으로 환산한 가격은 1992년 국방부의 추산에 따르면 259억 달러(약 20조원)로 추정
 - 전차 등 주요장비 45억 달러
 - 일반 장비 및 물자 33억 달러 등
 - * 현재는 그보다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

라. 주한미군의 훈련

- 한국군과 주한미군과의 합동훈련으로는 팀스피리트를 비롯해 독수리, 울지포커스, RSOI, 레피드선더 등 10여 종류가 있으며, 기

타 계기별로 「위게임」을 실시하고 있음.

○ 팀스피리트(Team Spirit) 합동군사연습

- 1968년 1. 21 청와대 기습사건 등 북한도발로 유엔군사령부는 1969. 3 「포커스 레티나」 연습 실시
- 1971. 3 미 7사단 철수에 앞서 「프리덤 볼트」 연습 실시
- 1975. 4베트남 공산화 이후 1976. 6 처음 팀스피리트연습 실시, 77·78년 카터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정책에 대비 계속 실시
- 1978년 제1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79년부터 매년실시하는 연례연습으로 결정(현재까지 17차례 실시)
- 팀스피리트연습의 목적은 북측의 「북침 핵전쟁연습」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북한의 선제공격에 대비 이를 격퇴하기 위한 순수방어훈련임.
- 1982년부터는 팀스피리트의 방어적 성격을 증명하기 위해 군사정전위를 통해 북한·중국 및 중감위 요원들의 훈련참관을 요청해 왔음.
- 우리측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1992년 훈련을 중단한 바 있으며(1993년 재개) 1994년부터는 북한 핵문제 해결문제와 관련, 동훈련의 실시를 유보하고 있음.

○ 독수리 연습

- 북한 특수부대 등 비정규군의 후방침투시에 대비한 연례훈련 ('95 현재 30회 실시)
- 주한미군은 물론 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 일부 참가, 팀스피리

트 중단으로 미 7함대 병력 참가 등 규모 확대

○ 을지 포커스렌즈 연습

- 야외기동훈련 없이 「위게임」 등을 통한 모의지휘소 연습
- 한국 정부기관 참가, 전쟁지휘 연습 병행
- 전시 전환절차, 미 증원군 전개, 작계시행절차 연습 훈련

○ RSOI 연습(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

- 유사시 대규모 미 증원군이 한반도에 도착했을 때 이들을 항만 및 공항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수용하고 전방부대로 이동시키기 위한 지휘소 훈련
- 시차별 부대전개 제원 준비절차, 전시지원 및 요청절차 훈련

○ 한편 컴퓨터를 이용 각종 상황을 상정, 전쟁결과를 예측하거나(분석용), 장교들에게 작전계획을 숙달시키는데(훈련용) 위게임(War Game)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부분 주한미군의 장비와 인력에 의존하고 있음.

- 대부분의 역대 주한미군사령관은 「위게임」 결과 비관적 시나리오를 제시, 한국군의 지상군 위주의 전력증강을 제시한 바 있음.
- 특히 을지 포커스훈련시 대형 컴퓨터 140여 대가 동원된 위게임을 실시, 한·미의 「작전계획 5027」 등 핵심 작전개념 발전에 반영
- 위게임을 이용한 교육훈련으로, 한국군에도 '90년대초 주한미

군으로부터 BCTP(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등 위계 임 모델을 도입, 사단급까지 보급·활용 중임.

마. 주둔군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 ; 행정협정이라고도 불림)

○ 개 요

-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를 두고 1966. 7. 9 서울에서 체결, 1967. 2. 9 발효
- 「미·일행정협정」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재판관할권 측면에서 「나토협정」과 유사
- 주한미군의 한국주둔에 있어 토지·시설·출입국관리·통관과 관세·형사재판권 등 양국간의 권리와 의무 및 양해사항을 규정 (전문과 본문 31개조로 구성)
- 1991년 2월 양해사항과 교환공한 폐기, 일부내용 개정
 - 시설·토지 반환, 한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노동법에 일치
 - 형사재판권 조항 중 관할권 행사대상 규정 폐지, 한국측의 재판관할권 행사원칙 인정, 피의자 신병인도 요청시 인도규정 등

○ 최근 주한미군 및 군속의 범죄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할문제를 중심으로 한·미 행정협정 개정문제가 제기됨

- 주한미군의 연평균 범죄 발생건수는 2천 2백여 건이지만, 재판권 행사율은 연평균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외국의 경우 독일 53%, 일본 32%, 필리핀 21% 정도였음.

- '96년 1~8월간 발생한 미군범죄 994건 중 11명을 재판하여 범죄기소율은 2.8%에 불과(법무부 국정감사자료, 문화일보 '96. 10. 24)
- 이 문제는 특히 대학생·재야 등의 주한미군 철수주장 및 대미 감정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함
- 문제 조항은 ▲ 22조 5항 : 미 요청엔 미군피의자 미군인도 ▲ 22조 9항 : 미 정부대표 입회해야 진술인정 ▲ 22조 10항 : 미 군부대 도주한 범인 재판권 포기 등으로, 「나토협정」이나 「미·일 행정협정」보다 미군의 특례를 지나치게 인정한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
- 그밖에도 ▲상소권 제한 폐지 ▲ 군속 및 친척을 포함하는 협정체택의 철폐 등이 지적되고 있음.
- '95년 한국측 외무장관 및 법무장관의 개정의사 표명과 미군 지하철 폭행사건 이후 '95. 7 한·미양국은 행정협정 개정협상에 합의함

바. 방위비 분담금

○ 개 요

- 1970년대 중반이후 연합방위증강사업(CDIP)을 위한 토지·시설 제공
- 1980년대초부터 자국군 사용분 부담원칙에 따라, 한·미연합사와 야전사운영비 분담, KATUSA 지원 및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 운영유지비 지원
- 1980년대 후반 주한미군 주둔경비 부담문제 논의

- 1989년 4천 5백만 달러, 1990년 7천만 달러 지원
 - 1991년부터 주둔비용 지원사업을 ▲ 주한미군사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 군사건설비 지원, ▲ 기존 방위증강사업 ▲ 군수사업 등 4개분야로 확대
 - 1991년 1.5억 달러, 1992년 1.8억 달러, 1993년 2.2억 달러, 1994년 2.6억 달러, 1995년 3억 달러 지원
 - '95년의 경우 인건비 1.4억, 연합방위증강사업비 5천 7백만 달러, 군사건설 4천 3백만 달러, 군수지원 6천만 달러를 지출. 이 중 연합방위증강사업은 향후 한국군 시설로 활용할 수 있어 동 사업의 비중과 관련 한·미간 협상 중요
 - 이는 제23차 SCM시 분담목표에 대한 합의사항('91~'95년간)으로 주한미군 현지발생비(WBC : Won-Based Costs)의 1/3수준까지 증액한다는 합의에 따른 것임.
 - 1995년 제27차 SCM 합의 : 1996년부터 3년간 매년 10%씩 증액에 합의
 - 1996년 3.3억 달러 분담
- 향후 방위비 분담시 고려사항
- 한반도내외의 안보상황과 주한미군의 규모 및 역할변화 추이, 한국정부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특히 주한미군의 기지사용 등 한국측의 간접비용 부담과 KATUSA제도(미 육군에 증원된 한국군 ; 연간 9천만 달러의 경비절감 효과)등에 대한 대미 홍보·설득 필요
 - 보다 장기적으로 한미관계 성숙에 따라 점차 단순한 비용분담 또는 부담분담차원이 아닌 책임분담(Responsibility Sharing) 차원에서의 안보협력 지향

〈재야운동권의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한 주요 논거〉

- 미군의 한반도 진주는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의 성격
 - － 미군에 있어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에 불과
 - － 미군 상륙후 한국민을 적으로 대하여 위협적인 언사로 일관
 - 「미군상륙에 제한 미군사령관의 포고」
 - 「미 태평양방면 육군총사령부의 포고 제1·2호」(1945. 9. 8)
- 미군정의 성격과 폐해
 - － 미국식 정치체제와 사회풍조 강요로 동서냉전구조의 최전선화, 식민지 군사기지화
 - － 행정기술 명분아래 친일세력 비호
 - － 한국인의 자주적 정치조직이나 정치활동을 인정치 않았으며 일부 정치참여 제도의 운용은 정치적 기만극에 불과
- 주한미군의 광주민주화운동과의 연관성
-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의 문제
 - － 용산기지로 인한 서울의 도시기능 저해문제
 - － 기지촌 문제, 기지내 일부한국인 출입과 유희비 과소비문제, 미군납품 불법유통 문제
 - － 미공군 폭격연습장의 문제 등
- 불평등한 한·미 행정협정의 문제
 - － 형사재판권 문제
 - － 시설·기지사용 문제
 - － 면세와 출입국 특혜문제 등
- 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무기공여 및 병참지원, 한국군 지휘관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은 오히려 한국군에 대한 군사적 종속 및 자주국방의지 약화

3. 주한미군의 안보상 역할

가. 냉전시대 주한미군의 역할

○ 세계적 차원

－ 군사적 기능

- 초강대국(Super Power)으로서의 대소방어전략의 전진기지 역할(동북아지역 : 태평양사령부 예하 주일·주한미군)

－ 정치적 기능 :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의지의 상징 및 척도

○ 지역적 차원

－ 군사적 기능

- 태평양 세력으로서의 소·중·일간의 세력균형자(Balancer)
- 일본의 군사대국화 방지

－ 정치적 기능

- 소련의 대아·태지역 영향력 차단
- 주변 강대국들의 상대적 영향력의 한계 설정

○ 남북관계 차원

－ 군사적 기능

- 평화유지군(Peace-keeping force)으로서의 전쟁억제
- 남북한 군사력 균형유지 및 억지 실패시 한국방어

－ 정치적 기능

- 남북한 공존여건 확립
- 휴전협정체제 관리

○ 한국안보 차원

－ 군사적 기능

- 연합방위태세 유지
- 한국군 전력보완(조기경보, 해·공군력 지속능력 등) 및 유사시 증원군 전개

－ 정치적 기능

- 한국의 정치안정 및 경제발전 기반조성과 실질적 기여
- 배타적 민족주의(주한미군 철수론 등 반미감정) 자극

나. 탈냉전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

○ 구소련의 붕괴 등 탈냉전으로 전개된 세계적 긴장완화와 군비축소 추세와는 달리 동북아 지역에서는 군비증강이 가속화

－ 북한의 대남 군사적 위협 지속

－ 중, 일, 대만의 군사력 증강 지속

－ 탈냉전으로 인한 주한미군의 한반도 내에서의 위상변화는 크지 않음.

○ 주한미군의 가장 큰 안보상의 역할은 「한반도 전쟁억제 및 유사시 한국방어」이며 이러한 역할은 현재도 유효함.

－ 전쟁억지력의 군사적 기능

- 한국군의 전투능력 보강
- 통합작전지휘
- 전역계획 수립 및 발전
- 통합작전훈련 및 전술교리 발전

- 군사정보 지원 C4I(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체제 등
- 전시군수지원 능력보강 등
- 주한미군의 「인계철선(trip-wire)」 역할
-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공약의 신뢰성 제고 효과
-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측의 대응보복으로 인한 확산가능성 방지역할 수행

○ 대미협력의 저변 확대

- 안보정책 차원에서 한국군무 경험있는 지도층 인사들은 친한적 입장에서 한·미협력에 기여

○ 경제적 효과 : 한국의 국방비 절감효과

- 주한미군이 한국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지상군 5~5.5%, 공군력의 30%)외에도 대북한 「정보수집」 및 조기경보 능력은 막대한 비용절감 효과
- 미국의 동아시아 지출경비 470억('85년 기준)중 약 절반정도가 한국방위에 지출(230억)

다.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과정에서의 주한미군의 역할

○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 평화체제 유지에 있어 주한미군의 존재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견해(민주평통 『주한미군과 한반도 평화체제』 세미나('96. 6. 24) 요지 등)

- 이때 주한미군은 한국과는 굳건한 동맹관계, 북한과는 호의적 우호관계라는 「배분적 두개의 한국정책」(distributive two-Korea policy)에 의해, 한반도와 지역·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으

로 대체

-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바, 주한미군은 북한측의 이러한 의도를 제어하는 한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매개자적 역할」 수행 가능
 - 궁극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체제 보장을 유인하는 역할수행 가능
 - 이러한 기능수행을 위해 한·미 양국군간의 새로운 작전지휘체제 구축, 상호 군사협조를 위한 조정·연락기구 설치문제 등 논의 필요
 - 유엔사령부는 현 정전협정을 기본축으로 군사적 위기관리를 지속하고, 한·미연합사는 군사적 위협은 물론 비군사적 사태(평화체제 전환)에도 대비
 - 한반도 평화정착 이후에도 주변강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세력균형자」(Balancer), 또는 「사심없는 지역안정자」(Unselfish Regional Stabilizer)로서 계속 기능
 - * 북한측은 미·북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북간, UN·북한간 적대관계가 청산되고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 UNC의 해체로 주한미군의 주둔명분 약화를 의도하고 있음.
- 남북간 화해와 긴장완화를 통한 공존단계와 남북연합단계라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한미군의 「분단관리과정의 안정화 역할」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음.
- 한반도 평화과정에서의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음(이삼성,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 주한미군 주둔의 장단점 평가에서 궁극적 기준은 한반도 평화 과정의 촉진에 기여하는가에 달려 있음.
- 미군주둔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방해하는 기능을 갖기 쉽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남북간 정치·군사협상을 통한 평화과정의 기본축과 연계해 주한미군의 존재 및 활동방식을 제한하고 결정해나가는 비전과 노력이 필요함.

○ 그 밖의 통일후 주한미군의 장래에 관한 논의

- 미국은 주한미군의 대북억제역할의 소멸이후에도 지역안보유지 역할로의 변경을 선호
- 「한·미연합사령부」는 장기적으로 「지역통합사령부」로 전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96. 5. 16, Tilleli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의회 서면증언)
- 북한의 붕괴이후라도 미군의 한반도 주둔으로 평화보장 등의 기능 수행 필요(미 맥스웰 소령, 「북한의 붕괴와 미군」, 1996. 6 인터넷 자료)

Ⅲ. 작전통제권의 변천과 한·미안보협력체제 발전과정

1.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이양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가. 한·미 군사관계 성립과정

○ 해방전 한·미간 군사협력의 시작

-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광복군은 미·중·영 등 연합군에 교섭단체로 참가
- 중·일전쟁 중 광복군은 장개석군과 협조, 비밀리에 미군으로부터 특수훈련 실시
-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시 이승만 박사는 미 육군 전략처장 빌 도노반 소장과 협의, 의사·간호원·통역 등 요원을 선발하여 미군 지원

○ 1945년 9월 8일 미군 주둔 이후

- 미 군정청 하지 중장, 1948. 1. 14 국방경비대 창설
- 미 군사고문단(KMAG) 500명만 남기고 주한미군 완전 철수

나. 6.25전쟁 발발과 작전지휘권 이양

○ 북한의 남침과 미군의 참전

- 1950. 6.25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 1950. 6.29 미 극동군 공군과 제7함대 참전, 7.1 미 지상군 참전
- 1950. 7.7 유엔 안보리, 유엔군사령부 설치 결의
 - 미국 주도하에 통합군사령부 설치
 - 군사령관 임명 및 유엔기 사용권한 부여 등 결의
- 7.8 미국, 극동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을 유엔군사령관에 임명
- 7.9 대구에 미 제8군사령부 설치

○ 이승만 대통령의 작전지휘권 이양

- 1950. 7.14 이승만 대통령,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장군에게 「작전지휘권이양 공한」 발송
 - “현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전 한국군의 지휘권(Command Authority)은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
 - “이 지휘권은 귀하 자신 또는 귀하가 한국내 또는 한국근해에서 행사하도록 위임한 기타 사령관이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 7.17 맥아더 장군, 미8군 사령관 겸 주한유엔군사령관인 워커 중장에게 한국 육군의 작전지휘권 부여
- 7.18 맥아더 장군, 주한 미대사 존 무치오를 통해 「작전지휘권 (Operational Command) 인수」서한 발송

〈 ※보론 : 작전통제권 관련 용어 정리 〉

가. 지휘권(Command Authority)

군대 조직상의 계급과 직책에 따라 위임받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부대를 이끌어가는 일체의 권한을 말한다. 군 지휘권에 관한 일반적인 용어이며,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통

수권(Command Authority)도 이에 해당된다.

나. 작전지휘(Operational Command)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지휘관이 예하부대에 행사는 권한으로서 작전수행에 필요한 전투편성, 임무할당, 목표선정, 임무수행, 지침 하달등의 기능을 주로 실시하는 권한으로서 행정지휘에 대한 상대적 개념을 의미한다.(미국은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와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미 통합군사령부에서 사용해 왔으나, 지난 1989년 5월 13일 미 합참 지시에 의거 전쟁지휘(Combatant Command)로 바꾸어 사용하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음).

다. 전쟁지휘(Combatant Command : COCOM)

예하부대의 편성 및 운용, 과업부여, 목표선정을 포함하는 지휘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으로서 전반적인 군사작전, 합동훈련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군수분야에 대한 권위있는 지시를 갖는다. 전쟁지휘는 예하부대 지휘관을 통하여 수행된다. 전쟁지휘는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령부와 부대를 편성하고 운용하는 것에 대한 제반 권한을 제공한다.

(이 용어는 미 통합군사령관과 특수군사령관이 할당된 부대에 대한 통제에만 적용되며, 한·미연합군 부대에는 적용되지 않음).

라. 작전통제(Operational Control : OPCON)

연합작전계획 또는 작전명령사에 명시된 특정 업무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하부대를 통제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작전통제는 기능, 시간, 장소에 의해 제한을 받으나, 관계부대를 전개하고 직접 전술통제를 실시하거나 또는 전술통제권

을 예하 지휘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지휘구조 내의 단위부대들은 통상 편제부대로 운영되며, 이 부대들에 대한 행정 및 군수 책임은 자국 책임이다.

※ 연합사측의 작전통제권 정의

1987년 9월에 발간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미 8군의 「퍼브릭 어페어즈」라는 간행물은 연합사의 한국 작전통제권을 다음과 같이 실증적·실용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연합사의 한국군 작전권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은 국가통치권 기능의 하나로서 대한민국 정부에 항상 귀속된다.

한·미 연합사의 한국군 또는 미군의 작전통제권은 양국 정부가 연합사에 촉탁한 임무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수한 형태의 권한 위임이다. 작전통제권은 특수한 목적 또는 임무를 위해 군의 전술적 통제를 규정하는 표준적인 군사관계이다.

한국군이 연합사의 작전통제권하에 예속되도록 한 협정은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에 관한 위임사항”이라고 명명된 1978년 7월 27일자 협정이다. 이는 한국 및 미국이 한국내의 군대를 통제하는 데 근거가 되는 임무, 조직, 기능 및 지휘관계를 규정한 양국협정이다. 한국군 또는 미군이 미 사령부의 작전통제권하에 있지 않음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통제권은 미측 사령관, 한국측 부사령관 및 완전하게 통합되고 연합된 참모진으로 구성된 연합군사령부가 행사한다. 게다가 작전요소 역시 3개 야전군 중 2개는

한국장교들이 지휘하고, 나머지 하나는 미국장교가 지휘하며, 해군 구성군은 한국장교가 그리고 공군구성군은 미군장교가 각각 지휘하는 양국체제이다. 전시에도 마찬가지로이겠지만 훈련중에도 각국은 상대국의 장교들에 의해 지휘되는 상급 본부들의 작전통제권하에 부대요소를 둔다.

한국정부가 연합사로부터 특정 군대의 작전통제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한국 합참의장이 한·미 연합사사령관에게 서신으로 통보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왔다.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군사통신 회선과 같은 가장 평리한 수단을 통해서 통보할 수도 있다. 비록 연합사사령관은 그 책임의 성격상, 대외 방어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양국의 협정에는 그가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에 따르기를 거부하거나, 미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유사한 결정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없다.

양국의 군대가 연합사의 작전통제권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는 양국 정부에 의한 자국 군대의 운용에 대해 연합사의 관련 당사자가 아니다. (*상기 내용의 출처는 한미 연합사의 대변인)

다. 휴전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 휴전의 성립

- 1953. 7.27 한국전쟁 교전국 대표 한국군,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의 참관하에 정전협정 조인, 발효

○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 1953. 5.30 이승만 대통령은 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휴전협정 체결전에 한미방위조약을 체결 및 한국군 강화 지원 확약 요구
- 1953. 6.25 미국측 특사(미 국무성차관보 로버트슨) 방한시, 휴전후 방위조약 체결 약속
- 1953. 8.3 미 덜레스 국무장관 방한시 방위조약 초안 제시
- 1953. 8.8 상호방위조약 가조인, 10.1 한국 외무장관과 미 국무장관간 정식 서명

〈조약내용〉

- 제1조 : 국제적 분쟁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 제2조 : 무력공격에 의한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의 위협시 당사국간 협의
 - 제3조 :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시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공동 위협에 대처
 - 제4조 : 미 합중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 인정
 - 제5조 :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른 본 조약의 비준
 - 제6조 : 조약의 유효기간 : 타 당사국에 통고후 1년후에 본 조약 종료
- 조약의 정치적·상징적 측면
 - 조약 제3조의 “무력공격시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공동위협에 대처한다”는 조항
 - 1954. 1.26 미 상원 비준시 양해사항 중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한국의 행정적 관리아래 합법적으로 존속키로 된 것과 미국에 대하여 원조를 공여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 한미간 「합의의사록」체결

- 1954. 11.17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 의사록」체결
- 휴전이후 한국의 경제부흥과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한국군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경제원조 및 군사원조에 관한 합의사항을 수록한 문서(1995, 1962년 각각 개정)
- 합의의사록의 구성은 기본문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도 및 정책과 미국의 의도 및 정책, 부록A에 경제원조, 부록B에 군사원조로 구성
- 작전통제권 문제 관련내용(대한민국 정책사항 제2항)
 - “유엔사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유엔사의 작전통제하에 둔다. 그러나 양국의 상호적 및 개별적 이익이 변경에 의하여 가장 잘 성취될 것이라고 협의후 합의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이승만 대통령의 지휘권 이양공한의 ‘현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이라는 시간적 제한사항을 ‘유엔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동안’이라는 유엔사 기능상의 제한으로 전환
 - 이승만 대통령 공한의 ‘지휘권’이 ‘작전통제권’ (OPCON)으로 변경되어 최초로 「작전통제권」이라는 용어 사용
 - *그러나 한국측 번역문에는 아직도 「작전지휘권」으로 표현, 「작전통제권」과의 개념구분이 없었음.
 - 작전통제권 변경절차를 어느 일방이 아닌 상호협의를 거쳐 합의에 의해 변경토록 절차를 명시

○ 유엔사의 서울이동과 작전통제권 행사자 임명

- 1956. 12 미 합참은 국방성 개편에 따라 미 극동군사령부와 함께 있던 유엔군사령부를 서울로 이동한다는 전문 발송
 - 1957. 7.1부로 유엔군사령부 서울로 이동, 주한미군사령관을 유엔군사령관으로 임명, 유엔군사령관은 한반도에 위치할 유엔사 각 구성군 사령관을 지명
 - 한국내 선임 미 육군장교를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임명
 - 주한 미 육군사령관은 미 태평양 육군 구성군사령관의 지휘 하에 둬.
- 1957. 10.9 유엔군사령부, 유엔사 일반명령 제38호 하달, 1957. 7.1 자로 소급적용
 - 각 구성군사령관의 임명,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를 3개 구성군사령부를 통해 행사토록 함
 - 미 8군사령관을 유엔사 육군 구성사령관으로 임명, 미 8군사령관으로 지칭
 - 주한 해군사령관을 유엔사 해군 구성사령관으로 임명, 주한 해군사령관으로 지칭
 - 제314 비행사단장을 유엔사 공군 구성사령관으로 임명, 주한 공군사령관으로 지칭
- * 유엔사 구성군사령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 1981. 1. 31 일반명령 제1호에 의거 수정

2. 한·미 연합방위체계 발전과정과 작전통제권

가. 5·16이후 지휘관계 변화

○ 작전통제권의 재확인

- 1961. 5.16 군사구테타 당시 유엔사령관의 작전통제하의 한국군 일부부대가 사전허가 및 사전통보 없이 작전지역 이탈 「혁명군」에 투입, 당시 매크루터 유엔사령관은 혁명정부에 강력 항의
- 5.26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엔사령부간 협의회 후 공동성명 발표
 -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모든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사령관에 귀속시키며 유엔군사령관은 그 작전통제권을 공산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하는데만 행사한다.”
 - “유엔군사령관은 전방방어를 위한 이전의 군사력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서울에서 활동중인 제1해병여단과 제6군단 포병부대에 대해 원래 위치로 복귀할 것으로 지시한다.”
 - “유엔군사령관은 제30, 33예비사단, 제1공수특전팀 및 5개의 추가 헌병중대를 그의 작전통제로부터 해제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이양한다.”
- 1961. 9.20 혁명정부와 미국간에 한국군이 유엔군 관할권으로부터 잠정적으로 벗어날 경우 선행되어야 할 「사전협의 조건」 명시
 - 조건 : 수해·화재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 절차 : 한국의 차관급 각료의 유엔사령부 참모장에 전화 통고 후 사후 서면통보로 확인

- 통보시 비상사태의 성격, 투입부대 성격과 규모, 대체적인 병력규모 등
- 서면통보시 유엔군사령관에게 이탈목적, 사용부대, 대체적인 병력규모, 이탈기간, 작전태세 및 훈련에 미칠영향, 연장필요성 등 포함

— 1962. 1.30 한미 합의의사록 수정시 확인

○ 지휘관계상의 변동사항

- 한미합의의사록의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제한을 ‘공산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하는데만 행사한다’는 기능상의 제한요소를 좀더 명확히 함.
- 제30, 33예비사단 등 일부 한국군 부대를 유엔사의 작전통제로부터 해제, 한국 고유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대는 유엔사의 작전통제로부터 해제시켜 한국군이 행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나. 월남파병시 지휘관계

○ 1965. 6.21 월남 군사원조단 설치, 월남파병 결정

- 1965. 9.6 「주월 한·미 군사실무약정서」와 「한·월 군사실무약정서」서명으로 월남에서의 지휘권관계 규정
 -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파견된 파월 한국군의 지휘권은 대한민군 정부에서 임명한 한국군사령관에게 있다”
 - 국제 군사원조기구 존속·운영(월남군 합동참모총장, 한국군사령관 및 미군사령관으로 구성), 이 기구에서의 결정은 각 정

부대표의 동의를 필요로 함.

- 파월 한국군은 미군 및 월남군과 대등한 위치에서 한국정부의 동의를 통해 군사정책을 결정하는 상호 협조체제하에서 군사 작전 수행
 - 한국군은 한국의 군사통수기구의 지휘하에 협조기구인 국제 군사원조기구를 통해 연합작전을 수행
 - 1973년 귀국후 유엔사 작전통제하로 복귀

다. 대침투작전에 대한 지휘관계 변천

○ 배 경

- 1967년까지 대침투작전은 유엔군사령관 책임하에 수행
- 1968. 1.21 청와대 습격미수사건, 1.23 미 프에블로호 납북사건 발발로 한·미간 이견 표출, 한국측의 강력한 항의 제기
- 1968. 2.15 미 대통령 특사 사이러스 벤스, 박정희 대통령과 협의
- 1968. 4.17 박-존슨 정상회담 공동발표(하와이)
 - 대한민국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효과적인 대간첩작전 계획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토.
 - 존슨 대통령은 향토예비군 편성을 포함하여 박대통령이 북한의 침투와 파괴 기도를 분쇄하고, 치안 확보를 위하여 취한 각종 조치들에 대하여 찬동
 - 양국 국방부간의 각료급회담을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

○ 지휘관계의 변화

- 대침투작전 수행권한을 한국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

- 제1, 2차 한미 국방각료회의 협의시 미측은 이의 제기하지 않음
- '71. 1.28 유엔사·주한미군사 정책지침 3-2호에는 내륙 치안 작전에 참여하는 한국군 대침투부대에 대하여는 작전통제권을 행사치 않는것으로 되어 있음.
- 이후에도 대침투작전에 대한 공식합의로의 명시는 없으나 「유엔사/연합사 작계 5027」및 예규상에는 명시되어 있음.
- 1968. 4 향토예비군 창설
-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상의 '협의를 합의하'에 조치를 취한다는 규정의 실질적인 협의기구로서 연례 국방장관급회의로 한·미간 안보협의기구 탄생
 - 1968년 1차부터 '70년 3차까지는 「한·미 국방각료회의」로 불렸으나, '71년 제4차 회의시부터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로 발전

라.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과 작전통제권

(1)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 경과

- 1968. 4.11 주한미군사령관, 한국국방장관에 한국방어계획 수립을 위한 「한·미기획단」설치 제의
 - 10.15 총 24명의 한·미 장교로 구성된 「한·미기획단」발족
 - 1974. 6.29 한국군 장성 기획단장에 부임
 - 우리의 국방정책에 따르는 방어계획 반영 계기 마련
 - 최종 결심은 미국 통수기구의 전략지침에 의거 미군지휘관에 의해 결정, 한·미기획단은 행정적 기능 수행

-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의 발판

○ 한·미 제1군단(집단) 창설

- 1970년 미 제7사단 철수, 제2사단 휴전선 방어임무 한국군 1사단에 이양, 미 제1군단 철수준비
- '70. 10부터 양국간 협의를 통해 1971. 7. 1 한·미군 각각 1/2씩으로 편성된 한·미 제1군단(집단)사령부 창설
 - 실질적 야전군으로서 한·미 연합야전군사령부의 전신

○ 연합사 창설 제의 및 협의과정

- 닉슨 독트린 이후 주한미군 감축과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방위능력 향상, 월남 패망으로 자주국방의지 강화 등의 배경
- 1974. 4.28 미 정부, 연합사 창설제의
 - 1974년 유엔에서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논의가 시작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1975. 11. 17 공산측·우방측 결의안 통과
 - 유엔사 해체후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미군 선임장교 지휘하의 한미연합사에 이양할 것을 제의
- 1974. 5. 1 한국측 기본입장 제의
 - 연합사 상부기구로 「군사위원회」를 설치, 연합군사령관과 연합사의 작전통제를 받는 한·미 양국군 부대목록 합의 결정, 한미의사록 수정 등 제의
- 1975. 5. 28 연합사 구성에 관한 미국측 입장표명
 - 상당수준의 미군이 주둔하는 한 한·미 연합군사령관에 미군 대장을 임명

- 작전통제 부대에 있어서 한국군에 대하여는 연합군사령관이 작전통제
 - 미군에 대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적의 무력공격시 제공되는 전투부대에 대하여 작전통제
 - 한국측이 제시한 군사위원회 안에 대하여는 일부변경할 것을 고려
- 1975. 7. 21 한국측 회신을 외무부장관 서신으로 주한 미대사에 발송
- ‘상당수준’을 현 수준 또는 양국이 합의한 수준의 미군이 주둔하는 한 연합군사령관에 미군 대장을 임명
 - 한·미군을 작전통제하는 것이 연합지휘체제의 기본개념에 합치되므로 부대목록은 양국 합의에 따라 결정
 - 군사위원회의 구성·형태·기능은 쌍방의 합의
- 1976. 5. 14 박정희 대통령, 제9차 한·미안보협의회의시(5.28) 한국측안 제의토록 지시
- 소수의 주한미군을 가진 미군장성이 한국군을 일방적으로 작전통제함은 모순이므로 계획작성 및 작전통제권 행사 과정에 한국군의 적극 참여 필요
 - 과거 월남에서는 분리된 각개 군사지휘체제 유지로 주월 미군의 철수가 용이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산화의 촉진을 초래
 - 한·미 연합지휘체제를 유지할 경우 양국이 합의한 연합사령부 해체는 미군철수 결정후에도 최소한 1년간의 소요시간 필요

(2)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과 작전통제권

○ 연합사 창설 합의

- 1977년 제10차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제9차 협의시 제시된 한국측안을 검토한 결과 연합사 창설에 기본적 합의 도출
- 1977. 9. 20 「연합사 창설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합참본부에 설치
- 1977. 12.13 「한·미 공동건의서」 작성, 연합사의 기본개념을 양국 국가통수기구에 보고
 - 연합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 공약을 상징하며 한국 방위의 효율성을 증대
 - 유엔군사령관과 연합군사령관은 동일인이며, 예·배속된 한·미 군부대에 대하여 연합군사령관의 자격으로서 작전통제권을 행사
 - 가급적 현 지휘체제와 기구 및 편성을 최대한으로 활용
 - 참모요원은 양국 동울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참모기구의 장과 차장은 상대국 요원으로 구성
 - 연합군사령관은 군사위원회에서 상호 발전시킨 전략지시와 지침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

○ 1978. 4.19 국방부 훈령 제237호 하달

- 「한미연합사 창설에 따르는 업무 및 지휘관계」
 - 연합사는 한·미연합군을 작전통제하며, 쌍방 합의시까지 일정 기간 잠정적으로 존속하는 기구임.
 - 주한미군의 병력수준에 상당한 변화가 있거나, 임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쌍방 합의에 따라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군

- 의 작전지휘는 한국군 독자적인 체계에 의함을 규정
- 연합사는 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에 따라 부대 목록상에 명시된 구성군의 부대만을 작전통제
- 1978. 7.26~27 제11차 한미안보협의회의시 한·미 국방장관의 단독회담을 통해 「권한위임사항」(TOR : Terms of Reference) 구두 승인
-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 군사위원회의 임무, 기능 및 구성, 연합군사령부의 임무, 기능 및 구성
 - 연합군사령부 지휘관계, 유엔사와 연합사의 관계 등을 규정
 -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 기구가 승인한 문서로 연합사의 기본법으로 기능
 - 1978. 10.17 「권한위임사항」관련 한국 외무장관과 미대사간 「한·미연합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 교환
 - 이 각서는 권한위임사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및 한·미합의의사록 중 한국측 정책사항 제2항 규정범위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여, 연합사 창설이 한미간 국익에 합치되는 것으로 양국의 협의와 합의를 거친 것으로 추후 어느 일방국가의 단독적 선언에 의해 연합사의 해체를 결정할 수 없도록 하였음.
- 1978. 7.28 한미군사위원회 「전략지시 제1호」 하달
- 권한위임사항과 연합사의 기본헌장을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
 - 한·미 연합군 창설 권한 및 명칭
 - 연합사 지휘관계 :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각 구성군사령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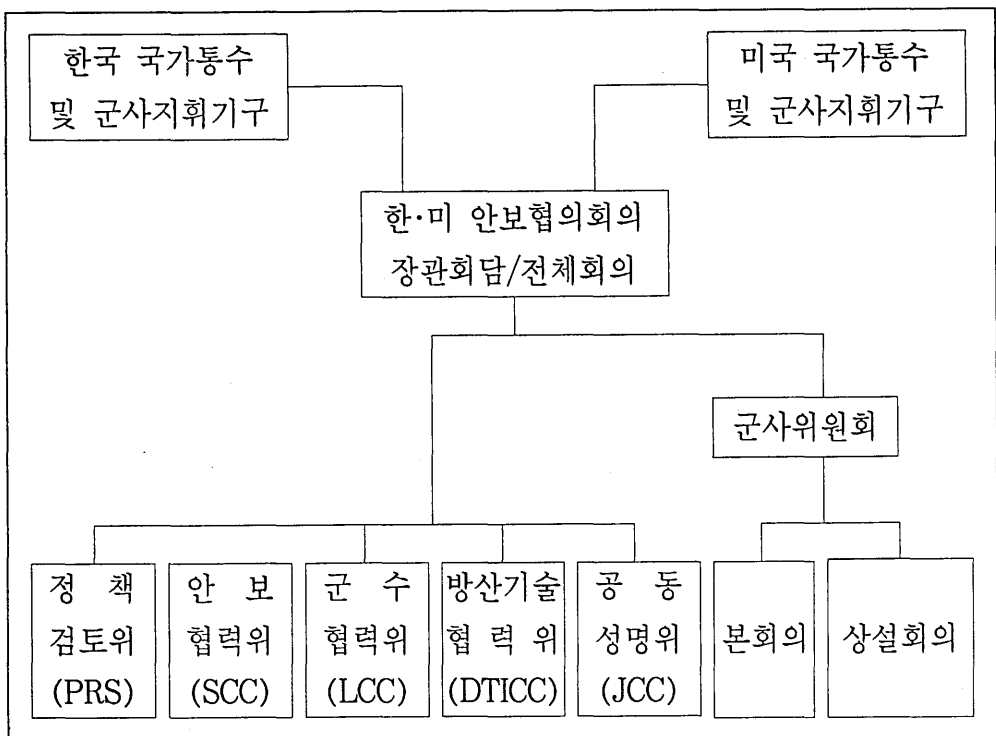
- 통하여 제공된 한·미군을 작전통제
 - 작전통제 부대목록 등
 - 1978. 10.23 제1차 군사위원회 상설회의, 1978. 11.7 부로 연합사를 창설키로 서명(11.7 창설식 거행)
- 연합사령부 창설로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는 미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는 SCM과 MCM의 합의에 근거하여 한·미 연합으로 행사 계기
 - 일부 미군에 대한 작전통제도 가능
 - 미 육군 38방공여단, 일부 해군과 헌병대, 주한공군의 비상대기부대 등 목록에 표시
 - 작전통제 측면에서의 한·미 안보협력 강화

3. 한·미 안보협력체제 현황과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가. 한·미 안보협력체제 현황

○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 1968. 4.17 박정희-존슨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하와이)에서 「한·미 연례국방각료회의」 개최에 합의, 5월 제1차 회의(워싱턴) 개최
- 1971년 제4차 회의부터 「한·미 안보협의회의」로 개칭
- 1980년대말 이후 주한미군 감축 및 역할조정, 북한 핵문제, 작전통제권 환수, 방위비 분담문제 등 주요현안 협의, 실질적 정책협의기구로 발전
- 한·미 안보협의체 현황



*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 5개 실무분과위원회

- PRS : Policy Review Sub committee
- SCC : Security Cooperation Committee
- LCC : Logistics Cooperation Committee
- DTICC : Defense Technology & Industrial Cooperation Committee
- JCC : Joint Communique Committee

○ 한·미 군사위원회(MC : Military Commit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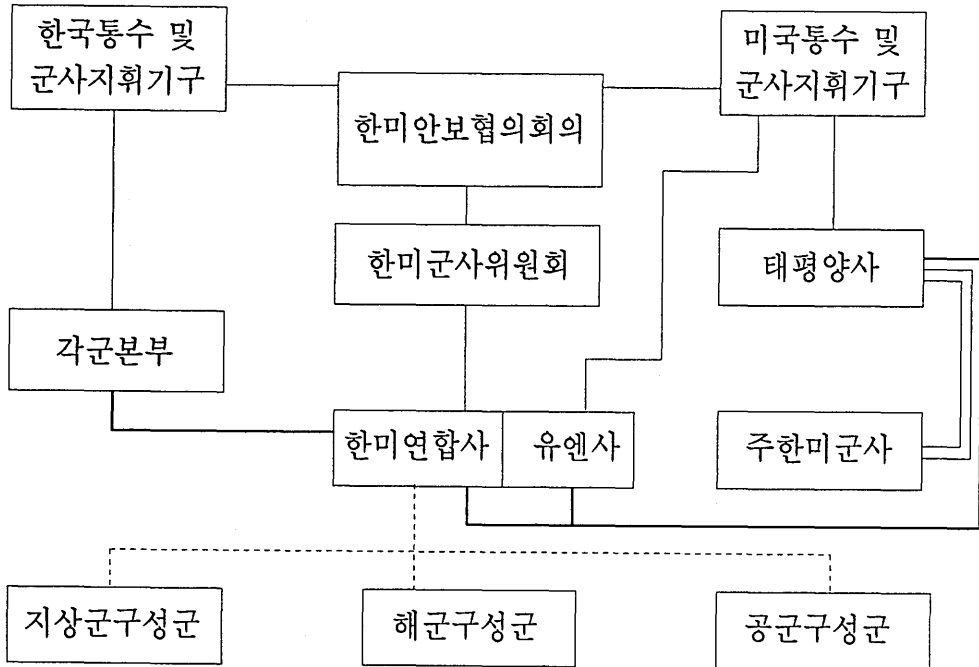
-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상급기관으로서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대해 전략지시 및 작전지침을 하달함으로써 연합사령부의 임무·과업을 부여
- 한·미 양국 합참의장, 양국이 지명한 대표 각 1명, 한·미 연합사령관 등 5명으로 구성
- 본회의는 매년 안보협의회의에 앞서 회의 실시, 안보협의회의에 결과보고
- 상설회의는 한국 합참의장과 미 합참의장을 대리한 주한미군 선임장교(주한미군사령관)로 구성, 수시회의

○ 한·미 연합사령부(CFC : Combined Forces Command)

- 1978. 11.7 한미·군사위원회 「전략지시 제1호」에 의거 창설
-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실질적 운영 주체
- 사령부 구성요원의 한·미 동률보직 원칙에 따라 편성
- 예하에 3개 구성군사령부(지상군, 공군, 해군)

나.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연합지휘체계

○ 연합지휘체계 개요



————— 전략지침 ————— 협조 및 지원
 - - - - - 작전통제 = = = = = 작전지휘(전쟁지휘)

○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의 작전통제권

- 「전략지시 제1호」의 연합사령관의 임무는 “한·미의 통합된 군사력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적대행위를 억지하고 억지 실패시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분쇄한다”임.
- 이러한 연합사의 임무달성을 위해 연합사령관은 각 구성군사령관을 통해 작전통제 부대목록에 표시된(위임된) 부대에 대하여 작전통제권을 행사함.

- 평시 대침투작전의 지휘권은 한국군(합참의장)에 있지만 이
가 곧 평시작전통제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연합사와 한국의 각군본부, 미 태평양사령부 및 주한미군사와
는 상호 지원 및 협조관계 유지
- 한국합참은 연합사 예하의 한국군 작전통제부대에 대해서 작
전통제를 제외한 작전지휘권을 행사
- 주한미군사는 태평양사 예하 통합군사령부로서 연합사의 미
군 요소에 대한 작전통제를 제외한 지휘(지원)를 함.

○ 연합사와 유엔사의 관계

구 분	연 합 사	유 엔 사
창설근거	군사위원회 및 연합군사령부에 관한 권한 위임사항('78. 7.27)	유엔안보리 결의('50. 7.7)
임 무	한국 방어	정전 업무
지휘계통	한·미 군사위원회로부터 전략 지시를 받고 이를 통하여 한· 미 양국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 기구에 보고	미 합참으로부터 전략지시를 받고 이를 통하여 미국 국가통 수기구에 보고
작전통제부대	지정된 한·미 전투부대	유엔군/제3국군
상호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및 협조관계 ○ 연합군사령관은 정전업무에 관하여 유엔군사령관 지시에 부응 ○ 연합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은 동일인 ○ 연합사 참모 중 일부가 유엔사 참모 겸임 	

※ 한국군에 대한 연합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과 유엔군사령관의 지휘권과의 관계

- 연합사 해체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또는 유엔군 사령관으로의 환원문제
 - 한국측 다수설
 - 연합군사령부 창설시 유엔군사령관의 작전권소멸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므로, 연합군 사령관만이 유엔군사령부로부터 이관된 작전통제권을 소유
 - 따라서 연합사 해체시 한국군 작전통제권도 한국측에 귀속
 - 근거로 국방부 훈령 제237호('78. 4.19) “연합사 해체시 한국군의 작전지휘를 한국군 독자적 체계에 의해 수행” 명시
 - 미국측 실무진 다수설
 - 한국군에 대한 유엔군사령관의 지휘권과 연합군사령관의 작전 통제권은 각각 별개의 개념
 - 따라서 한국군 부대의 경우 유엔군사령관의 지휘권과 연합군 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이 경합
 - 연합군사령관은 부대목록상의 한국군 부대에 대해 작전통제권을 보유하나, 유엔군사령관의 지휘권은 광범위한 개념으로 파악
 - 1978. 10.17 CFC 설치 교환각서는 양 사령관을 동일인으로 함으로써 지휘권의 경합관계를 기술적으로 해결 → CFC 해체시 작전통제권은 유엔군사령관으로 환원
 - 동 교환각서에 따른 「군사위원회 및 연합사의 권한위임사항 약정」은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미군 4성장군으로서 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임하는 동안 효력을 갖는다.”고 합의, 잠정적 해결(유인택, 앞의 책)

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경과

- 1992. 제2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94년까지 평시작
통권 환수」에 합의
- 1993. 11.4 제25차 SCM에서 1994. 12.1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합의
- 1994. 1.7 「한·미 공동추진위원회」발족
- 1994. 9.13 한·미간 세부협상 완료
- 1994. 10.6~8 제26차 SCM에서 최종합의 발표
- 1994. 11.30 국방부 대변인, 한·미연합사 대변인 공동성명으로
12. 1부 시행 발표
- 1994. 11.30 한국 외무장관과 주한 미대사간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
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체결

*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한국내 반미감정의 일부 해소를
위해 미국측이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측은 1990. 2.15 한·미 국방장관 회담시 '91년에 이양할
것을 제의
- 1990. 4.19 동아태전략구상 의회보고시 비밀보고서를 통해 주
한미군 2단계 철수기간 동안(1993~95) 한국에 이양 계획
- 한국측에서는 작전권 환수를 위한 주한미군 철수를 유발하는
사전단계로 우려하여 한국군 지휘능력 구비를 위한 합동참모
부 강화이후 고려한다는 입장이었음.

○ 평시 작전통제권의 내용(서울신문 '94. 12.1자 등)

- 정전시 지정된 한국군 부대에 대한 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에게로 전환
- 평시 작전통제권의 내용
 - 평시 경계임무, 초계활동, 부대이동, 군사대비태세 강화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수행
 - 지형에 적합한 훈련, 전력강화, 부대배치, 군사교리 개발, 작전계획 수립 가능
 - 전시, 즉 북한측이 이상징후 목록에 따른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양국 합참의장의 협의를 통해 작전통제권 재이양
- 연합사령관에 대한 위임사항(CODA : Combined Delegated Authority ; 5개항)
 - 팀스피리트 등 미군병력이 참가하는 한미연합연습 관련사항
 - 한미연합 전시작전계획의 수립 및 발전
 - 한미연합 공동교리의 발전
 - 한미연합 정보수립 및 관리
 - 정전업무 수행

○ 한국군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미

- '50. 7.14 한국군 작전통제권 유엔사에 이양 후 44년만에 환수
- 자주국가로서의 위신제고 및 자주국방정책의 본격 추진
- 한반도 지형에 적합한 방어계획 수립·발전 계기
- 한국방어를 위한 미군의 주도적 역할을 지원적 역할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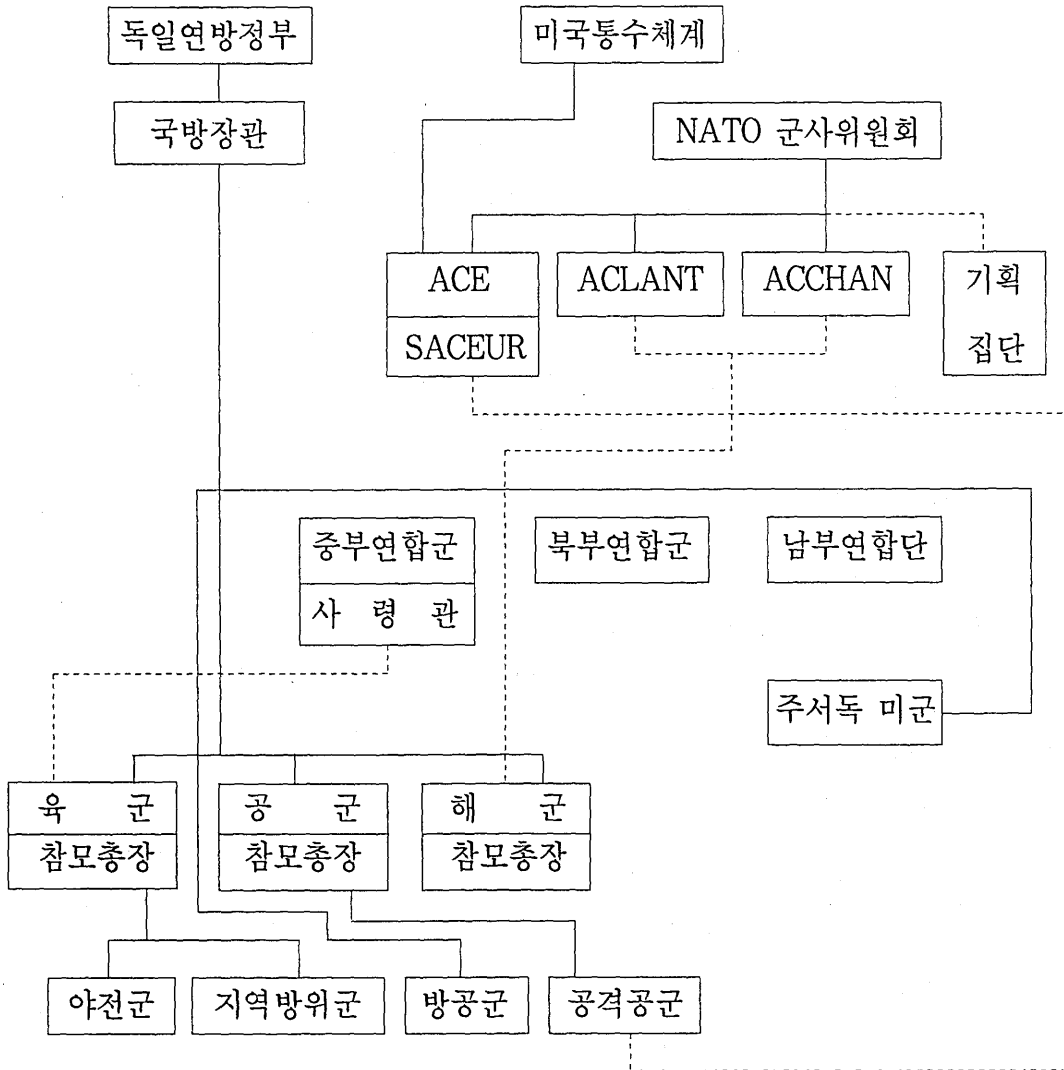
○ 그밖에 「한국방위의 한국화」조치들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한·미 안보협력체제의 발전계기가 되었음.

- 「전시 접수국 지원협정」(WHNS)체결
 - '85. 5.17차 SCM 미국측 제기
 - '87. 5.19차 SCM 양해각서 서명
 - 연합방위증강사업(CDIP) 방위비 분담 본격적 요구 증대
 - 한·미간 한반도 위기시 미지상군 조기전개를 보장하여 전쟁 억제력을 향상시키고 전쟁예비물자의 사전비축을 통해 전쟁 지속역량 강화로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 1991. 3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한국군 장성 임명
- 1992. 7.1 한·미연합전사(CFA) 해체, 한·미연합 해병대 창설키로 합의
- 1991. 10, 1992. 12 판문점 JSA 경비대의 일부를 한국군 경비병력으로 대체
- 1995년 「평시주둔군 지원협정」(WHMS) 체결로 유사시 미 증원군에 대한 한국의 수용태세 강화

※ 미군과의 연합작전통제체제 유형을 ▲한국형, ▲일본형, ▲나토형으로 나뉘 볼 수 있음.

- ① 한국형은 94.12. 1 한국군의 평시작전 통제권 환수 이전의 형태로 평·전시 작전통제권을 모두 미군사령관이 행사하는 형태
- ② 일본형은 양국군이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사시 공동작전을 위한 협력관계만 구축하고 있는 형태
- ③ 나토형은 자국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되 전시에는 유럽통합군사령관(미군)의 작전통제를 받는 형태임.

※ 미·서독 작전협력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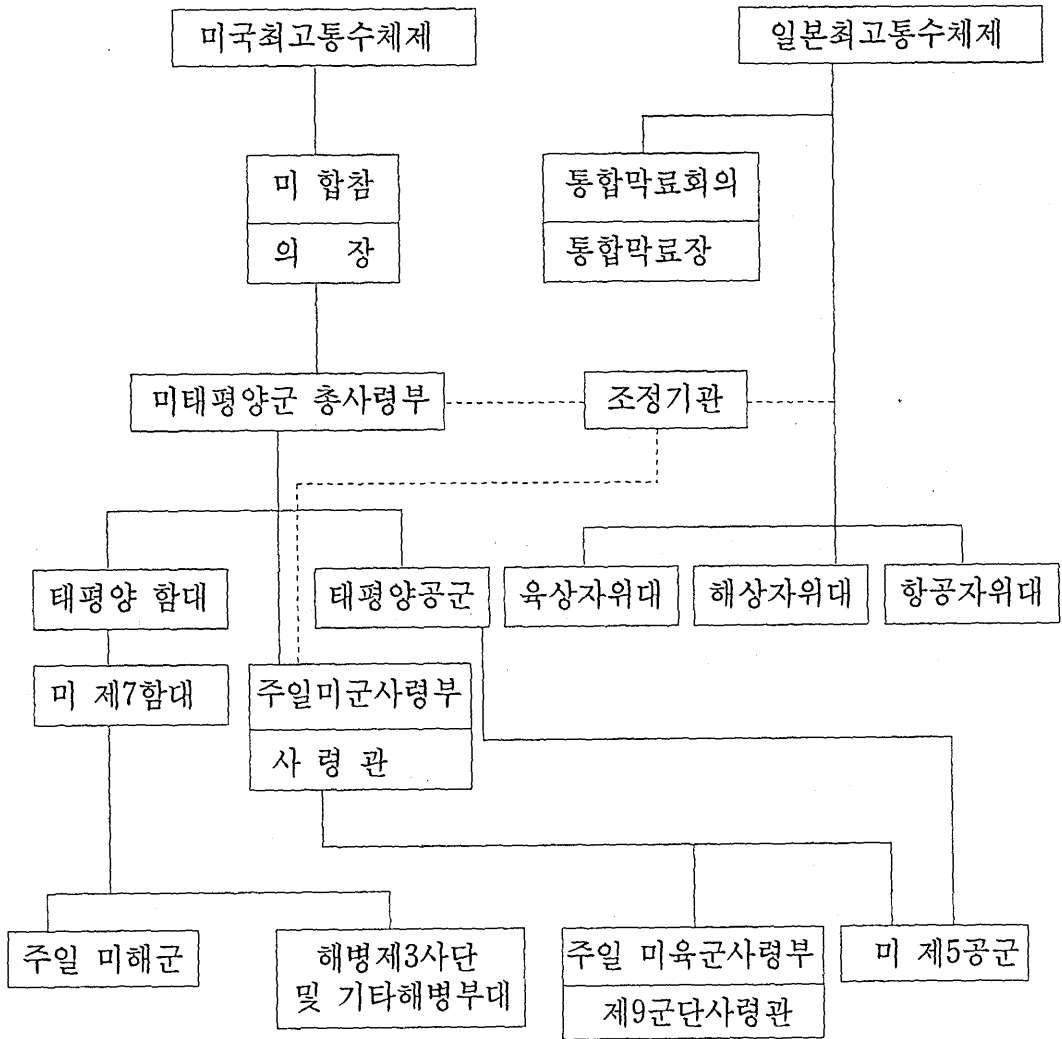


* 범례 : ————— 평시,
 - - - - - 위기사, 전시

* * ACE : 구주연합사령부, ACLANT : 대서양연합사령부,
 ACCHAN : 해협연합사령부, SACEUR : 구주연합군 총사령관,
 기획집단 : 미·캐나다 지역 기획집단

자 료 : The Federal Minister of Defense를 근거로 작성(오관치외, 앞의 책)

※ 미·일 작전협력 유형



* 범례 : ———— 평시
 - - - - - 위기시, 전시

자료 : 오관치 외, 앞의 책에서 재인용

Ⅳ. 주한미군 및 작전통제권 문제관련 남북한 주요주장

1. 북한측 주장

가. 주한미군 문제

(1) 주요계기별 주한미군 철수 주장

- 노동당 제3차 대회 「평화통일에 관한 행동강령 선언문」
(’56. 4. 28)
 - 조선에서 달성된 정전의 성과를 공고한 평화어로 전환시키기 위해 조선에서 미국군대와 중국인민지원군 등 외국군대 철거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해야 함.
- 외무상 남일, 제네바정치회의 연설(’54. 6. 15)
 - 가장 짧은 기간내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무력을 철거시키도록 해당국가 정부에 권고할 것과 외국군대 철거기간은 제네바회의 참가국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할 것을 제의함.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 선언문」 (’49. 6. 28)
 - 통일사업은 조선인민 자신이 실천해야 하며 미군과 「유엔조선위원회」의 즉시 철수를 요구함.
- 해방 15주년 경축 김일성 연설(’60. 8. 14)

- 남북연방제 실시를 제의하며 이를 위해 남조선에서 미군을 즉시 물러가게 하고 남북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이하로 축소해야 함.
- 최고인민회의 제2기 11차회의, 남북당국간 「무력불행사 협약」 체결 제의('62. 6. 21)
 - 남조선에서 미군침략군대의 당장철수, 미국군대가 완전히 철거하는 조건하에서 남북조선군대 각각 10만이하로 축소 제의함.
- 대유엔 정부비망록('66. 7. 21)
 -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남조선 당국이 외국과 체결된 일체 군사조약과 협정을 폐기하는 조건하에서 북측은 외국과 체결한 군사조약을 폐기할 용의가 있음.
- 제24차 유엔총회 관련 정부비망록('69. 10. 8)
 - 남조선에서 미제 철거후 민주주의적 진보적 세력이 정권을 쥔다면 통일문제를 협상할 용의가 있으며, 외군철수후 외세 간섭 없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중앙정부를 세워야 함.
-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회의, 「8개항 평화통일방안」 제시('71. 4. 12)
 - 미군 즉각 철수후 북남의 병력을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해야 함.
- 최고인민회의 제5기 2차회의 정무원 총리 총화 보고 ('73. 4. 5)

- 우리가 제의한 「5개항 군축제안」('73. 3. 15 남북조절위 2차회의)에 북과 남이 합의하여 조속히 해당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이 나가면 공화국 군대를 자진해서 20만 이하로 감축할 것임.
- 체코공산당 제1서기 후사크 환영 김일성 연설, 조국통일 5개강령 제시('73. 6. 23)
 -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와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을 중지시켜야 함.
- 외교부 부부장 이종욱, 제29차 UN총회 연설('74. 11. 25)
 - 남조선의 외국군대는 유엔의 모자를 벗어야 하며, 가장 빠른 기간내에 일체 무기를 가지고 모두 철거해야 함.
 - 외국군대 철거후 조선이 어떤 외국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 되는 것을 반대함.
- 노동당 제6차 대회 김일성 연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80. 10. 10)
 - 연방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조·미평화협정 체결과 남조선 주둔 미군 철수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함.
 - 통일이전 다른나라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조약」을 비롯, 민족적 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협정은 폐기해야 함.
 - 연방국가의 영토에 다른 나라 군대주둔, 다른 나라 군사기지 설치를 불허함.

- 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 연합회의, 「3자회담」 제의 ('84. 1. 10)
 - 군사훈련 중지와 남조선 주둔 미군 철수문제 등을 토의할 남·북한 및 미국 「3자회담」 개최를 제의함.

- 북한 정부성명, 「다국적 군축협상」 제의 ('87. 7. 23)
 -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미국의 핵무기 철수 및 군사기지철폐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다국적 군축협상회의」 개최를 제의함.
 - 1988~1991년간 3단계 무력축소(10만명 이하), 남북한 병력 축소에 따라 남조선주둔 미군도 단계으로 철수함.
 - 북남의 무력이 각기 10만이하로 축소되면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력을 완전철수해야 함.

- 최고인민회의, 「불가침문제해결 위한 북남국회연석회의」 개최 제의('88. 7. 21)
 - 상호무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이와 병행하여 조선반도 주둔 외군·핵무기 단계적 철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남북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초안」을 제시함.

- 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정무원 연합회의, 「포괄적 평화방안」 제의 ('88. 11. 7)
 - 남조선주둔 미군의 철수담보 등을 포함한 「평화보장 4원칙」을 제의함.
 - 남조선주둔 미군병력 철수는 '91년 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함.
 - 1단계('89년 말까지) 미군사령부 및 지상군 북위 35도 30분

이남 철수

- 2단계('90년 말까지) 지상군 전체 철수
 - 3단계('91년 말까지) 해·공군 전체 철수
- 단계적 미군철수와 남북 무력 감축을 위한 남북한 미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제의함.
- 최고인민회의 김일성 시정연설, 「조국통일 과업실현을 위한 5개 과제」 제시 ('90. 5. 24)
- 북남군축 및 남조선 주둔 미군의 철수 등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함.
- 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정무원 연합회의, 「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군축 제안 10개항」 채택 ('90. 5. 31)
- 조선반도에서의 일체의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그 장비들이 남북 무력감축에 상응하게 단계적으로 완전 철수해야 함.
-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 「4개 요구사항」 제시 ('93. 4. 8)
- 국제무대에서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북남사이에 화해와 불가침을 약속한 오늘에 와서 미군을 남조선에 계속 붙잡아 둘 조건이 없으며, 남조선은 미군을 철수시킬 의지를 표명해야 함.
- 「4개항 요구사항」
- ① 외세의존정책 폐기
 - ② 남조선에서 미군철수 의지 표명
 - ③ 외국군대와 합동군사연습 영원히 중지

④ 미국의 핵우산에서 탈피

※ 북한측 주장논리 요약

- 미군의 남조선 강점으로 하나의 조선은 둘로 갈라지고 우리 인민은 분열의 고통과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되었음.
- 미국은 2차 대전 중 토의된 조선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원칙들과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 3390 B에 따라 오래전에 남조선에서 자기군대를 철수시켰어야 했음.
- 미국은 남조선에서 군사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시키고 핵무기들과 신형군사장비를 끌어들이면서 정세를 계속 긴장시켰으며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왔음.
- 현시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수하는 것이며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임.

(2) 최근의 주한미군 역할변화 주장 및 4자회담 관련 주장

- 북한은 1994. 4. 28 외교부 성명을 통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의 실제 당사자를 미국으로 규정하며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주장은 일부 후퇴하였음.
- '92. 1. 22 김용순 노동당 비서, 미·북 고위급회담시 발언
 -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며, 연방제 통일후에도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할 수 있음.”

- '92년 6월 하와이 국제학술회의시 북한의 이삼로(현 태국대사) 발언
 - “통일후 필요하다면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할 수 있음.”
 - '94년 4월 김용순 노동당 비서, 베탄코트 세계평화회의 사무총장 면담시 언급
 - “주한미군의 소규모의 상징적 주둔은 필요함.”
 - '95년 9월 미 카네기재단 연구원 셸릭 해리슨, 방북시 김영남 외교부장 면담내용 전언
 - “북한이 주한미군 주둔을 반대치 않음을 확인했음.”
 - '96. 4. 29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이종혁 부위원장, 미 조지아대 「남북한-미관계에 대한 학술회의」시 발언
 - “주한 미군이 한반도에서 평화유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나 현재는 신뢰구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미군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함”.
 - 그 전제조건으로서
 - “미·한, 미·일간 합동훈련 등 군사연습 중지, 공격적인 대북한 발언을 중단, 공격용 무기의 남한 공급을 중단해야 함.”
 - '96. 5. 17 리찬복, 시거센타·요미우리신문 세미나(워싱턴) 발언
 -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북억제에서 한반도 전체의 안정자와 균형자로 변화되어야 함.”
 - “미군이 한반도에 무한정 주둔할 것이라는 상호이해에 입각하여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최근 북한은 4자회담 문제와 관련, 1996. 9. 2 미군주둔 51주년

관련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4자회담에서 의제화할 것을 주장

- “미군이 남조선에 더이상 남아 있어야 할 그 어떤 명분도 없으며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철거시킬 용단을 내릴 가장 좋은 시점임.”
- “4자회담의 목적이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하는데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회담에서 주의제는 미군철거문제로 되어야 할 것임.”
- “미국측이 4자회담에서 남한 주둔 미군의 즉시적인 철수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없다면 그런 형식의 회담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음.”

나. 작전통제권 문제

○ 북한측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 「남조선 정권의 연속성」,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당사자 자격시비」 등의 주장과 관련, 우리측의 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계속하여 왔음.

* 관련 주요근거

-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회의 허담 보고(1984. 1. 25)
- 외교부 대변인 담화(1994. 9. 9 및 10. 13)
- 로동신문 논설(1994. 12. 4) 등

○ 남조선에서 군사통수권을 틀어쥐고 있는 실권자는 미 국방성의 현지 대리인인 남조선 강점 미군사령관임.

- 남조선정권은 군사통수권마저 외세에 빼앗긴 허수아비 정권임.

- 원래 남조선 군대는 남조선 인민들의 의사와 이익에 따라 조직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부합되게 만들어진 고용 군임.
 - 미국은 1954년 11월 「한·미 합의의사록」을 통해 조선전쟁시 행사하던 한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장기적으로 틀어쥐게 되었으며
 - 1978년 11월 연합군사령부 창설로 남조선 괴뢰군은 남조선 강점 미군에 편입됨으로써, 국군에 대한 통수권을 다시 확인·강화하였음.
 - 미국은 남조선내에서 일체 무기와 무장력을 통제, 미국의 승인 없이 누구도 마음대로 국군을 움직일 수 없음.

- 남조선군대에 대한 통수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우리사이에 평화 보장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니고 자기 군대에 대한 통수권도 가지지 못한 남조선이 끼어드는 것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에 훼방을 놓으려는 행위임.
 - 미군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있는 한 미국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의 회피할 수 없는 법률적 당사자임.
 - 남조선 당국은 자기 무력에 대한 완전한 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우기 남조선 강점 미군에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우리측 입장

가. 주한미군 문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남조선에 주둔한 미군으로 말미암아 민족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이 초래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 1949년 철수한 미군이 한국에 다시 주둔하게 된 것은 다음아닌 '50. 6. 25 북한 인민군이 38선을 넘어 남침한 한국전쟁의 발발에 따른 것임.
 - － 북한측의 불법남침에 대한 유엔 결의에 따라 우리 국군과 함께 침략군 격퇴와 이 땅의 자유와 평화의 수호를 위해 미군이 주둔하게 된 것임.
 - － 따라서 6. 25 남침이 없었다면 주한미군은 이땅에 존재하고 있지도 않을 것이며, 북한측의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정책 추구하고 끊임없는 도발로 인해 현재까지 머물고 있는 것임.
- 현재의 미군 주둔은 1954년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것임.
 - － 이는 한·미 양국이 과거 남북간 군사적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북한측의 계속되는 대남 군사위협에 대처와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반드시 억제하겠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였기 때문임.
 - － 또한 주한미군은 적의 침공에 대한 순수한 자위적 방어목적으로 주둔한 것임.

- 주한미군의 존재는 오히려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으며,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한반도 전쟁억지력으로서 기능을 다해 왔음.

주한미군은 무력증강과 신형무기 반입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는 통일의 장애물이라는 주장에 대해

- 주한미군의 장비보강과 한반도 방위능력 증대는 근본적으로 북한측의 대남 무력통일정책과 위협적인 공격용 무력증강에 대처할 필요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임.
 - 북한측은 '60년대 이후 「4대 군사노선」('82. 12 채택)에 따라 매년 GNP의 30% 이상을 군사비에 투입하여 군사력을 증강하여 왔고, '80년대에는 「기계화」, 「자주화」, 「화학전화」 정책을 추구하여 대량살상용 공격 무기생산을 계속 증강함으로써 외국의 지원없이 단독으로 기습남침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전쟁준비를 해놓고 있음.
 - 또한 북한측은 최근 우세한 전력에 의한 속전속결 개념에 따라 평양-원산선 이남의 휴전선 인근으로 총병력 65% 이상을 남침 공격주력부대로 전진배치해 놓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십만명 특수부대 병력, 대량살상용 공격무기의 휴전선부근 전진배치 등 언제라도 「속도전」에 의한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냉전종식으로 국제사회는 평화와 긴장완화로 나아가고 있고 남북사이에 화해와 불가침을 확약한 오늘에 와서 미군을 더 이상 붙잡아 둘 조건이 없으며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북한측이 주한미군 철수만이 평화의 조건인 것처럼 왜곡 선전하고 있으나 주한미군 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와 미국간의 당사자 문제임.
 -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억제와 동북아 지역의 정세안정을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임.
 - 북한측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남북합의서 「내부문제 불간섭」 정신의 명백한 위반임.
-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이 남아 있는 한 한반도의 전쟁재발을 막는 전쟁억지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임.
 - 특히 북한 핵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공세적 전력의 전진배치 등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로 보아 주한미군의 유지가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주한미군은 그 역할이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적 역할로 변화되었으며 NATO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합군」 개념에 입각하여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하에 운용되고 있음.
 - 따라서 주한미군의 장래문제는 남북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이루어지고,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이 소멸되는 경우, 한반도 및 주변정세를 감안하여 한·미간 협의·

검토할 사안임.

-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을 합의한 「기본합의서」는 이행·실천을 앞두고 북한측의 일방적 중단에 의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음.
 - － 북한측은 더이상 주한미군 철수주장으로 「상대방 내부문제 불간섭」 등 기본합의서 정신에 위배되는 억지주장을 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진지한 대화와 불가침 부속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사항의 이행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임.
- 북한측은 주한미군 철수주장을 계속하기 보다 군사공동위 가동을 통해 남북간 채택된 기본합의서의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제12조) 조항 등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의 실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최근 북한측의 주한미군 역할변화 주장 및 4자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의 주의제화 주장에 대해

-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미 양국의 북한의 군사위협과 동북아 정세변화 평가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한·미간에 결정할 문제임.
 - － 따라서 북한측이 제기하는 주한미군 역할변화 주장이 검토되기 위해서는
 - 첫째, 북한측이 이제까지 주장한 주한미군 주둔 원인에 대한 사실 인정(6. 25 전쟁 발발에 대한 사실인정)과
 - 둘째, 향후 「남북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북한측의 군비축소 조치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실질적 진전(남북군사공

동위 개최 등)

- 셋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포괄적 지역안전보장 기구(다자안보대화기구)」의 창설 및 이에 대한 북한측의 참여문제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 또한 4자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 논의 주장은

- 4자회담에 대해 조건을 부가하여 그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함은 물론
- 대미평화협정('94. 4.28) 또는 미·북 잠정협정('96. 2.22) 체결 주장 이후 미·북관계 미진전의 책임을 주한미군에 전가하려는 것임.

○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이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양자간에는 사실적인 관련성(인과관계)이 없음.

- 북한측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취지에 맞게 상대방에 대한 내정간섭적 주장을 철회하고 먼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성의있는 자세로 4자회담에 응해 나와야 할 것임.

※ 북한측의 주한미군 역할변화 주장의 의도

- 주한미군의 상징적 수준의 일부주둔 및 성격변화시 한반도 주둔 인정이라는 「제스처」로 대미평화협정 체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변화를 유도, 대미접근을 가속화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역할을 무력화시켜 한·미안보협력체제를 와해시켜보려는 의도로 보임.

- 또한 북한측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태도변화는 안보 및 생존 전략과 경제적 실리추구의 대미접근에서 출발하였으나,
- 북한측 군사력의 상대적 우세에 대한 비관적 평가, 중·일의 군비 경쟁 등으로 인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 및 전쟁억제자로서의 미군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 인정으로도 볼 수 있음.

나. 작전통제권 문제

남한은 군통수권이 없기 때문에 책임있는 대화상대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74조에 엄연히 대통령의 전권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국가주권사항」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는 것이며, 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한국정부의 판단에 따라 처리될 「한국내부문제」임.
 - 작전통제권 반환에 대한 판단 및 결정은 한국의 국가주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북한이 간섭할 사항이 아니며, 북한이 이를 시비한다면 우리 내부문제(특히 대외관계사항)에 대한 부당한 간섭임.
 - 이는 남북간에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제2조 및 제3조의 ① 상호내부문제불간섭과 ② 비방·중상중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4자회담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임.
 - 군작전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군통수권의 일부인 「작전통제권」을 한시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인해 군통수권이 훼손되

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례는 이미 국제적으로도 「연합군 또는 다국적군의 효율적 지휘체계」를 위해 사용하고 있음.

-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던 작전지휘권은 1954년 한·미 합의의사록에 의해 작전통제권으로 축소되었고, 그러한 작전통제권도 1978년 한·미 연합사령부 창설이후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행사하고 있음.

* 현재 전시 작전통제권을 제외한 평시의 모든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행사

- 우리정부는 지금까지 한번도 미국에 대해 작전지휘권 또는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바가 없음.

- 1950년 당시 절차상 유엔의 기관인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법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제법인격을 가진 유엔에 이양한 것임.

- 그리고 현재 한국군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령부는 어디까지나 한·미 양국의 합의에 의해 설치된 「공동방위기구」이며 미국의 기관이 아님.

- 북한측이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문제를 가지고 「미군의 남한 강점」 또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예속상태」 운운하면서 책임있는 대화상대방의 자격을 시비하는 것은 사실을 날조·호도하는 것임.

한·미연합군에 대한 군사통수권이 미국에 있으므로 현재 무력을 대치한 법리적 당사자는 미국이며 평화협정의 당사자도 미국이라는 주장에 대해

- 우리가 작전통제권을 이양하게 된 것은 북측이 일으킨 불법남침전쟁을 막기 위한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는 바,
 - 북한측이 도발한 한국전쟁중 군작전의 효율성을 위해 작전지휘권을 UN군사령부에 일시 이양한 것으로서, 북측의 우세한 군사력을 동원한 남침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적 조치였음.

- 북한측이 우리측은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화상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정치적 모략행위임.
 -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최초로 공격한 대상은 남한이며, 남북한이 주된 「교전당사국」이었음.
 - 또한 한국전쟁은 남북사이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주된 교전당사자도 남북한이었으며, 현재 대치하고 있는 군대도 남북한군이고 한반도 평화에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도 남북한임.
 - 따라서 평화체제 전환문제의 실제적·직접 당사자는 당연히 한국전쟁의 주 교전국인 남북한인 것임.
 - 작전통제권은 군사적 문제에 관한 것이고 평화협정의 체결은 정치적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양자는 별개 문제임.

※ 북한이 중공군(중국인민지원군)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겨준 경위

○ 1950. 12. 3 중·조 양당, 양국 정부는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와 조선인민군 연합사령부를 설치할 것을 협의·결정함.

— 중국과 북조선 인민군대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연합작전을 하도록 하기 위해 양국 정당·정부간의 협상을 통하여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 연합사령부」를 설치하고 작전범위 및 전선에서의 일체 활동을 연합사령부 지휘에 따르도록 결정하였음.

— 중국측에서는 팽덕회를 사령원(사령관) 겸 정치위원으로 추천하였고 북조선측에서는 두사람을 각각 따로 부사령원과 부정치위원으로 추천하였으며, 아울러 중·조 연합사령부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中國人民志願軍 抗美援朝 戰史』送審本,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편저, 1987, pp. 450~451.

○ 1950. 12. 7 중·조 연합사령부 구성을 위한 팽덕회·김일성간 회담

— 중앙의 제2통 전보는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 연합사령부 성립에 관한 문제임.

— 제2차 전역(제2단계 작전) 중에 지원군과 적후방의 조선인민군 제2, 5군단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합류하였음. 이때 제1군단에 더해 인민군이 제1전선 작전에 참전함으로써 병력이 이미 3개 군단, 14개 사단, 75,000여 명에 달하였음.

— 중·조인민군대의 효과적인 연합작전을 위해 중국과 조선의 「양당」은 협상을 거쳐 양군 연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결정

하였으며, 팽덕회를 연합사령부 총사령관 겸 정치위원으로 추천하였음.

- 중앙의 지시에 따라서 팽덕회 총사령관은 12월 7일 김일성과 우호적인 회담을 진행하고, 수일내에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 연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음.
- 연합사령부 성립 후에 작전범위와 전선의 일체 활동은 모두 그 지휘에 들어가며 후방동원, 훈련, 군정경비 등은 조선정부가 직접 관할하기로 하였음.
- 연합사령부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동시에 연합사령부에 두개의 기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음. 하나는 중국인민지원군 사령부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인민군 참모부임.
- 팽덕회 총사령관이 연합사령부 사령관 겸 정치위원이 되고 김웅이 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박일우가 연합사령부 부정치위원에 임명되었음.
- * 杜平, 『在志願軍總部』, 北京: 解放軍出版社, 1989(1991 제2판), pp. 141~142
- * 동 책자는 당시 중국인민지원군 정치부 주임이었던 두평의 회고록임.

3. 남북회담시 쌍방주장 비교

가. 주한미군 문제

(1) 남북조절위원회

우 리 측	북 측
<p>외국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그러나 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평양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과연 한국의 평화가 이 이상 더 불안이 없을 것이냐 하는 그러한 증거가 나왔을 때에는 미군은 나가지 않을려고 해도 우리가 나가달라고 할 것임.</p> <p>그러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통일하고는 관계없이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 와있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7·4공동성명의 정신은 바로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는 이러한 증거를 하루빨리 추구하자는 노력에서 7·4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임.</p> <p>(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공동위원장회의)</p>	<p>외세의 간섭을 허용하거나 외세에 의존한다면 결국 민족의 이익을 고수할 수 없게 되며 제국주의열강들의 희생물로밖에 될 수 없음.</p> <p>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힘으로 풀고자 하고 전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며 북과 남 사이에 대결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협작을 이룩하자고 하는 오늘에 와서 외세와 결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p> <p>따라서 남조선에서 응당히 미군을 빨리 철거시켜야 하며 일본이 재침책동을 막고 자주성을 견지해야 할 것임.</p> <p>(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공동위원장회의)</p>
<p>솔직히 말해서 UN군 또는 미군은 우리가 돌아가라고 그래야 돌아가지, 여러분들이 돌아가라고 그래서 돌아갈 겁니까, 당신들이 돌아가</p>	<p>미국을 나가라고 하는 것이 7·4 공동성명에 철저히 부합되는 것이지 미국을 뒤희라고 하는 것이 7·4 성명에 어떻게 부합되는가, 그럼 미</p>

우 리 측	북 측
<p>라고 그러면 더 안돌아감. 솔직히 말씀드려요, 실정이 그래요.</p> <p>가급적 뭐 속히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 자꾸 지금 이 상태에서 돌아가라 이렇게 큰소리 하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 되는 것임. 여기 더 있게되는 결과가 됨.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일단 돌아갔던 미군이 왜 다시 왔습니까, 이거 그 사람보고 돌아가 달라 그럴 사람은 우리임.</p> <p>그것은 이 7·4공동성명의 정신, 평화적통일에 관한 것, 이런 것이 다 진척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한국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의 전망이 보인다 그럴적에 돌아가라고 해야만 돌아가고 또 세계가 납득하고 UN이 이해를 해줄 것임. 그 점을 깊이 생각해 주기 바람.</p> <p>우리가 반드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게 아님. 언젠가는 돌아가야지요, 될수록 빨리 돌아가야지요, 될수록 우리가 빨리 통일의 전망이 똑바로 서야지요,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면 어느 때 돌아가느냐, 영영 있을리는 없어</p>	<p>국을 남겨놓자고 하는것이 미국이 계속 있어달라고 하는 것이 그럼 그것이 통일을 위한 것이고, 7·4성명에 부합되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7·4성명이란 것이 미국이 나가는 것이 통일이 되고 자주적 통일의 전제가 마련되지, 미국이 있는 조건에서 자주적 통일의 전제가 조성될 것이 없음.</p> <p>우리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 하자는 것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에서 미군을 내보내고 내정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며 민족내부문제인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조선에서 전쟁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내보내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실제적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p> <p>그러므로 이번 조치는 7·4공동성명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나라의 통일원칙과 자주적 통일원칙과 평화통일원칙을 성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조치임.</p> <p>미군을 내보내는 것이 매국이나, 미군을 남조선에 그냥 남아있으라</p>

우 리 측	북 측
<p>요. 그렇게 오래 있을리도 없다고 생각함.</p> <p>평화적인 통일방법을 정착시킴으로써 다시는 한반도에 평화의 파괴가 없다고 우리들과 당신들과 UN과 UN가입국들과 또한 미국 또는 미국 시민, 한국참전 각국들이 확고하게 실증적으로 자신을 가질 때에 그때에 돌아가게 됨.</p> <p>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젓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말이 있음. 그것을 반드시 꺼낼 필요도 없이 평화적 통일방안에는 성의가 없고 미군 돌려보내고 무력 뒷받침하고 소위 남조선혁명을, 적화통일을 서두르는 그런 속셈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갖지 않게 해주셔만 우리 이 남북대화가 성공한다고 나는 확신함.</p> <p>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통일은 늘어만가고 외군의 철수는 실현되지 않음.</p> <p>(남북조절위 제5차 부위원장회의)</p>	<p>고 하는 것이 매국이나, 그것은 명백함.</p> <p>우리의 이 정당한 조치가 실현되면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3대원칙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한 매우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 것이며, 북과 남사이에 대화도 또 성과적으로 추진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음.</p> <p>지금까지 귀측에서 미군 나가라는 소리를 못했다면, 좋기야 우리가 미군 나가라고 하고, 우리 합세해서 미군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미국 나가라고 하는 건 잘못이라고 하고 미국 있으라고 하는 것은 잘했던 말인가?</p> <p>(남북조절위 제5차 부위원장회의)</p>

(2) 남북적십사회담

우 리 측	북 측
<p>귀측은 오늘도 이 실무회의에 맡겨진 과제는 외면한채 엉뚱한 문제들을 가지고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측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 증상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음.</p> <p>회담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대해서 말한다면 어찌 우리측에서도 할 말이 없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첫째로, 회담과는 관계가 없고 둘째로는, 회담 분위기를 악화시켜 남북관계 전반에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며 세째로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고 서로 비방 증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7·4남북공동성명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측은 오직 인내로써 자중하고 있는 것임.</p> <p>그러나 귀측은 오늘도 계속 이 적십자 인도주의 회담에 정치, 외교, 군사문제들을 들고 나와 「1천만 이산가족 찾기 사업」의 진전을 가로 막고 있음.</p> <p>(남북적십자회담 제25차 실무회의)</p>	<p>외세를 등에 업고 무모한 전쟁정책을 계속 추구하게 된다면 전쟁은 어느 때든지 터질 수 있으며 전쟁이 터지면 인도주의도, 인도주의 회담도 다 무의미하게 될 것임.</p> <p>(남북적십자회담 제24차 실무회의)</p>

(3) 남북고위급회담

우 리 측	북 측
<p>나는 또한 「외세의존, 「청탁외교, 「분열주의」 운운하는 귀측 비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음.</p> <p>귀측은 우리측에 대해서 『미군을 붙잡아 두기 위해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데 난색을 보인다』는 것은 외세의존의 극치』라고 비난을 했음.</p> <p>나는 귀측의 이 발언이 사태의 진실을 얼마나 잘못 파악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화상대방을 고의적으로 모욕하기 위해 꾸며낸 말인가를 의심하게 됨.</p> <p>우리측은 미군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불가침선언 채택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님.</p> <p>우리측이 채택하자고 하는 불가침은 남북의 7천만 겨레가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불가침을 약속하자는 것임.</p> <p>귀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남북간의 평화체제 구축과 사회개방 그리고 교류협력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조건에서 서둘러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구심을 갖고 있음. (중략)</p>	<p>미군과 핵무기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음.</p> <p>지금 남조선에는 4만여명의 미륙해공군이 상시 주둔해 있고 1천여발의 핵무기가 항시적으로 배치되어, 우리 민족의 생존을 대단히 위협하고 있음.</p> <p>남조선에 와있는 미군이 미국의 대아세아정책과 군사전략을 집행하는 것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것은 비밀이 아님.</p> <p>남조선에 배치된 1천여발의 핵무기는 우리 민족을 수십번 멸살시키고도 남을 방대한 무기이며, 미국은 우리 나라에서 누구와도 협의없이 임의의 순간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임.</p> <p>이것은 남조선에 와있는 미군과 핵무기가 조선반도의 평화를 엄중하게 유린하는 가장 큰 불안요소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p> <p>이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우리가 평화를 실제로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임.</p>

우 리 측	북 측
<p>나는 귀측이 우리측의 북방정책에 대해 「청탁외교」나, 「사대외교」나 또는 「분열주의」 운운하고 있는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음.</p> <p>최근 귀측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고 미국과의 접촉을 빈번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귀측의 주장대로라면 곧 「청탁외교」나 「사대외교」 또는 「분열주의」로 비판받아 마땅함.</p> <p>대한민국은 엄연한 주권국가로서 중국·소련 등 사회주의국가들과 관계개선을 추진할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음.</p> <p>현재 남과 북의 동시 수교국 수가 80여개국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귀측도 주지하고 있는 일임.</p> <p>이웃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려는 우리의 발전적 대외활동조차 「분열주의」, 「사대주의」 등으로 헐뜯는 귀측의 논리는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임.</p> <p>우리는 귀측이 같은 민족으로서 개방과 변영과 적극적인 국제활동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음.</p> <p>우리측은 미군을 붙잡아두기 위</p>	<p>남의 군대와 남의 핵무기를 제나라 땅에 두는 것은 민족적 존엄의 견지에서 보아도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함.</p> <p>지금 세계적으로 자주성을 지키고 민족적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나라들은 누구나 다 자기 나라에 외국군대의 주둔이나 핵무기의 배치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핵무기가 자기 나라 주변 평해를 통행하는 것마저 다 금지하고 있음.</p> <p>이런때에 우리 민족만이 제나라 땅을 외국의 핵군사기지로 내맡기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의 민족적 존엄을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말 아니할 수 없음.</p> <p>우리는 미군과 핵무기 철수를 외면하거나 먼 훗날의 일로 돌려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본문제로 내놓고 이를 진지하게 달라붙어 협의할 때가 이제는 왔다고 생각함.</p> <p>(제1차 남북고위급회담)</p> <p>우리는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거나 외세에 의존하려는 자세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고 생각함.</p> <p>귀측은 8.15후 45년이 지난 오늘</p>

우 리 측	북 측
<p>해서 불가침을 약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남혁명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외면하며 남북관계개선을 기피하고 있는 귀측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곧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기초위에서 믿을 수 있고 실의지와 확고한 보장장치가 뒷받침하는 튼튼한 불가침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임.</p> <p>주한미군은 6.25전쟁 때문에 다시 들어온 것이며 귀측의 남침위협만이 없어진다면 그 존재이유도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것임.</p> <p>따라서 문제는 주한미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기피하고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기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귀측 스스로에게 있는 것임.</p> <p>(제3차 남북고위급회담)</p>	<p>에 와서도 의연히 외세의존의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p> <p>북남불가침선언 채택문제만 놓고 보아도 이 문건을 채택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귀측 태도의 밑바닥에 중요하게는 미군을 남조선에 계속 붙잡아두려는 생각이 깔려있다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음.</p> <p>북과 남이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면 전쟁을 막기 위하여 남조선에 와있다고 하는 미군은 응당 남조선에서 철수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더없이 좋은 일로 될 것임.</p> <p>그러나 미군을 붙잡아두기 위하여 북남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데 난색을 보인다는 것은 외세의존의 극치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치임.</p> <p>둘째로, 우리는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거나 외세에 의존하려는 자세를 철저히 배격하여야 한다고 생각함.</p> <p>(중략)</p> <p>통일이 절박하고 통일노력이 요구되면 될수록 우리는 외세에 의존</p>

우 리 측	북 측
	<p>하러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힘을 믿고 민족주체적인 노력에 의거하여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임.</p> <p>그러나 귀측은 8.15후 45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도 의연히 외세의 존의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p> <p>우리는 바로 이러한 자세가 우리의 회담을 전진시키는데서 본질적인 장애로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음.</p> <p>(제3차 남북고위급회담)</p>
<p>작년도에 제출한 보고서, 매년 뭐 같습니다마는 먼저 유엔군 사령부의 임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창설됐고 전쟁때 어떤 나라 군대를 지휘했고 하는게 나와요. 그리고 휴전협정은 어떤 자격으로 체결했다 하는게 나옴.</p> <p>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엔군 사령관은 유엔 깃발 아래서 싸운 유엔회원국 군대(유엔회원국 군대는 16개 군대 맞습니다)와 대한민국 군대를 대표하여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서명했다』는 것임. 17개 나라의 군대를 대신해서</p>	<p>이런 말하자면 내용들이 명백히 시사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결국 조선의 평화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남측하고 해결할 문제가 따로 있고, 동시에 우리하고 미국하고 해결할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 부언해 두고.</p> <p>유엔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정전협정조인당시, 정전협정에 조인해서 유엔측에 제출한 보고서가 아님. 이 보고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해마다 제출하는 보고서인 까닭에 그전에 모든 사실이 구체적으로 잘못 반영돼서 제출되는 보고도 있음.</p>

우 리 측	북 측
<p>그런 자격으로 서명한 것임.</p> <p>그리고 거기 어떤 대목이 더 그 후에 나오는가 하면 『정전협상 기간중,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와 중국지원군 사령부측의 요청에 의거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정전협정을 계속 준수할 것을 보장해 왔다』 하는게 들어 있음. 만일 한국이 정전협정을 준수해 주지 않는다면 정전협정이 성립될 수 없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협정체결전에 거기에 동의한다. 참여한다하는 것을 밝혔고 그후에 귀측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준수한다는 것을 보장해 왔는데,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왜곡해서 해석을 한다든가 하는 논리에 집착한다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자는 마당에 일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것임.</p> <p>그래서 이 문제는 그 이상 더 왜곡된 주장을 하지 말고 물론 선전선동용으로 일반대중에게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협상 테이블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자 확실하게, 그래야 협상이 되는 거란말임.</p> <p>(제5차 남북고위급 준비 제2차 대표접촉)</p>	<p>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하자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측은 명백히 얘기했음. 평화협정문제, 평화문제 해결에서는 남측이 지금 처지에서는 우선 법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당사자가 못된다, 이거예요. 국제법적으로 봐도 평화협정문제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정전체결권자로 되어 있음. 국제협약 한번 보기바람.</p> <p>그리고 현실적으로 평화협정 이행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임. 자격문제는 누구 말마따나 이남을, 남조선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는 문제가 아닌게고. 실제적으로 이행하자면 미군핵무기 문제, 남조선에서 일체 군사를 움직이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임.</p> <p>그렇기 때문에 이행 당사자로서는 우리하고는 아직 맞설게 못됨. 그런데 내가 말하자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측과 평화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님.</p> <p>남측과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있음. 그것이 어떤 것인가. 예하면 군축문제, 불가침같은 문제임. 우리가 말하</p>

우 리 측	북 측
	<p>는게 바로 이것임.</p> <p>이런 의미를 살려야지 최근 시기 유엔에 제출한 이 보고서를 놓고 말한다면, 이 보고서는 사실상 우리 측의 입장과 지난 시기 역사적 사실에 기초했다고는 말할 수 없음.</p> <p>내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음. 송대표가 지난 시기부터 우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인용하면서, 그것을 남측 주장을 고집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p> <p>송선생이 그래서 위대한 수령의 교시에 담겨진 그 위대한 사상, 그 위대한 진수, 그 위대한 본질을 알면 어느정도 아시겠느냐 하는게 문제가 됨.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사람도 그 사상의 진수를 채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음.</p> <p>그래서 그런데 인용한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하는가.</p> <p>역사적으로, 전면적으로 그 역사의 진수를 새겨야 함. 지금 교시 진수는 무엇인가. 그 진수를 역사적으로 소개하면 그전에 교시가 또 있음.</p>

우 리 측	북 측
	<p>즉 미군철수를 전제로 한 조건에서, 남조선이 미군통솔권을 넘겨 받은 조건에서 제기된, 평화문제다 그 말임.</p> <p>(제5차 남북고위급 준비 제2차 대표접촉)</p>
	<p>최근에 있는 미국과의 「연례안보 협의회」에서 귀측이 「전시지원협정」을 체결하고 우리에게 대한 압력과 위협조치를 공동으로 모의하면서 노골적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는 사실은 이것을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음.</p> <p>「전시지원협정」은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남조선의 대미종속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북남관계의 견지에서 보아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음.</p> <p>우리를 지금도 적대적인 상대방으로 간주하고 미국과 함께 체결한 이 군사 「협정」은 본질에 있어서 북과 남의 군사적 대결을 심화시키고 전쟁분위기를 가열시키는 새로운 엄청난 전쟁문서임.</p> <p>우리가 거듭 경고한 바와 같이 큰 나라를 등에 업고 대결의 입장에</p>

우 리 측	북 측
<p>오늘 우리측의 긴급제안은 국제 조약상의 무조건적인 의무사항인 남북 쌍방이 보유하는 핵관련시설과 물질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는 별도로 남북 쌍방이 각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대측 지역의 군사시설과 민간시설 그리고 물질과 장소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p> <p>이같은 사찰대상에는 우리측의 경우 귀측이 원한다면 주한미군의 시설이나 기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이같은 사찰을 통해 소위 핵무기의 존재여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임.</p> <p>우리가 제안하는 한반도비핵화에 남북 쌍방이 합의하기 위해서는 상</p>	<p>서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려 하거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함.</p> <p>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통할 수 없음.</p> <p>민족내부문제인 북남관계문제와 통일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함.</p> <p>원래 우리 나라의 핵문제란 미국 핵무기가 남조선에 배치된데 그 발생근원을 두고 있으며 지금도 남조선에 배치된 미국핵무기문제는 우리 나라 핵문제의 기본내용을 이루고 있음.</p> <p>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무기문제는 제쳐놓고 오히려 오늘에 와서 있지도 않는 북의 「핵개발」을 문제시하면서 일방적인 「핵사찰」을 운운하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공정하지 못한 것임.</p> <p>지금 우리 민족앞에 제기되고 있는 과제는 전체로서의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 문제는 남조선에 배치된 미국핵무기문제를 떠나서는 논의될 수도 없는 것임.</p>

우 리 측	북 측
<p>호 신뢰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함.</p> <p>이러한 뜻에서 남북 쌍방간에 핵재처리시설 폐기에 관한 합의만 이루어지면, 우선 비핵화의 하나의 시범조치로 상호 상대방이 선정하는 자기측 지역의 군사 및 민간시설에 대한 동시사찰을 실시할 것을 제의함.</p> <p>(제5차 남북고위급회담)</p>	<p>문제를 순리로 공정하게 해결하자면 응당 30여년전부터 남조선에 실전배치되어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미국핵무기부터 철수하여야 하며 그런 기초위에서 북과 남에 대해서도 동시에 핵사찰의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p> <p>우리의 이 공명정대한 비핵지대화 제안이 실현되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의혹과 불신을 순조롭게 풀 수 있게 되고 현실적이건 잠재적이건 모든 핵위협을 깨끗이 청산하게 될 것이며 핵무기소유국인 미국이나 비핵국가인 우리나라 다같이 조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임.</p> <p>오늘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조속히 실현하는 것은 성숙한 요구이며 우리들에게는 이를 위한 충분한 가능성이 조성되고 있음.</p> <p>미국도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겠다고 하고 우리도 핵사찰을 받자는 것임.</p> <p>(제5차 남북고위급회담)</p>

우 리 측	북 측
	<p>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대미관계문제임.</p> <p>북남합의서의 기본정신의 하나는 북과 남이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동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하는 민족자주정신임. 귀측도 이것은 인정하고 있음.</p> <p>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로 되는 외세란 누구이겠는가, 그것은 모두에게 명백한 바와 같이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내정에 간섭을 하고 있는 유일한 외세인 미국임.</p> <p>그러므로 북남합의서에 담겨 있는 민족자주정신을 귀중히 여긴다면 응당 대미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임.</p> <p>그러나 귀측은 남조선에 있는 미군이 「전쟁억제력」이며 그것이 자주적 원칙을 구현하는데서 본질적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북남 대결시대의 대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미군도 그대로 두려 하고 있음.</p> <p>지어 나라가 통일된 다음에도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p>

우 리 측	북 측
	<p>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음.</p> <p>미군이 「전쟁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미군에 의존해서 보장하겠다는 말인데, 이것은 북남사이의 자주적인 평화노력을 귀측 자신이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까지 선언한 오늘의 새로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나 같은 것임.</p> <p>북남합의서에 담겨져 있는 자주 의 정신과 원칙 그리고 불가침에 관한 선언은 오늘 대미관계를 재조정하고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킬 것을 회피할 수도 없고 지체시킬 수도 없는 응당한 의무로 일정에 제기하고 있음.</p> <p>이와 같은 조건에서 귀측으로서는 지금 당장 미군을 다 철거시키지는 못한다하여도, 최소한도 그러한 의지와 태도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임.</p> <p>만일 귀측이 이렇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합당치 못한 논리로 종래의 대미관계를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귀측의 자주성에 대한 우리의 신뢰</p>

우 리 측	북 측
	<p>를 귀측 스스로가 허무는 것이며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원칙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귀측의 주장이 빈말로 되게 하는 것임.</p> <p>이렇게 되면 우리가 귀측을 그야말로 자주적인 대화상대방으로 믿고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음.</p> <p>진정으로 자주적원칙에서 북과 남이 주체가 되어 우리 민족끼리 나라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하면, 귀측이 먼저 철저한 자주적 입장에 서야 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대미관계를 재조정함은 물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킬 용단을 내려야 하며 이 문제를 회피하려 하거나 덮어두려고 하지 말아야 함.</p> <p style="text-align: right;">(제7차 남북고위급회담)</p>

(4) 남북 정치·군사분과위 회의

우 리 측	북 측
	<p>[초안]</p> <p>제1조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p>

우 리 측	북 측
<p>[해당조항 없음]</p> <p>6조는 외국의 침략행위에 대해서 불지원하고 불가담하는 것—그 의미. 우리가 하게 돼 있음.</p> <p>단, 불법적인 유엔의 현장에 반하는 그러한 외국의 침략행위에 대해서 다같이 가담한다거나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국제법적으로 불법행위임. 그건 안하게 돼 있음.</p> <p>그리고 외국의 거기에 대해서 무</p>	<p>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p> <p>⑥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외국의 무력사용과 침략행위에 가담하거나 그것을 지원하지 않으며 자기의 땅, 바다, 하늘을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p> <p>[제1차 수정안] : [초안]과 동일</p> <p>[제2차 수정안]:〈제1장 무력불사용〉 제6조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외국의 무력사용과 침략행위에 가담하거나 그것을 지원하지 않으며 자기의 땅, 바다, 하늘을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p> <p>[제3차 수정안]:〈제1장 무력불사용〉 제6조</p> <p>※문안은 [제2차 수정안] 제6조와 동일</p> <p>“상대방에 대한 외국의 무력행사, 침략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이건 무슨 소리인가?</p> <p>남측을 그 어떤 3국이 침략한다, 북이 아닌 제3자가 침략한다, 거기에 우리가 같이 가담하지 않는다—이걸 염두에 두는 것임.</p> <p>그리고 남측에서는 우리 북에 대해서 그 어떤 다른 나라가 우리 나</p>

우 리 측	북 측
<p>슨 제3국과의 관계...또 무슨 뭐 하늘을 제공한다, 안한다는 것은 양측의 고유의 군사권과 외교권임.</p> <p>양측의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또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의해서 국제적 결의에 의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각국이 판단할 문제다, 이것임.</p> <p>유엔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해야 될 때는 하는 것이고, 안할 때는 안 하는 것이다—그런 측면에서 이 6조 같은 것이 그냥 이런 상태로 들어가면 이거는 의미가 없음.</p> <p>(군사분과위 위원장 접촉)</p>	<p>라를 침략한다, 북을 침략한다— 그때 남측이 그 나라의 무력행사가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제하는 것임.</p> <p>그리고 “자기 땅·바다·하늘을 그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남을 침략하는 자들한테 자기 땅·바다·하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임.</p> <p>무턱대고 자기 땅·바다·하늘을 제공한다는 이걸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측에 대한 침략행위에 동원되는 그 나라의 상대측을 반대하는 침략에...말하자면 참여하는 그 군대에 자기 땅, 자기 하늘, 자기 바다를 제공하지 않는다—이것임.</p> <p>(군사분과위 위원장 접촉)</p>
<p>우리가 지금 한미간에 아주 공고한 군사동맹관계를 가지고 있음. 주한미군도 주둔하고 있음.</p> <p>이거는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결정하고, 미국도 그 방향을 결정하고, 양국이 동의를 하고...확고히 유지함.</p> <p>지금 귀측에서는 미국이 한반도 남쪽을 강점했다, 무슨 뭐 침략자다...아직도 그걸 침략으로 보는거요?</p>	<p>6조, 이 문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현재 주둔하고 있는 남조선주둔 미군을 염두에 둔 것만은 아님, 이게.</p> <p>다시, 다시금 내가 명백히 이야기 할건 우리가 다른 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침</p>

우 리 측	북 측
<p>강점으로 보는거요? 안보동반자, 협력인데...그런 사고(思考)를 가지고 이 문제를 넣는다면 더더구나 이런 문제는, 이거는 도대체 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임.</p> <p>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양국간에 합법적으로 전부 다 하고 있는 이것을 불법적으로 생각할거나, 합법적으로 생각할거나...</p> <p>그러면 이 귀측의 조항은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나온 조항이고, 이 조항은 남북이 다 국제적으로 동시에 가입하고 동시에 약속한 조항을 바탕으로 한 조항이고, 이거는 귀측이 일방적으로 지금 할 수도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았던 것임.</p> <p>(제8차 군사분과위 위원접촉)</p>	<p>략행위에 북과 남이 가담하지 말자, 이것임.</p> <p>(제8차 군사분과위 위원접촉)</p>
<p>자주의 원칙은 궁극적으로 통일문제를 포함하여 남북간에 존재하는 민족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민족자결정신과 당사자 해결원칙에 의거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함.</p> <p>이같은 민족자결정신과 당사자 해결원칙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중요</p>	<p>7·4공동성명에는 「통일은 외세를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해결」한다고 명백히 지적되어 있음.</p> <p>이것은 북과 남이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조국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을 확약한 합의사항임.</p>

우 리 측	북 측
<p>한 문제는 대표성의 문제임.</p> <p>귀측이 자주의 원칙에 충실하려 한다면 대화 상대방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표성과 함께 그러한 대표성의 토대가 되는 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것임.</p> <p>귀측은 자주의 원칙을 빙자하여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주한미군문제는 자주의 원칙의 본질문제가 아님.</p> <p>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억제하는 억지력의 일부임.</p> <p>따라서 주한미군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모든 조항들이 성실히 이행 준수되는 과정에서 남북간에 전쟁재발의 위험이 소멸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지 단순히 기본합의서만 발효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이행도 되기 전에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임.</p> <p>(제2차 정치분과위 회의)</p>	<p>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를 방해하는 주되는 외세는 도대체 누구인가.</p> <p>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남조선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임.</p> <p>미군은 우리나라를 분열시킨 장본인이며 분열후 근 반세기동안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주되는 외세임.</p> <p>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미군문제가 자주원칙의 본질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자주정신을 떠난 외세의존적인 사고방식의 구체적 표현이며 7·4공동성명을 공공연히 뒤집어 엮는 배신행위임.</p> <p>귀측은 자주의 원칙에 대하여 말하면서 「대표성」이니 「당사자원칙」이니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것은 자주의 원칙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도 없는 황당한 주장임.</p> <p>자주의 원칙은 통일문제해결에서 주체와 객체사이의 관계, 다시말하면 통일문제해결의 주체와 통일을 저해하는 외세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원칙임.</p> <p>그러므로 「대표성」이요, 「당사자</p>

우 리 측	북 측
	<p>원칙」이요 하면서 통일의 주체인 동족은 배제하고 응당 배격하여야 할 외세는 끌어 붙이려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천만부당한 것임.</p> <p>북남불가침을 확약하고 비핵화공동선언을 발표한 실정에 맞게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축을 하루빨리 실현하는 길로 나가야함.</p> <p>이제는 더는 나라안에 외국군대가 있을 명분이 없으며 외국의 군사기지도 있을 조건이 있음.</p> <p>(제3차 정치분과위 회의)</p>

나. 작전통제권 문제

우 리 측	북 측
<p>또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논하는 마당에서 한반도의 평화다, 이런 문제는 남북한이 해야지 남북한 외에 누가 주체로서 여기에 끼어 들어올 자리가 없음. 다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가지 전쟁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장치가 있음.</p> <p>이 장치는 주권을 가진 여러 당사자들간에 합의에 의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장치들이 있음. 이 장치는 한반도에만 있는게 아님. 구라파에도 있음, 구라파에 「나토」가 있단 말임. 옛날에 「바르샤바」조약이 있음.</p> <p>「나토」가 있고 「바르샤바」조약이 있는데 「나토」사령관이 미군장교임. 그렇다고 해서 구라파 여러 나라들이 주권이 없어졌는가? 그런게 아님. 그것은 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갖는 하나의 장치임.</p> <p>그런 것과 이것을 혼돈해 가지고 상대방인 대한민국의 이 문제에 대한 자격을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겨남.</p> <p>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런 시각에</p>	<p>조선반도의 평화문제는 물론 북남 사이에도 해결될 것이 있지만 우리와 미국사이에 풀 문제도 더 많음. 귀측도 사실상 있는 사실대로 생각하고 사고한다면 미국이 첫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임.</p> <p>또 미국이 정전협정에 직접 수표한 당사자라는 그 사실도 부인하지 못할 것임. 또 평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시에도 미국이 모든 군사통수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귀측에서도 부인하지 못할 것임.</p> <p>이런 의미에서는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문제는 얼핏 보기에는 남북 사이에 다루어야할 문제이지만 미국과 다루어야할 문제가 엄청나게 많음. 그렇기 때문에 「남북 사이의」 이 표현을 넣으면 실제적인, 존재하는 문제를 외면하는 것으로 됨. 이게 하나 있고요.</p> <p>또 이것이 대표접촉하는데 무슨 숨길게 있는가. 실사구시대로 다 얘기한다면 지금 형편에서 귀측도 북</p>

우 리 측	북 측
<p>서는 다뤄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p> <p>그런데 거기에서 당사자냐, 아니냐, 남측에 권한이 있느냐, 권능이 있느냐, 그런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영철선생 그런식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오늘 이것으로 마지막이면 좋겠음.</p> <p>무슨 『남이 권한과 자격도 못 가진 상대다』 어떻게 상대방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어째서 권한과 자격을 못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럼 뭐하러 우리하고 회담하자는 것인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이것은 신중히 얘기해야 됨.</p> <p>그 다음에 통수권과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에 주었다, 어디 통수권이 미국에 가 있는가? 그런 선전용어는 회담석상에서 쓰지 말자는 것임.</p> <p>전쟁시기에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16개의 유엔회원국과 대한민국의 군대, 통할해서 작전 지휘하기 위해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했던 적은 있습니다마는, 작전통제권예요, 통수권이 아님.</p> <p>지금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군사</p>	<p>남사이의 공고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자격을 다 가진 당사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형편임. 이것을 부인하시면 안됨.</p> <p>평화문제를 이행하고 그것을 담보하자고 하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평화를 유지하고 또 평화유지에 장애로 되는 이 군사적 문제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다 있어야 됨.</p> <p>그런데 지금 형편에서는 우리가 알기에는 아직도 이남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군사적 문제를 남측의 당국이 다다루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 다루지 못한다 이말임.</p> <p>예하면 항공모함이 한척이 들어온다. 전략 폭격기가 괌도에서 하나 떴다 온다. 전략정찰기가 하나 뜬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든 작전적인 움직임을 그렇게 좌지우지 할 수 없는 형편이 이남의 실태가 아님.</p> <p>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남과 북의 평화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할, 그 말씀을 해결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남북사이에 평화적 문제를 해결할 게 있음. 그리고 같은 민족, 같은 겨레</p>

우 리 측	북 측
<p>령부체제를 갖고 있지만서도 작전, 모든 지휘권, 통수권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임.</p> <p>그것을 곡해를 자꾸 하지 말자 이것임. 단,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 같으면 연합지휘체제에 의해서 작전 통제권이 행사될 수 있는 것임. 그것은 단일지휘체제하에서 작전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평시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임.</p> <p>아니, 북측이 현재 주장하는대로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됨. 그것은 과거의 논리였고, 이제 확실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북 두 주체가 합의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함.</p> <p>(제5차 남북고위급 준비 제3차 대표접촉)</p>	<p>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평화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는데는 동감임.</p> <p>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썼는가. 『조선반도의 평화 문제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노력』 그래서 우리 표현을 적당하게 쓴 것임. 사실상 우리 표현자체에 다른 의미가 있음. 남북 사이에 존재하는 현실 그 자체를 그대로 반영해서 『북과 남은 정전을 공고하나 평화로 이전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사실을 부인하시면 안됨.</p> <p>하여간에 남조선에서 유엔군이 조선반도에서 철수한 조건하에서는 우리 남쪽을 당사자로 인정해 줄 수 있어. 그거 명백히 하자요. 미군이 있는 조건하에서는 절대로 안돼. 남북만이 당사자가 될 수 없음.</p> <p>(제5차 남북고위급 준비 제3차 대표접촉)</p>
<p>심지어 귀측은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당사자 자격마저 시비하는 터무니없는 입장을 개선하고 있음.</p> <p>귀측은 한반도의 현 정전상태를 남북간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p>	<p>귀측이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들고나온 「남북당사자해결원칙」도 따져보면 외세의존적 입장에 그 바탕을 두고 있음.</p> <p>귀측은 미국이 우리와 평화협정을</p>

우 리 측	북 측
<p>키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부속합의서에 담는 문제에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임.</p> <p>귀측은 6·25전쟁을 귀측과 미국 간의 전쟁이라고 강변하고 있음.</p> <p>6·25전쟁은 귀측이 미국을 상대로 일으킨 전쟁이 아님.</p> <p>6·25전쟁은 분단된 남과 북의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일어난 전쟁임.</p> <p>따라서 이 전쟁은 남북간의 전쟁이고 그 당사자는 남북쌍방인 것임.</p> <p>그 당시 미군은 한반도에서 이미 철수하고 없었음.</p> <p>그러나 불의에 발생한 무력침략을 격퇴시키기 위해 미군은 다시 한반도로 돌아왔음.</p> <p>미군만 온 것이 아니라 유엔안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밖의 15개 유엔회원국도 한반도로 군대를 파견한 것임.</p> <p>이들은 대한민국이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무력침략을 격퇴하는 것을 도와주러 온 것이지 그들이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전쟁을 수행하</p>	<p>체결하면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데로부터 어떻게 하나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남북당사자해결원칙」이란 것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함.</p> <p>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와 미국사이에 해결할 문제로서 귀측은 여기에 끼여들 하등의 명분도 없음.</p> <p>우리가 북남합의서를 채택발효시켰다고 하여 평화협정 당사자가 미국으로부터 남조선으로 옮겨질 수 없는 것임.</p> <p>귀측은 우리와 정전협정을 체결한 계약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정전협정자체를 반대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함.</p> <p>조선정전협정 제61항에는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쌍방사령관들이 호상 합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음.</p> <p>귀측이 굳이 정전협정계약 당사자의 계승자로 될 의사가 있다면 조미사이의 합의에 따라 협정에 대한 필요한 수정이 가해져야 할 것임.</p> <p>정전협정의 계약당사자도 아니고 「유엔군」도 아니며 정전협정이 수</p>

우 리 측	북 측
<p>러 온 것이 아님.</p> <p>귀측은 유엔군 사령관이 미군 장성이었고 1953년의 휴전협정이 미군 장성에 의해 서명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음.</p> <p>그러나 유엔군 사령관이 미군 장성이라 할지라도 유엔군은 유엔군이 아닌 미군이 아님.</p> <p>미군 장성이 유엔군 사령관이 휴전협정에 서명한 것은 유엔군 사령관의 자격으로 한 것이지 미군 사령관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님.</p> <p>그렇기 때문에 휴전협정에는 한국군 뿐 아니라 그밖의 참전 15개국 군대중 다른 어느나라 군대도 별도로 서명하지 않았던 것임.</p> <p>더군다나 휴전협정은 현지 최고 야전지휘관간에 체결된 전지협정이 아닌 국가간에 체결된 협정이 아닌 것임.</p> <p>또한 귀측은 휴전이후에도 한미 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이 미군장성이 라는 사실을 트집잡아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문제의 당사자가 아니 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음.</p> <p>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p>	<p>정보충되지도 않았고 군사통수권을 틀어쥔 미군이 아직 남조선에 남아 있는 조건에서 귀측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킬 당사자라고 주장할 하등의 근거가 없는 것임.</p> <p>귀측은 그 부당성과 비법성이 입증된 「남북당사자해결원칙」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무조건 그것을 철회하여야 할 것임.</p> <p>그 다음에 귀측이 오늘 뒷맛이 없게, 6·25전쟁을 우리가 미국을 반대해서 일으켰다고 빙빙 돌아 말했는데, 무식함. 역사를 왜곡하는 것임. 「덜레스」, 「맥아더」, 「이승만」이 한테 가서 물어 보시라.</p> <p>(제7차 정치분과위 회의)</p>

우 리 측	북 측
<p>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요청에 따라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 남아 있음.</p> <p>한미양국이 연합사령부를 창설하여 사령관을 미군 장성으로 임명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온 집단안보 개념의 구현이지 우리의 주권문제와는 무관한 것임.</p> <p>이것은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대의 사령관이 소련군 장성이었다는 사실이나 나토사령관이 미군 장성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명백한 것임.</p> <p>이들 문제에 관한 귀측의 입장은 부속합의서를 이용하여 남북기본합의서를 변질시켜 보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해주고 있음.</p> <p>(제7차 정치분과위 회의)</p>	

V. 주한미군의 장래 및 전시작통권 환수관련 정책적 고려사항

1. 주한미군 문제

가. 고려되어야 할 주요사항

- 주한미군 감축관련 고려요소(오관치 외 2人, 『한·미 군사관계의 발전과 전망』)
 - ① 한국국민의 여론 추이
 - ② 대북한 단독 전쟁억제능력의 구비상태
 - ③ 군축이 한국내 사회안정에 미칠 영향
 - ④ 군축이 한국의 북방정책과 대북한정책의 입지에 미칠 영향
 - ⑤ 군축이 한국내 반미주의의 확산방지에 미칠 영향
 - ⑥ 군축이 미국내 반한감정의 확산방지에 미칠 영향
 - ⑦ 한·미 연합체제의 변화 및 용산기지 이전계획 등과 관련한 군축의 의미
- * 이에 앞서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대북억제력의 공백, 북한의 대남정치공세에 대한 입지강화 등 한국의 득실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주한미군의 장래 규모와 역할변화의 주체(한용섭 외, 『주한미군과 한·미 안보협력』)
 - 미국결정론
 - 주한미군은 미국이 한반도에 부여하는 국익에 따라 철수·주둔여부를 결정

- 한국결정론
 - 한국민과 한국정부의 소망에 따라 결정
 - 안보협회의의 공동성명 “한국민과 한국정부가 원하는 한 주 한미군 계속 주둔”
- 역사적 결정론
 - 한국전쟁에 미군참여 등 미군은 한국 현대사와 필연적 연관
 - 북한의 위협소멸 이후에도 계속 주둔할 것이라는 주장
- 시대배경과 한·미간의 국가능력과 목표의 차이, 한·미 동맹의 성격에 따라 각 주장의 설득력은 상대적 차이를 보여왔음.

○ 주한미군의 장래를 결정할 미래의 안보상황의 결정요인(김창수, 「주한미군 통일후에도 주둔」, 신동아 '96. 1 별책부록)

- 한국과 미국의 국익 및 국가안보 전략
- 북한위협의 소멸과 통일시기 및 양상
- 한국과 미국의 국내사정
- 남북한 통일을 전후한 국제안보상황 : 미중, 일중, 미일관계 및 주변국 반응
-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진전상황
- 군사기술의 발달 등을 지적하면서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가능성이 있음을 제시
- 무엇보다도 남북관계가 교류협력 본격화 단계에 진입하면 미군에 대한 북한의 적대감정이나 철군주장이 사라질 것이라고 희망적 전망

※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계량적 분석도 시도되고 있음.

○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지원·보호나 제국주의적 자기이익추구라는 양 극단적 시각이 아닌 한·미 양국의 합리적 공동행위의 결과로 파악(성채기, 「주한미군규모의 결정요인 분석 및 예측」, 『국방논집』12호(1990. 겨울)).

— 주한미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시계열 회귀분석 시도

- ① 미국의 부담능력 : 미국의 국방비
- ② 한국의 부담능력 : GNP, 국방비 규모
- ③ 한국에서의 미국의 국익 : 한국의 경제규모 등
- ④ 한국의 안보이익 : 남북한 군사력 균형 등

— 그 결과 주한미군의 규모는 미국의 실질 국방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고 평가

- 북한의 대남위협, 한국의 경제규모로 측정된 미국의 이해변화에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반응

○ 이러한 주한미군 규모결정 모델을 재구성하여 분석 시도
(김태현 외, 『주한미군과 한미 안보협력』)

— 주한미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요소와 분석결과

- ① 세계적 혹은 지역적(동아시아) 차원에서의 미·소간 힘의 균형 : 부(-)의 효과
- ② 남북한간 군사력의 균형 : 북한에 유리할수록 정(+)의 효과
- ③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의 수준
 - 한국이 미국에 대해 가지는 실질적(경제적) 가치의 함수 : 정(+)의 효과

-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상황의 함수와 기타 미국내부의 정치·경제적 변수 등
 - 주한미군의 장래규모는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
 - 탈냉전에 따른 미국의 군사비 축소
 - 한국의 고도성장과 북한의 상대적·절대적 쇠퇴
 -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철군문제는 미국의 일방적 결정이나 한·미 동맹국의 정치적 편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 아님.
 - 주한미군 주둔이 대북억제를 위한 조치의 성격이었던 만큼 그 철수도 북한의 남침의도를 바꾸고 궁극적으로 체제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함을 주장
- 이상의 여러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주한미군의 장래에 관한 정책결정에 있어 고려요소로 들 수 있는 것은
- 미국의 국익과 동북아 안보전략의 변화
 - 한반도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와 미국이 인지하는 가치
 -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
 - 북한의 군사위협 평가 및 주변각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
 - 미국내 정치·경제적 상황(국방예산 등)의 변화
 - 한국의 자주국방력과 안보정책의 변화
 - 한국민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변화
 - 한·미 관계 특히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 등이 될 수 있음.
- * 이상과 같은 고찰에서 보듯이 주한미군의 장래문제 논의에 있어 여러가지 고려요소를 상정할 수 있으나, 최종 결정권은 미국이 갖고 있으므로 미국측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리라는

견해가 다수임.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함.

나. 미국내 정치·경제적 변화요인

- 미국내 변화요인으로는 미국 지도층과 일반대중의 대한국 인식 등 정치·문화적 요소도 고려해야 하나, 경제적 측면 특히 국방예산 등을 주요변수로 볼 수 있음.
 - '90년대초 미국의 대외무역적자 및 적자예산의 감소를 주장하는 견해는 국방예산 감축요구로 나타났음.
 - 특히 미 공화당 주도의 안보정책 성향에 따른 「미국과의 계약」(Contract with America)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안보전략에 나타난 개입주의 축소 노력
 - 1989 「레빈 법안」, 「범퍼스 법안」, 「년-워너 수정안」 등이 이를 반영하고 있음.
 - 「Levin법안」: 5년간 단계적 철수후 1만명 잔류 제안
 - 「Bumpers 법안」: 1993년까지 1만명 일방적 감축 제안
 -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신고립주의적 입장에 있는 더그밴도(미 캐도재단 연구원)는 '96출판한 『Trip-Wire』(올가미;인계철선)이라는 책에서 “대통령의 한차례 임기정도의 짧은 기간내에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호방위조약도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
- * 이러한 주장들은 향후 미국내 정치·경제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

○ 미 국방예산의 추이와 전망

- 미 행정부는 '90년대 들어 재정적자 심화로 국방예산의 감축을 약속한 상태, 그러나 실제 삭감에는 지역주민의 반발, 미 공화당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음.
- 1996. 9. 23 미 클린턴은 '97년도 국방예산 2,566억달러(전년대비 3%증액)에 서명
- 미국 국방예산 추이

(단위 : 억달러)

연 도	1980	1985	1990	1993	1994	1995	1996	1997
예산액	1,340	2,527	2,936	2,674	2,490	2,522	2,489	(2,566)

* 자료 : 세계일보 '96. 9. 26, ()는 미 행정부측 안

- 1995. 6 미 국방부 연례보고서에 나타난 향후 국방예산 계획에는 1997년까지 병력수준이 감축 및 국방예산의 감축을 제시, 1997년이후 국방예산도 명목상 증가후 2000년대 실질적 증가 계획이었음.

(단위:억달러)

연 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국방예산	2,635	2,578	2,534	2,569	2,663	2,760	2,865
실질증가율	-1.9	-5.3	-4.1	-0.1	-0.2	+1.1	+1.2

* 자료 : 미 국방부 연례보고서, 1995. 6;한용섭 외, 앞의 책에서 재인용

- 1994년 의회에서 공화당 승리 이후 「국가안보재활법」(National Security Revitalization Act) 통과로 국방예산 증액 주장
 - 향후 6년간 1천 5백억 달러 증액 요구(클린턴 행정부는 7백억 달러 증액 제시)

- 이러한 미국내 정치·경제적 변화요인에 따라 동아시아 미군주둔 전략의 변화가 전개될 것임.
- 현재의 추세로 볼 때 동아시아 주둔미군 10만 미군의 유지가 전제된다면 주한미군의 현상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 주한미군 주둔전략의 변화

- (1)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이춘근 외, 『주한미군과 한·미 안보협력』)
-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 나아가 세계정책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함.
 -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는 중국·일본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었음.
- 미국의 대 한반도 국가이익의 본질
 - 한국은 독자적 이익이 존재하는 지역은 아니었으며 아시아의 3개지역 중 일본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곳임.
 - 한반도에 대한 안보상의 이익은 본질적으로 한반도를 통한 일본방어에 있었음.(Ralph N. Clough)
 - 냉전당시 일본은 미국주도의 자본주의 진영의 모델케이스였으며, 일본의 경제력은 미국의 사활적 경제이익이었음.
 -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가지는 이익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일차적 이익에 해당하지만 본질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파생적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음.

* 미 국방성의 태도도 “일본과 맺고 있는 양자관계보다 더 중요한 양자관계는 없다”고 하여 미·일 관계가 대아시아 안보정책의 관건(linchpin)이라고 언급함.

- 이같은 미국의 대한반도 국가이익의 성격 인식은 주한미군의 장래에 대한 미국결정론, 즉 주한미군은 미국 정책결정자의 선호에 따라 그 장래가 결정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음.

(2) 냉전시대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전략

- 냉전시대의 미국의 기본전략은 대소 봉쇄전략이었으며 주한미군은 이러한 봉쇄전략을 밑받침하는 군사적 억지전략의 차원에서 한반도에 주둔한 것임.
- 6·25전쟁이후 동서간 냉전격화로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소 봉쇄 정책 또는 지정학적 대결의 제1전선화
 - 한·미간 군사행동체제 성립으로 주한미군은 한국방위의 실질적 담당자로 부각
- 1969년 7월 「닉스독트린」 발표, 미국내 반전분위기 확산과 비개입·신고립주의 확대로 미국의 대외 안보공약의 축소, 아시아에서의 미국역할 축소는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연결되었음.
- 1973년 카터행정부는 주한미군 대폭 철수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미군부와 의회의 주한미군 철군계획에 대한 비판적 보고서 제출('78. 7. 9)로 철군계획은 중단된 바 있음.

- 1981년 레이건 정부는 아시아정책의 전략적 목표를 소련의 팽창주의 견제('83. 3. 23 SDI선언)와 미국의 지도력 부활로 설정함.
 - 미·소간 군비경쟁 재개,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테러발생(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등)으로 긴장 고조
 - '86~87년동안 미국은 한국의 민주화의 지원세력화, '88 서울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일부증원)

(3) 탈냉전시대 주한미군 주둔전략(EASI I, II)

- 소련의 붕괴로 미·소간 냉전체제가 와해됨으로써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새로운 전략적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 구상
 - 군사력의 균형유지가 불필요해짐으로 인해 군비축소 및 군비 통제 분위기 확산
-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의회의 동아시아 주둔 미군 감축 및 주둔국 역할 증대를 요구한 『년-위너 수정안』의 통과에 따라 아·태 지역의 안보문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

<EASI I 보고서>

- 1990. 4. 19 미국방부 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연안지역에 대한 전략구조 : 21세기를 향하여』(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 Looking Toward 21st Century)
 - 약칭 : 『동아시아 전략구상』(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 특히 경제적 이유로 미국은 태평양 세력으로서의 잔류 천명
- 현재 미국의 전방배치 방위전력 재평가 필요성 지적
 - 동아시아에서의 안보위협에 대한 인식변화로 러시아에 대한 미군의 전진배치는 타당성 상실
 - 아시아 변영국들의 미군 주둔 반대 등 국민감정 고양 지적
 - 변영하는 아시아의 동맹(일본·한국)은 자신들의 방위를 위해 더 큰 부담을 져야 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둔미군의 철수를 위한 3단계 철군계획 (앞에서 살펴본 주한미군 규모변천 중 「제5차 철군」 부분 참조)
-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 「주도적 역할에서 지원자적 역할로」
 - 정전위 수석대표 한국군 임명
 - 지상군 구성군사령관(GCC)에 한국군 대장임명
 - 평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

<EASI II 보고서>

○ 1992. 5 제출 (부제 : 「의회에 대한 1992년도 보고서」)

- 북한이 경제적 파탄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계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고 평가
- 미국은 북한이 행할 수 있는 내부적 폭발 및 붕괴, 최후수단으로서의 남침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 필요 지적
-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전략평가(핵문제 등)로 인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전략평가가 있을 때까지 제2단계 철군계획 보류결정을 공표

(4) 새로운 아·태지역 안보전략(EASR)

- 1995. 2. 27 미 국방부의 제3차 보고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의 안보전략』(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
cific Region)를 통해 아·태지역에 대한 새로운 안보전략을 발표함.
- 일명 『EASR』(East Asia Strategy Report), 또는 『Nye보고서』

<EASR 보고서>

-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경제적 이익은 점차 증가하나, 냉
전종식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전략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함.
 -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국의 개입은 당연한 것이고, 아시아 주
둔 미군 철수계획 중단(10만명 수준 유지), 지역국가들과 방위
책임 분담 강조
 - * 1993. 6 「신태평양공동체」(New Pacific Community) 건설구상에
서도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점증하는 사활적 국익보호를
위해 전진배치 지속과 군사적 우세 유지를 천명
-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익 관련 요소
 - 역내 불확실한 긴장 잔존 및 세계 최대의 군사력 집중
 - 미 군사력 감축시 혐의 공백 초래, 역내 불안정성 증대
 - 아·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세계 안보 및 미 경제 발전에 직결
 - 금세기 동안 2차대전, 한국전, 월남전에 미군 파병
 - '93년 미국의 대 아·태 교역량 3,740억불(전세계 교역량의
36%), 280만 직종과 관련

- 우방 및 동맹국과 미국이 공동 추구할 주요 안보목표
 - 탈냉전시대 새로운 동맹관계 재조명
 - 미·일, 한·미 쌍무동맹 관계 강화
 -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투명성 향상,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 유도
 - 북한 핵 합의사항 이행, 북한 불이행시 즉각 대응 등

- 미국의 국가별 전략 기조
 - 개입(Engagement) : 기존의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관계 강화
 - 일본 : 가장 중요(There is no more important)
 - 한국 : 완전한 동반관계(full partnership), 사활적 요소(Vital Component)
 - 호주, ASEAN, 뉴질랜드, 태평양 군도
 - 확대(Enlargement) : 과거 비우호적 및 적대국과의 관계개선 확대
 - 중국, 러시아, 베트남
 - 장기적 분쟁요소의 평화적 해결 모색
 - 북한, 캄보디아, 대만, 남지나해, 남사군도, 일본북방 4개 도서
 - 전진배치(Forward Presence), 쌍무동맹, 다자협력 등을 통해 구현

- 금세기 말까지 아시아 지역내 미전력 유지
 - 지속적 전진배치 필요성
 - 신속하고 신축적인 범세계적 위기 대응능력 보장 및 역내 패권국가 등장 저지
 - 역내 안보에 대한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미국 이익 대변, 역내 영향력 강화수단
 - 미국내 전력 유지보다 부대 유지비용 절감 효과

- 미전력 구조 유지 중점
 - 강력한 주일미군 유지로 역내 세력 균형의 중추 역할 담당
 - 주한미군 주둔으로 대북 전쟁억제력 확보
- 쌍무적 안보동맹 관계 유지의 핵심요소

※ 한국 관련사항

- 한국을 아시아의 호랑이들(Tigers) 중의 하나로 평가
 - 한국은 미국의 안보공약 체결 6개국중 하나 : 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태평양 군도
 - 한국을 아시아 경제성장의 성공 사례로 열거
 - 한국과 일본은 미 주둔군 방위비부담에 호의적으로 평가
 - 방위비분담은 한국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주한미군 철수 중단, 37,000명 유지, 1개 육군사단(사단사령부, 2개 여단, 지원부대), 17항공여단, 7공군, 1개 중여단 장비 사전배치, 7함대 및 해병 원정군 즉각 대비
 - 한반도에서의 지상군 주력은 한국군
 - 한국군의 역할은 점차 주도적 역할(leading role)로 변화
 - 한·미 연합방위 구조의 3대 지주 : 한·미 상호 방위조약, 한·미 연합군, 안보협력체제(SCM)
 - 한반도 유사시 미국 자동개입을 명백히 함으로써 북한 도발 억제
- 한반도 긴장은 남·북 직접대화(intra-Korean dialogue)를 통해 해결 기대
- 향후 북한 위협 감소후에도 긴밀한 한·미 안보관계 지속 희망

※ EASI와 「新 아·태 전략」 비교

구 분	EASI('90, '91, '92)	新 아·태 전략(1995)
시대적 배 경	냉전말기/탈 냉전	냉전 종식 이후
성 격	년-워너 법안('89. 7. 31)에 대 한 행정부의 대의회 보고서	행정부(對 의회)보고서
미행정부	부시(공화당)	클린턴(민주당)
미의회 분위기	점진적 감군론자 주류	「힘의 우위」, 보수적 외교안보정책
아·태지역 미군규모	단계별 미군 감축('90년 13.5만 명→'95말 10.2만명 계획) *북핵관련 II단계 감축 유보	현수준 미군 지속 주둔(아·태 지역 10만명 수준, 주한미군 37,000명 규 모 포함)
한반도 인 식	• 북한 핵문제 등장이전 • 대북 억제력 긴요	• 북핵관련 미·북 제네바 합의('94.10. 21) 긍정 평가 • 북한 재래식 위협 상존 • 대북 억제력 긴요 *북한위협 소멸 이후에도 한·미 안보관계 지속
주한미군 역 할	역할변경(주도적→지원적)	역할변경 지속
다자안보	개념적 언급	기존 쌍무 안보체계 주축하 아·태지 역 다자안보협력 적극 추진
한·미 연합사	북한위협소멸 이후 한·미 연합 사 해체가능성 시사	• 未 언급 • 한·미 연합군은 한·미 연합방위의 3대 지주의 하나로 평가
특 징	단계적 접근방식의 현실적 유 연성 강조	미국은 美세계전략(개입과 확대)하 아·태지역 전략 확고성 강조

라. 주변환경적 요소

○ 북한의 대남군사위협에 대한 평가

- '80년대 후반부터 경제난으로 양적 전력증강의 한계에 직면하여 재래식 전력증강은 둔화, 핵무기·장거리 미사일·화포 등 전략무기 개발·배치 등 자원절약형 전력증강에 주력
- 휴전선 일대 무력의 전진배치 지속 등 대남 군사위협은 계속되고 있음.

○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진전 전망

- 다자안보협의와 협력을 한반도 문제에 활용됨은 물론 통일후 동북아지역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됨.
- 미국의 주도적 역할 전망(「EASR」에서는 쌍무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 다자안보협력의 중요성 언급)
- 주한미군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협력할 수 있을 것임.

○ 주변각국(일, 중, 러)의 입장(구종서, 「주한미군과 동북아 평화」, 1996. 6. 13, 경희대 통일문제 학술토론회 등)

- 일본의 경우 주한미군에 대한 찬·반 양론
 - 정부·기업·군부·자민당 등 보수진영은 미군의 한국주둔 지지, 사회당·공화당·자민당 등 진보세력은 반대
 - 일본은 안보차원에서 한국안보의 중요성을 인식,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일본기지 사용도 허락, 결국 주한미군은 일본방위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성장에 전력할 여유제공

- 중국의 기본적 입장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안정유지 세력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
 - 특히 한반도에 평화체제 전환이 이루어지면 주한미군 주둔 명분이 약해진다고 판단,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임.
 - 그러나 일본의 군사대국화 제어기능의 측면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의 미국역할을 일부 인정하는 견해도 있음.
- 러시아는 주한미군이 러시아의 국가이익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보지 않음.
 - 과거 소련은 중국과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경쟁으로 인한 한반도 전쟁발발에 대한 개입의 부담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으며('96. 9. 10 조-러간 군사동맹조약 폐기)
 - 따라서 주한미군의 중·일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역지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마. 한국측 요소

- 주한미군의 장래역할 및 주둔규모에 관한 한국측 고려요소는 ▲ 북한의 대남위협이 지속에 대비한 국방력의 증가정도, ▲ 향후 한·미 안보동맹의 성격에 관한 정부의 입장, ▲ 일반국민들의 주한미군에 관한 인식의 변화 등이 주요요소로 고려될 수 있음.
- 한·미 안보동맹의 미래와 주한미군의 장래(서주석, 「21세기 한국의 국익과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조정방향」, 『국방논집』 제33호 (1996. 봄))

- 한·미동맹체제의 개편을 위한 고려사항
 - 한·미동맹 유지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유발이나 변화기회 무산 방지
 - 장차 통일과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전협조와 이해의 공유
 - 지역방위에 참여 일·중·러 등 역내국가들이 참여하는 공동방위 개념의 발전
 -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측 책임강화, 장기적으로 단독방위체제 지향

- 한·미 안보협력의 대안으로('93~'95간 한·미간 SCM에 의해 한국 KIDA와 미 RAND연구소 공동연구 결과)
 - ① 견고한 한반도 동맹(Robust Peninsula Alliance)
 - ② 증원위주 한반도 동맹(Reconfigured Peninsula Alliance)
 - ③ 지역 안보동맹(Regional Security Alliance)
 - ④ 정치적 동맹(Political Alliance)을 제시

- 좀더 장기적 관심을 반영하여 ① 한반도 방위동맹, ② 지역 안보동맹, ③ 제한적 동맹, ④ 비동맹으로 구분할 때
 - 북한의 대남위협이 지속될 단기적 안보상황에서는 현재와 같이 한반도 방위동맹이 불가피
 -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국제안보 역할의 확대에 따라 지역 안보동맹도 고려 가능
 - 최장기적으로 통일이후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 한국안보의 미군의존 체제로부터 탈피, 제한적 동맹관계로의 발전이 바람직하다고 제시
 - ①·②단계를 통해 한반도 안보협력 및 한·미 안보협력의 큰 틀을 설정함에 있어 주한미군의 추가감축 및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개정 문제가 제기될 것

-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시기는 2000년부터 약 15년간 3단계의 재편성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미군전투전력은 전원 철수하고 일부 정보부대, 연락단 등 극소수 필수 군사력만의 잔류를 제시
 - 1단계 : 주한미군 규모 1만 5천~2만명 수준(현재 수준의 절반정도)
 - 2단계 : 5천~1만명 수준
 - 3단계 : 미 지상군 완전철수, 1천명 내외 필수 군사력 잔류, 통일과정과 연계, 한·미상호방위조약 재검토

※ KIDA-LAND 공동연구에서는 남북한관계를 3단계(현상유지, 화해 및 통합, 통일이후 단계) 단계별 주한미군 감축·작통권 환수 등을 고려한 4가지 전환 경로 제시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대안 1	주한미군규모	35,000	25,000→30,000	15,000→20,000
	방위비 분담	분담을 증대	→	분담비용감소
대안 2	주한미군 규모	35,000	25,000→30,000	20,000→30,000
	방위비 분담	분담을 증대	책임분담 추가	비용감소, 책임분담
대안 3	주한미군 규모	35,000	15,000-20,000	10,000-20,000
	방위비 분담	분담을 증대	비용감소	비용감소, 책임분담
대안 4	주한미군 규모	35,000	15,000-20,000	1,000-10,000
	방위비 분담	분담을 증대	비용감소	전면폐지

- 주한미군의 주둔규모의 결정에는 남북간 군사력의 균형 및 향후 남북간 상호 군비축소 및 군축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구 분		한 국			북 한	
병 력		지상군	56만명	69만명 ¹⁾	92만명	105.5만명 ²⁾
		해 군	6.6만명		4.7만명	
		공 군	6.4만명		8.8만명	
지상군	부 대	군 단	11개		20개	
		사 단	50개 ³⁾		54개	
		여 단	21개		99개	
	장 비	전 차	2,050여 대		3,800여 대	
		장갑차	2,250여 대		2,800여 대	
		야 포	4,700여 문		11,000여 문	
해 군	수 상 전 투 함	180여 척		430여 척		
	지 원 함	50여 척		335척		
	잠 수 함	4척		35척 ⁴⁾		
공 군	전 술 기	530여 대		840여 대		
	지 원 기	160여 대		510여 대		
	헬 기	630여 대		290여 대		
예 비 전 력 (병 력)		308만여 명 ⁵⁾			660만여 명 ⁶⁾	

註:1)방위병 제도 폐지에 따른 방위병 현역화로 병력 3만 5천 증가, 해군에 해병병력 포함

2)지상군 해병병력 포함

3)해병사단 포함

4)북한 잠수함 35척 중 소형잠수함 9척 포함

5)한국 : 예비역/보충역

6)북한 : 교도대/노농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인민경비대

- 한국군의 국방력 정비(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7)
 - 미래전 양상의 변화 및 무기체제의 첨단화 추세,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필요성
 - 군의 전력구조를 병력위주에서 질위주의 자원절약 기술집약형으로 발전시키고, 군의 전략개념 구현을 위한 필수핵심전력 확보
 - 주한미군 역할변경과 남북한 군사관계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중점을 전환할 것
 - 군의 중·장기 국방발전의 기조로서 ①방위태세 자주화, ②국방인력 정예화, ③무기체제 과학화, ④운영체제 합리화, ⑤국방의 정보화를 제시하고 있음.

- 한국 국민들의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인식변화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음. (유재갑 외, 앞의 글)
 - 국내 반미감정 고조시기인 1988년 여론조사시 대학생의 67%, 고등학생의 86%가 주한미군의 한국안보에 긴요한 것으로 인식(이수영·이남영, 「한국대학생 및 고교생들의 민족의식과 안보의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2-2(1988))
 - 1995년의 여론조사에서는 주한미군 유지 53.5%, 일부철폐 31.4%, 전부철폐 14.8%였으며, 이 중 일부 또는 전부철폐 응답자 중 20대는 59.9%, 30대 57.4%였음. (조선일보·갤럽공동연구 「광복50주년 국민통일의식조사」, 조선일보 1995. 8.15)
 - 가장 최근의 조사에서 북한의 남침가능성에 대해 54.9%가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한미군 철폐시 72.3%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연합통신 1996. 6.22)

2. 작전통제권 문제

가. 미국측 입장

-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한 한·미연합방위체제는 필요하며, 한·미 양국의 국가지휘 군사통치 기구의 지시를 받는 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행사가 억제·방어에 유리하다는 입장임.
-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에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구체적 요인들을 강조
 - 전·평시의 전환은 거의 순간적으로 이루어짐. 따라서 전시와 평시를 구분, 작전통제권의 행사는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군사작전상으로는 문제임.
 - 미국측에서는 현 상태를 정전상태로 규정하고 있음.
 - 평시 작전통제권 이양에도 연합사령관에 위임된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으로 전·평시의 연계성을 보완하고 있는 점
 - 연합사령관이 정전업무 수행권한을 가지는 유엔사령관직을 겸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평시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미국측 의도에 따라 규제 가능
 - 전시 연합작전을 수행할 능력과 경험있는 한국장성이 아직 없다는 인식
-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군은 한국군 지휘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주요원인으로

- 미의회(특히 공화당)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움.
- 미군이외의 타국군 지원을 얻기 어려움.
- 언어소통의 문제 등을 들고 있음
- * 미국은 역사상 외국군대의 지휘하에 놓인 적이 없음. (2차대전 중 예외)

나. 한국측 입장

-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에 관한 국내 학자·군관계자들의 입장은 공통적으로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음.
 - 단,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여건 조성과 시기의 문제에 관한 입장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조기환수론
 - 과거와는 다른 한반도 안보상황의 전개로 당연히 한국측의 작전통제권 환수가 필요함.
 - 국방에서의 대미의존성 축소와 국민의 자주국방 의지제고 가능
 - 중장기 적정 국방비 획득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대북 정치·군사협상에서의 대등한 위치 확보 가능(평화체제 전환이 당사자 위치 확인)
 - 한국군 작전능력의 비약적 발전 가능, 통일에 대비한 한국군의 단독작전 통제연습 가능

- 작전통제권 환수는 주한미군 철수와 직접 관련이 없음.
 -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장기 전략적 이해에 따라 미군 주둔
- 국내정치적 반미·반미군 인식 완화 가능
- 한국군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완화로 무기구입시 구입선 다변화 가능

○ 조기환수 반대론

- 대북억제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이유
- 연합사의 작전통제권 소유로 인한 경제적 이득 증시
 - 미군측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 보완시 국방비 부담 증가
 - 약 250~1,500억 달러 소요('95년도 국내 GNP대비 3.2% (142억 달러)→ 3.5%이상으로 상향조정 불가피, 5~6년간 40억불 이상 투자 필요)
- 미국의 안보지원 의지 및 내용의 실질적 약화 초래
 - 유사시 미군 증원공약의 약화로 연합작전의 효율성 약화
 - 미국의 “권한없는 책임은 질 수 없다”는 한국안보에 대한 책임회피 가능성 증가
- 주한미군의 감군·철군 요구 확산
 - 연합사·유엔군사 등 해체논의 가속화
 - 작전통제권 환수는 주한미군 철수를 감수할 용의가 확립된 후 시행가능하다는 입장
- 미국의 선진 군사전략과 작전응용 관련 기술의 획득 지연
 - 미래전쟁양상인 장차전(정보전)에 대비 곤란
 - 「작전계획 5027」의 대폭 수정 불가피

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방안 및 고려사항

○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방안으로는 ①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이러한 조건이 성숙되는 시점을 기해 환수를 표명하는 방법(event-driven), ② 시한을 정해 놓고 그 시한을 목표로 실질적 준비를 진행하는 방법(time-driven)이 있을 수 있음.

- 시기를 정하여 환수하는 방안은 정치적 효과의 극대화와 사전 준비에 유리한 점이 있으나, 정해진 시기에 맞추려다 융통성을 상실하거나 주변정세의 악화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남북간 평화회담 개최나 평화체제 수립 등의 상황과 연계하여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방안(조건부 환수)이 고려될 수 있음.

○ 환수시기

- 가장 극단적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주한미군 없이도 대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출 때라고 볼 수 있음.
- 환수시기는 대체로 2000~2005년 중이 될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한국군의 장기적 역할·임무에 대한 비전제시로 자기에언효과 극대화 가능
 - 2002년 월드컵 개최시기 고려

○ 환수절차

- 한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또는 국방장관의 환수시기 발표로 실질논의를 시작하는 방법(정치적 효과 중시)도 있으나
- MCM준비회의 등 한·미간 안보협의기구를 활용, 장기간의 실질적 준비와 협의후 발표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임.

○ 궁극적으로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방법의 결정에는 ▲한국군 독자적 억지력 확보, ▲국방비 확보를 통한 대북 정보능력 확보, ▲북한의 위협 소멸,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 등 주변환경의 평가, ▲작통권 환수후 한·미간 지휘체계의 형태 결정, ▲보다 장기적인 한·미 안보협력의 형태와 역할 설정 등에 대한 사전적 고려가 필요할 것임.

-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의 변화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나, 우선적으로 한국측의 강력한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한·미간 협의를 거쳐 추진될 사안임.
- 특히 작전통제권 환수이후 새로운 한·미 연합지휘체계의 형태로서
 - 미·일관계식의 병렬식(수평적) 작전지휘체제로 편성
 - 통합작전사령부 또는 국방참모본부의 창설
 - 한·미연합군사기획단(CMPG)창설, 전시 또는 우발사태시 연합작전 본부로 확대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부 록

1. 북한측 주장 원문
2. 한·미 안보협력체제 관련자료
3. 참고 문헌·자료

〈 부 록 목 차 〉

1. 북한측 주장 원문

가. 주한미군 철수문제

- 소련정부와 미합중국정부에 보내는 조선최고인민회의 요청서
(1948. 9.10) 137
- 외무상 남일, 제네바회의 최종회의 연설(1954. 6.15) 140
- 외무상 허담,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회의에서 평화통일방안 8개항목
중 군축 관련 3개항 제의(1971. 4.12) 143
-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회의 기초발언, 군사력 대치상태 해소 5개항 제
의(1973. 3.15) 144
- 최고인민회의 명의의 미국 의회앞 편지, 대미 평화협정 체결 제의
(1974. 3.25) 147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63차회의, 허담 보고
(1974.11. 9) 150
- 김일성, 조선노동당 창건 30주년 기념대회 연설(1975.10. 9) 152
- 제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 유엔사 해체문제(1975.11.17) 154
○ 공산측 결의 3390 B호 (※우방측 결의 3390 A호)
-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성명(1977. 1.25) 157
-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명의 편지; 『3자회
담』 제의 대남편지(1984. 1.10) 15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다국적 군축협상』 제의
(1987. 7.23) 16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
원 연합회의에 관한 보도; 『포괄적 평화방안』 제의(1988.11. 7) ... 163
- 조선전쟁의 법적 종결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쟁
(1989) 169

□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정무원연합회의,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10개항 채택(1990. 5.31)	178
□ 로동신문 논설 ;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는 빠를수록 좋다』 (1990.10.21)	181
□ 조선반핵평화위 성명 ;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끌어내기가야 한다』 (1993. 1.30)	185
□ 외교부 대변인 담화(1995. 3.20)	187
□ 외교부 대변인, 미군의 남조선 강점 50주년 관련 담화 (1995. 9. 7)	188
□ 외교부 대변인, 미군의 남조선 강점 51주년 관련 담화 (1996. 9. 2)	190

나. 작전통제권 문제

□ 로동신문 ; 『미국이 한·미연합사령부를 조작한 것은 무력으로 남조선을 영구히 강점하려는 공공연한 침략책동이다』(1978.11. 9)	19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망록(1982. 9. 7)	196
□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 허담 보고(1984. 1.25)	197
□ 외교부 대변인 담화(1994. 9. 9)	201
□ 외교부 대변인 담화(1994.10.13)	202
□ 로동신문 논설 ; 『식민지주구의 자주타령』(1994.12. 4)	204
□ 평양방송 논평 ; 『군사통수권을 빼앗긴 주구』(1996. 7. 2).....	206

2. 한·미 안보협력체제 관련자료

□ 한·미 정부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이양 및 미국 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1948. 8. 9)	211
□ 대한민국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1948. 8.24)	214

□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주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1950. 1.26)	217
□ 대한민국정부 및 북미합중국정부간의 상호방위 원조협정 (1950. 1.26)	221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4호, 통합군사령부의 설치 권고 (1950. 7. 7)	224
□ 대한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일명 대전협정, 1950. 7.12)	226
□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공한(1950. 7.15)	228
□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10. 1)	229
□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의사록 (1954.11.17)	231
□ 국가재건최고회의-유엔사 공동성명(1961. 5.26)	233
□ 주월 한·미군사실무 약정서(1965. 9. 6)	235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일명 행정협정 : SOFA) 요약(1966. 7. 9)	241
□ 박정희-존슨 공동성명(1968. 4.17)	241
□ 한국군현대화 및 주한미군감축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공동성명서(1971. 2. 6)	245
□ 닉슨 독트린-“평화의 구축”-(1971. 2.25)	246
□ 제10차 SCM 공동성명(1977. 7.26)	250
□ 제11차 SCM 공동성명(1978. 7.27)	253
□ 한·미 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1978.10.17)	257
□ 주한미지상군 철수에 관한 보고 ; 미상원외교위원회에 제출된 동아시아 태평양문제 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서(1979. 6.22)	260
□ 주한미군철수에 관한 정보재평가의 영향에 대한 하원군사위원회 조사소위원회 보고서(1979. 9. 7)	267

<input type="checkbox"/> 제24차 SCM 공동성명(1992.10. 8)	271
<input type="checkbox"/> 제25차 SCM 공동성명(1993.11. 4)	275
<input type="checkbox"/> 제26차 SCM 공동성명(1994.10. 7)	278
<input type="checkbox"/> 국방부-한미연합사 공동발표문(1994.11.30)	282
<input type="checkbox"/> 한·미간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 개정 에 관한 교환각서(1994.11.30).....	283
<input type="checkbox"/>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방위전략」 요약(1995. 2)	284
<input type="checkbox"/> 국방부 보도자료, 『21세기의 새로운 동맹 : 한·미 안보협력의 미래』 (1995.12).....	288
3. 참고 문헌·자료	299

1. 북한측 주장 원문

가. 주한미군 철수문제

□ 소련정부와 미합중국정부에 보내는 조선최고인민회의 요청서

(1948. 9.10 조선중앙년감, 1950년판)

연합국의 무력에 의하여 근반세기에 걸친 일제식민지통치의 압박하에서 우리 조국이 해방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적 노예에서 해방된 우리 조선인민은 위대한 연합국들의 방조에서 우리의 민족독립을 신속히 복구하여 우리의 민주독립국가를 수립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조선인민의 세기적숙망과 기대는 지금까지도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조국의 땅에는 아직까지 소미양군대가 진주하여 있으며 또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국은 민족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가분적인 단일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8선을 경계로 하며 아직까지 우리의 국토는 두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여 있는 농업지대인 남조선과 소련군이 진주하여 있는 공업지대인 북조선은 인공적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남조선과 북조선에는 아주 상반되는 사회적 경제적조건과 정치적 질서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단일한 우리 조국이 이와 같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문화부흥에 막대한 지장을 주며 또 그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강토에 외국군대들이 앞으로 계속하여 남아있고 또 우리 조국의

강토가 앞으로 계속하여 두 부분으로 분할되어 있게 되는것은 우리 조선인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불행률 가져올 뿐만 아니라 거대한 정치적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측적친일분자, 각종의 정치적 모리간상배 등 기타 반동분자들은 협소한 이기주의적 탐욕적인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하면서 조국영토에 소미양국군이 진주하여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소미양국간에 적의를 선동하며 남북조선인민간의 적의의 충돌을 책동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극동에 조성되어 있는 현하의 정치적 정세를 침예화시키고 인민들의 안전과 전반적 평화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은 구태어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인민은 제2차 세계전쟁이 완료된 직후 몇달 동안 소미양국군대가 우리 조국의 지역에 진주하여 있게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에는 우리 조국 지역에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며 기타 일본의 무조건항복에 대한 조건들을 실천시킬 책임이 이 양국군대에 부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일본군대가 무장해제를 당하고 또 일본이 항복한 그때부터 벌써 3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우리 조국강토에 외국군대들이 금후 진주하여 있을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며 변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적 예속에서 해방된 첫날부터 우리 조선인민은 통일적 민주주의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왔습니다.

조선에 대한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실현이 파탄된 후 우리 조선인민의 거족적 투쟁의 기본구호는 우리 조국에서 외국군대가 전부 철거하고 우리 조선인민에게 외국의 간섭이 없이 자기 손으로 자기의 운명을 해결할 가능성을 달라는 요구이었습니다.

각각 상이한 정견을 가진 조선의 제정당과 사회단체들의 압도적 다수와 전 조선인민의 절대다수는 조선에서 외국군대가 전부 신속히 철거할 것과 조선을 독립국가로 통일시키는데 대한 적극적이고 결정적인 요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민주주의 독립국가로 신속히 통일시킬 목적으로 1948년 8월

에 남북조선을 통하여 선거자들의 자유의사표현에 의한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선거는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우리 조선인민의 백절 불굴의 기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는 북조선 선거유권자 총수의 99.97%와 남조선 선거유권자 총수의 77.5%가 즉 전조선 선거유권자 총수의 85.2%가 참가하였습니다.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조선 좌익 중간의 중요정당들의 대표자들과 전조선인민들의 각층 각계 대표자들이 피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조선인민은 전조선최고인민회의의 선거에 참가함으로써 1948년 5월 10일 남조선에서 소위 유엔 〈조선위원단〉의 감시하에서 진행된 비법적 단독선거를 부인하며 또 이 선거에 기초하여 남조선에 조직된 국회와 정부를 배격하며 총 쏘이코트 한다는 것을 또 한번 실질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최고인민회의의는 유일하고 진정하며 인민적이며 법적인 조선최고입법기관입니다. 그것은 이 최고인민회의가 조선인민의 자유의사 표현에 기초하여 창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최고인민회의의는 전조선인민의 요망과 견결한 의사를 대표하며 소미양국정부에 우리 조선에서 양국군대를 동시에 신속히 철거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조선에서 양국군대를 철거하는 것이 우리 조국을 통일시키며 그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부흥 번영시키며 평화에 호민주독립국가로 만드는 가장 절박한 조건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식민지적 예속하에서 해방된 후 3년이 지나는 동안에 조선에는 조선민주주의 독립국가의 자주적인 경제, 정치, 문화발전을 성공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자기민족의 자기민족의 정치, 문화, 간부, 기사, 기술간부들이 성장하였습니다.

조선에서 외국군대들을 동시에 철거하는 것은 조선에 사회적 무질서와 심지어 국내전쟁까지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온당치 않은 말이며 조선인민의 민족적 위신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조선최고인민회의의가 창설되고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상이한 정견을 가진 남북조선 대표자들로써 조선통일정부가 수립되고 좌익, 우익, 중간의 중요정당 및 사회단체들 간에 정치적 협력이 성립되고 절대다수의 남북조선인민의 정치적 통일이 달성된 이 모든 사실은 조선에서 외국 군대가 철거하는 때와 또 철

거한 후에라도 전조선에 원만한 질서와 사회적 안전이 정연하게 보장되리라는 것을 담보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요청서를 보내면서 조선최고인민회의는 이를 기하여 전조선인민의 명의로 위대한 소련정부에 그가 벌써 1947년 9월 26일에 조선에서 소미양군동시철폐에 대하여 제의하였고 또 그 후에 미국정부가 조선에서 자기군대를 동시에 철거한다면 소련정부는 자기군대를 즉시 철거할데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번 표명한데 대하여 충심의 감사를 드러마지 않는 바입니다. 조선최고인민회의는 미국정부도 조선인민의 민족적 이익을 존중히 여기며 제인민간 안전과 평화와 친선의 강화를 염원하여 조선인민의 이 요청에 순응하여 주며 소련군이 조선에서 철거함과 동시에 자기군대를 조선에서 철거할데 동의할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조선최고인민회의 1948년 9월 10일

□ 외무상 남일, 제네바회의 최종회의 연설

(1954. 6. 15)

〈전 략〉

우선 조선에 외국군대가 계속 주둔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긴장상태의 완화와 정전으로부터 공고한 평화에로의 이행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회의가 일정한 기한내에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분기별로 전 조선지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 것을 해당한 국가정부들에 권고할 것을 제의한다.

남북조선의 현존하는 조선군대를 최소한도로 축소시키는 것은 조선에서 정전으로부터 평화에로 이행함에 있어서 주요한 대책으로 될 것이다.

우리 의견에 의하여 만일 전쟁재발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금 남조선에 대량의 군대를 보존하여 둘 필요는 없다.

동원에서 해제된 조선군인들은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경제를 복구하는

평화적 노력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군대유지비의 축소는 인민경제의 복구와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지출을 증대할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외국군대의 철거와 남북조선의 군대를 축소함에 관한 재대책의 실천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위원회는 전쟁상태를 점차적으로 퇴치하며 남북조선의 군대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대한민국정부에 해당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것과 관련될 문제들을 취급할 수 있다.

본 회의는 조선에서의 평화의 공고화를 위한 대책들을 심의하면서 남조선정부와 미국정부간에 남조선에 미국의 무력을 무기한으로 주둔시키는 권리를 부여한 소위 〈호상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상술한 조약은 남조선지역에 대한 미군의 무기한 강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약은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타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군사적 모험을 타산하는 것이므로 조선에서의 평화강화의 과업과는 양립할 수 없다.

〈중략〉

조선에서의 평화의 공고화와 경제복구를 위한 과업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북조선에 대한 해안봉쇄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북조선인민은 미국측의 이와 같은 전횡을 용허할 수 없으며 우리 해안에 대한 비법적 봉쇄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조선에서의 평화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네바회의 참가국들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상술한 국가들이 조선에서 무장적 충돌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를 지며 조선의 민족적 통일에 대한 과업의 급속한 완수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본 심의의 심의를 위하여 제출한다.

방 안

— 조선에서 평화조건을 보장할데 대하여 —

제네바회의 참가국들은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주의 조선국가를 창건하는 기초위에서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조정할데 관한 합의를 달성할 목적으로 계속 노력할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조선에서 평화적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첫째, 비례적 원칙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한 짧은 기간내에 조선지역으로부터 모든 외국무력을 철거하기 위하여 대책을 취할 것을 해당국가 정부들에 권고할 것.

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철거할 기한은 제네바회의 참가국들간에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것.

둘째, 1년 기한내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에 군대수효를 축소시키되 각측 군대의 수효 10만명을 넘지 않게 할 것.

셋째, 전쟁상태를 점차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조건들을 조성하며 쌍방의 군대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를 심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해당하는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대표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

넷째, 남북조선을 물론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사이에 군사적 의무와 관련되어 있는 조약들이 존재하는 것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의 이익과 양립될 수 없음을 인정할 것.

다섯째, 남북조선을 접근시키기 위한 조건들을 조성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간의 경제 및 문화교류 즉 통상, 재정, 회계, 운수, 경제선관계, 주민의 통행 및 서신의 자유, 과학, 문화교류, 기타관계를 설정하며 그를 발전시킬데 대한 합의된 대책들을 강구 실시하기 위한 전 조선위원회를 구성할 것.

여섯째, 조선의 평화적 발전을 제네바회의 참가국들이 보장하며 그리함으로써 조선을 단일한 독립적 민주주의적 국가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과업을 급

속히 해결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을 조성할 필요성을 인정할 것.

우리는 우리의 방안에 예견된 대책들의 실시가 조선에서 정전으로부터 공고한 평화에로의 이행을 보장할 것이며 그리함으로써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 외무상 허담,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회의에서 평화통일방안 8개항목 중
군축 관련 3개항 제의

(1971. 4.12)

〈전 략〉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치하게 주장하고 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남북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평화통일방안은 다음과 같은 8개조항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는 것입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이며 우리민족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조선에서 긴장상태와 새 전쟁의 위협을 조성하는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를 풀고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며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됩니다.

원래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외국군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에는 어떠한 외국군대도 없습니다. 외국군대가 있는 조건에서는 참다운 평화를 바랄 수 없으며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으로 보아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미제침략군이 물러간 다음 남북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적 도발행동이 더는 감행되지 않도록 하며 남북이 다같이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공동으로 나서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민들의 군사부담을 덜어주고 남북조선사이의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유지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될 것입니다.

셋째, 〈한미호상방위조약〉과 〈한일조약〉을 비롯하여 남조선 괴뢰정권이 민족의 이익에 배치되게 외국과 체결한 모든 매국적이며 예속적인 조약들과 협정들을 폐기하며 무효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외국침략자들에게 식민지적 지배와 온갖 형태의 내정간섭을 허용하고 있으며 나라를 빗더미우에 올려놓고 민족자본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외국자본 침투의 길을 무제한 열어주고 있으며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군사적침략을 노리고 있는 이러한 조약과 협정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후 략〉

□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회의 기초발언, 군사력 대치상태 해소 5개항 제의

(1973. 3. 15)

〈전 략〉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은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부합됨은 물론 나라의 평화와 조국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염원과도 완전히 일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긴장상태의 완화에도 나가는 현시대의 추세에 부합되고 평화를 바라는 전세계인민들의 지향과도 전적으로 합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쌍방이 고위급회담을 실현함으로써 남북사이의 동결상태를 풀고 자

주적 평화통일의 실마리를 찾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적 대치상태를 해소함으로써 남북사이의 대결상태를 마수고 민족적 대단결을 위한 실제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하게 쌍방사이에 해결해야 할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인정합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다음과 같은 5개항목의 제안을 협의할 것을 본회의에 제기하는 바입니다.

첫째,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둘 것.

둘째,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이며 군비를 대폭 축소할 것.

셋째, 외국으로부터의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할 것.

넷째, 우리나라에서 미군을 포함한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킬 것.

다섯째,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북과 남사이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데 대하여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이와 함께 우리는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풀기 위하여 쌍방무력의 총참모장을 비롯한 군사인원들을 조절위원회에 망라시키든지 군사분과위원회를 만들든지 하여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집행대책을 협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우리의 이 제안은 우리나라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북과 남사이에 확고한 신임의 전제를 하루빨리 마련함으로써 합작과 단결을 도모하며 평화통일로의 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염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제안이 실현되면 남북사이의 긴장상태가 급속히 완화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서 새 국면이 열릴 것이며 우리나라에서의 평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수많은 청장년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인적, 물적자원을 민족경제의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돌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의심할 바 없이 북과 남의 온 겨레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

고 평화통일을 위한 그들의 노력을 더욱 고무할 것이며 우리인민은 물론 세계 인민들로부터도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진척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서 현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일보다 더 절실한 문제는 없으며 이 문제의 토의를 더이상 지연시킬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군비경쟁을 계속하고 오해와 불신을 조장시키는 것으로 되고 대결과 분열을 끝없이 지속시키는 것으로 될 것이며 결국은 평화통일을 하지 않자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것은 28년동안이나 민족분열의 쓰라린 고통을 겪어온 온 겨레의 절절한 염원을 거역하는 것이며 절박한 민족적 임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서로 싸우던 월남에서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이 철거하는데 정전협정을 체결한지 20년이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평화협정을 맺지못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자주적으로 통일할데 대하여 합의까지 한 조건에서 미군을 내보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는가, 안취하는가 하는 문제는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검증하는 시금석으로 됩니다. 사실에 있어서 이 문제의 해결여부는 쌍방의 입장과 태도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지 결코 그 어떤 시기나 단계가 문제로 될 수 없으며 그 무슨 조건이 장애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여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 선다고 하면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다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하면 조국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역사적 숙망을 하루 빨리 실현시키겠는가, 이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문제들이 무엇인가 하는 견지에 서서 통일을 촉진하는데 절실하고 긴급한 문제라면 그것이 어렵건 쉽건, 크건 작건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달라붙어 그 문제부터 협의하고 해결방도를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서 당면한 중심고리로 되는 남북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의 해결을 선행시켜 나가면

서 정치, 외교, 경제, 문화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기초하여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광범한 합작을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조절위원회 앞에 제기된 이러한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합의된 사항에 따라 조절위원회 안에 정치분과위원회, 군사분과위원회, 외교분과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문화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후략〉

□ 최고인민회의 명의로 미국 의회앞 편지, 대미 평화협정 체결 제의

(1974. 3.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는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미합중국 국회 상·하 양원에 이 편지를 보낸다.

1972년 7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 전체 조선인민과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조선에서의 평화유지와 통일문제 해결의 밝은 전망으로 큰 고무를 받았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거의 두해가 지난 오늘 조선에서 사태발전은 인민들이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로 되고 있다.

긴장상태는 일시 완화되는 것 같았으나 도로 격화되고 있으며 평화통일의 전망 대신에 군사적 대결과 전쟁위험만이 날로 커가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세계인민들의 응당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사태를 풀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긴장

상태를 가시며 평화통일을 촉진시키자면 무엇보다도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의연히 굳게 믿고 있다.

사실 지금과 같이 방대한 무력이 서로 대치하여 있는 조건에서는 조선의 평화통일과 관련된 크고 작은 어떤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정전이 이루어진 첫날부터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군비축소, 평화협정체결과 같은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안들을 거듭 제기하였다.

우리는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는 것을 가장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제기하였다.

만일 우리의 평화적 발기들이 어느 하나라도 실현되었더라면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는 보장되었을 것이며 오늘과 같이 긴장상태가 다시 격화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가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고 군대와 군비를 줄이고 외국군대를 내보내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여도 그에 응하지 않고 전쟁준비를 다그쳐왔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오직 미국을 등에 업고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며 남조선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소동을 끊임없이 벌려 놓으면서 미군의 장기주둔을 간청하며 고의적으로 남북관계를 긴장시켜왔다.

얼마전 남조선당국자들은 자기들의 이러한 행동을 가리우기 위하여 이른바 <불가침조약>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 군사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아니라 미군사령관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군사통수권을 갖지 못한 남조선당국자들이 남조선에 미국군대를 그냥 남겨둔채 <불가침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은 평화에 대한 아무런 담보도 할수 없는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우리의 자주적이며 평화애호적인 발기들을 덮어놓고 거부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모든 행동을 부추긴 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대화의 배경에 무력

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군사원조와 무력지원을 강화하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도전행위와 군사훈련, 고속도 고공정찰기에 의한 정탐행위를 빈번히 감행하며 끊임없이 긴장상태를 격화시켜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선이 통일되지 못하고 오늘과 같은 긴장된 정세와 전쟁위험에 직면하고 있는데 대한 주되는 책임이 미국 정부당국에 있다고 인정한다.

남조선에 미국군대가 남아있는 조건에서는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없으며 남조선당국자들은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더욱 더 명백해지고 있다.

현실은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장애로 되는 외부적 요인들을 제거하며 조선사람끼리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제를 마련하려면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모든 군사통수권을 틀어쥐고 있는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체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조선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은 이미 오래전에 철거하였으며 <UN군>측에서 남아있는 군대도 오직 미군뿐인 조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조선정전협정의 체약 쌍방으로서 실제적 당사자로 되고 있다.

오늘 정전협정은 그 자체가 이미 낡았으며 많은 면에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미합중국과의 사이에 체결될 평화협정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첫째, 쌍방은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직접적 무력 충돌의 모든 위험성을 제거할 것이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자들의 전쟁도발책동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쇼적 탄압행위를 사주하지 않고 비호하지 않으며 조선의 북과 남이 남북공동성명에 따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조선의 내정에 일체 간섭하지 않을데 대한 의무를 질 것이다.

둘째, 쌍방은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조선경외로부터의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할 것이다.

셋째, 남조선에 있는 외국군대는 <UN군>의 모자를 벗어야 하며 가장 빠른 기간내에 일체 무기를 가지고 모두 철거하도록 할 것이다.

넷째,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한 후 조선은 그 어떤 외국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이와 같은 조치들을 전제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할 것을 정식으로 제기한다.

회담은 지금 판문점에 있는 군사정전위원회보다 한급 높은 대표들로 구성하며 회담장소로서는 판문점 또는 제3국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가 성과적으로 해결될때에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관계에서도 개변이 일어날 것이며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발기는 미국인민의 이익과 세계평화의 이익에도 전적으로 맞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미합중국 국회와 미국 정부당국이 우리의 새로운 평화적 발기에 신중한 고려를 돌리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63차회의, 허담 보고

(1974. 11. 9)

<전 략>

오늘 남조선에 미제침략이 계속 머물러 있을 어떠한 이유와 구실도 없습니다.

요즘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를 어떻게 하나 모면해

보려고 남조선에 있는 미군이 이제는 〈유엔군〉이 아니라 이른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머물러 있다느니 조선정전협정이행과 관련한 그 어떤 담보조건없이 〈유엔군〉이 철거하면 조선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날 위협이 있다느니 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어리석은 기만술책입니다.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유엔군〉의 이름을 가지고서도 합법화할 수 없게 된 지금에 와서 미제와 남조선의 매국도당 사이에 꾸며진 그 무슨 〈조약〉이란 것을 가지고 합법화해 보려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협잡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담보〉 조건없이 〈유엔군〉이 남조선에서 나간다면 전쟁위험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는 미제의 논조는 더우거나 황당무계한 소리입니다.

조선에서의 정전 유지는 미국군대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된 평화우호적인 노력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들고나온 궤변은 결국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더이상 머물러 있을 구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정부는 조선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유지공고화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려는 진지한 입장에서부터 출발하여 지난 3월 미국군대가 남조선에 철거하는 조건에서 우리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중요한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이 평화적 발기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조선과 극동지역에서의 평화유지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평화협정을 맺을 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응당 대답을 하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도 현 남조선통치배들을 부추기고 뒷받침해 주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올해 유엔총회가 37개국 공동결의안대로 남조선에 있는 미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완전히 철거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함

으로써 조선인민이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신의 손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미 성숙될대로 성숙된 문제이며 이떠한 힘도 그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조치가 취해질 때 그것은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획기적 전환의 계기로 될 것입니다.

남조선에서 외국군대가 나간 다음 조선인민은 자신의 손으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화시키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후 략〉

□ 김일성, 조선노동당 창건 30주년 기념대회 연설

(1975. 10. 9)

〈전 략〉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통일의 기본 장애물인 외세의 간섭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주되는 외세는 미제국주의입니다. 미제는 무력으로 남조선을 강점하고 30년동안이나 우리의 부모형제처자들이 남북으로 갈라져 민족분열의 고통을 겪게 한 장본인이며 오늘 〈두개 조선〉 정책을 들고나와 우리나라의 영구분열을 꾀하고 있는 원흉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지난 기간 UN의 깃발을 들고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과 민족분열 책동, 온갖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침략군에게서 〈UN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모두 철거시키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려왔습니다. 우리의 이 정당한 투쟁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제 더는 UN의 깃발을 가지고 미군이 남조선강점을 정당화할 수 없게 되자 요즘 새로운 술책을 꾸미고 있습니다.

미제는 UN총회 제30차회의에 〈UN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의결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세상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국제여론을 속여 넘기고 실상은 〈UN군〉의 모자를 다른 모자로 바꾸어 쓰고 남조선강점을 계속하려는 서툰 연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조선에 있는 〈UN군〉이라는 것은 곧 미군이며 따라서 〈UN군사령부〉 해체 문제와 미군철거문제는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지 않고 〈UN군사령부〉만 해체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실제적으로 큰 의의가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리석은 기만술책을 걷어치워야 하며 〈UN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과 함께 남조선에 있는 미국군대를 모두 철거시켜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이 철거하는 조건에서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조선정전협정은 싸움을 정지할데 대한 협정이며 조선에서의 완전한 평화를 담보하는 협정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공고한 평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놓여있으며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 상시적으로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미제는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살상무기들과 군사장비들을 수없이 끌어들여 군사분계선 가까이에 배치하고 남조선호전분자들을 부추겨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책동을 매일같이 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제는 인도지나에서 참패를 당하고 쫓겨난 다음 남조선을 미국의 〈전선방위지역〉으로 선포하고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군이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군사행동을 하며 《핵무기의 사용도 서슴치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하면서도 도리어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군이 남조선에 와있는 것은 〈남침위

협)이 있기 때문에 미군을 철거할 수 없다고 떠벌이고 있습니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이 떠들어 대는 <남침위협>이란 있어본적이 없으며 지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번 천명하였습니다. 북과 남이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는 것은 북남공동성명에도 뚜렷이 밝혀져 있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먼저 건드리지 않는 한 절대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입니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에서 새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의 담보를 마련할 것을 주장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조선에서 미군대가 철거한 다음에는 북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북과 남의 군대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아래로 줄일 것을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이 군비경쟁과 무력증강을 중지하며 외국으로부터 무기와 군사장비를 들여오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평화유지를 공고히 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실제적 조건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후 략>

□ 제30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 유엔사 해체문제

(1975. 11. 17)

○ 공산측 결의 3390 B호

총회는,

한국이 남북으로 분단된지 30년이 경과하였고, 한국에 정전이 성립된지 2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일이 상급 이룩되지 못하였음을 주

목하고,

유엔헌장에 따라 각국은 민족평등 및 민족자결원칙을 존중하고 타국의 관할 사항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각국의 의무를 상기하며,

한민족이 자주, 평화통일 및 민족적 대단결의 3개원칙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의 자주, 평화통일을 이룩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현장의 제원칙에 부합한다고 간주하고,

1972. 7. 4. 자 공동성명의 정신과 이 공동성명을 환영한 1973. 11. 28자 제28차 총회 결정에 따라 남북한이 국가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그들의 대화를 증진시킬 것을 희망하며,

한국에서 현재의 정전상태가 그대로 지속하는 한 지속적인 평화는 기대될 수 없다고 간주하고,

한국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고 한국의 자주,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한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종식시키고 이 지역의 긴장을 제거하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결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면서

1.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기치 아래 남한에 주둔하는 모든 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2.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에게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및 유엔기치 아래 남한에 주둔하는 모든 외군의 철수와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서 한국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치하도록 촉구한다.
3. 남북한에 대하여 남북 공동성명의 제원칙을 준수할 것과 군비중장 중지, 쌍방 병력의 동일 수준으로의 대폭 감축, 군사충돌의 방지 및 타방에 대한 무력불사용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 이로서 국가의 자주,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한국에서의 군사적 대결을 배제하고 항구적 평화를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 우방측 결의 3390 A호

총회는,

1974. 12. 17자 총회 결의 3333호를 통하여 표명된 바 총회의 희망을 유념하고,

한국민의 자유로이 표명된 의사에 입각한 한국의 평화적 통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1972. 7. 4. 서울과 평양에서의 공동표명 발표와 상호 대화를 계속하고자 하는 남북간의 천명된 의사에 대한 총회의 만족을 상기하고,

또한 총회가 1953. 8. 28. 채택한 결의 711(VII)호에서 1953. 7. 27자 정전협정을 인정, 유의하였고, 1954. 12. 11자 결의 811(IX)호를 통하여 정전협정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간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절한 협정속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대체될 때까지는 계속 유효하다고 규정한 정전협정조문에 명시적으로 주목하였음을 상기하며,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의 긴장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으며, 1953년 7월 27일자 정전협정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유지에 계속 불가피함을 인식하며,

타방 직접 관계당사자들이 정전협정 유지를 위하여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대안에 동의한다면, 미국정부는 1976. 1. 1자로 유엔군 사령부를 종료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한 1975. 6. 27자 미국정부의 안보리의장앞 공한에 유의하고,

정전협정 유지방안을 시행할 대한민국 정부의 용의를 확인하는 1975. 6. 27자 대한민국 정부의 성명을 주목하고,

국제연합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헌장상의 제목적과 원칙에 따라 한반도에서 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보장할 계속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1. 총회에 의하여 1973. 11. 28자로 채택된 합의성명에 표현된 회원국의 여망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한이 그들의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
2. 모든 직접 관계당사자들이 정전협정을 대체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며,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새로운 약정을 위하여 교섭을 시행할 것을 희

망한다.

3. 정전협정의 지속적인 준수와 이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최대한 유지를 보장할 필요성을 감안하며, 정전협정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과 더불어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될 수 있도록 제1단계 조치로서 모든 직접 관계 당사자들이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성명

(1977. 1. 25)

〈전 략〉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크지 않은 땅위에 자금지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가진 방대한 무력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되어 있는 것은 그 자체가 긴장을 조성하고 불안을 가져오는 근원으로 되고 있다.

더욱이 나라안에 외국군대가 있고 원자핵무기까지 배치되어 있는 형편에서는 항시적인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한핏줄을 이은 조선의 수백만 청장년들이 서로 총을 겨누고 민족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까지 커다란 지장을 주면서 귀중한 민족의 힘과 재부를 헛되이 소모하는 불합리한 사태는 더는 참을 수 없다. 하물며 남조선 청장년들이 외래제국주의자들이 쥐어준 총을 메고 핵전쟁의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공산주의방과제〉가 되어야 하는 그 치욕을 어느 누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북과 남의 군사적 대치상태는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하며 긴장상태는 완화되어야 한다.

남조선에서 핵기지는 철폐되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살인무기들은 즉시 철수되어야 하며 미국군대는 무조건 철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축소하고 군사비를 삭감하여 인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데 돌려야 한다.

우리는 북과 남의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인민들이 쌍방 당국에 이상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동시에 미국군대가 철거하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고 군대와 군비를 축소하고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을 중지하기 위한 군비축소회담을 열도록 해당 군사당국에 요구할 것을 제의한다.

〈후략〉

□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명의 편지 ; 『3자회담』
제의 대남편지

(1984. 1. 10)

〈대남편지〉

우리는 1월 10일 현 정세와 관련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이 편지를 서울 당국에 보낸다.

조국이 분열된 때로부터 거의 40년이 되어가며 정전이 실현된 때로부터도 이미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한결같이 평화와 평화통일을 갈망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에는 온 민족의 염원과 배치되게 긴장상태가 어느 때보다도 격화되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가슴아프게도 민족내부의 불신과 반목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민족통일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지어 남쪽 땅은 핵전초기지로까지 전변되었다. 이제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지난날과 같은

보통전쟁이 아니라 핵전쟁으로 번져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이 명백하다.

우리 민족이 핵참화의 희생물이 되고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영영 잃어버리게 될 이 엄중한 사태발전을 누구도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민족 최대의 숙원인 나라의 평화통일을 우리 세대에 실현하여야 하며 이 숭고한 목적을 위하여 온 민족의 힘을 모아 난국타개의 길을 찾아야 한다. 현정세에서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북과 남사이의 참여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북과 남이 서로 대포를 걸어놓고 총칼을 맞대고 있는 조건에서는 도저히 대화와 평화통일의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미국과의 사이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것은 미국이 조선정전협정의 체약 일방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모든 군사통수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회담할 것을 새로이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우리와 미국사이의 이 회담에 우리나라에 조성된 긴장상태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다른 일방인 서울당국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우리는 3자회담을 진행하면 우리나라에서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문제가 모든 측면에서 충분히 담보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3자회담에서는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조선정전협정의 체약 쌍방인 우리와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과 미국사이의 평화협정에는 주로 미국과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장비들을 철수시키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조건에 관한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선언에는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행사를 하지 말며 군비를 축소할데 대한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3자회담에서는 그밖에 미국과 서울당국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토의될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긴장완화의 담보가 주어지고 조국통일의 전제가 마련된 다음,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열고 통일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서는 이미 쌍방이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하고 민족앞에 그 이행을 확약한 조국통일 3대원칙에 준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해결할데 대한 문제를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서는 북과 남의 당국을 포함하여 각당·각파·각계각층 인사들을 망라하는 전민족대회와 같은 정치협상회의가 소집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북과 남에 있는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지역의 각각 자치제를 실시하는 중립적인 연방국가를 창립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서울당국에 통일국가 창설과 관련한 다른 합리적인 안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 관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우리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긴장상태를 제거하고 평화를 확고히 담보하며 평화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획기적이고도 전환적인 발기로 된다. 3자회담은 판문점이나 그밖의 편리한 제3국에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긴장완화와 조국통일의 새로운 서장으로 될 3자회담이 하루빨리 소집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서울 당국이 우리의 제의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긍정적인 호응을 보일 것을 기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1984년 1월 10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 『다국적 군축협상』 제의

(1987. 7. 23)

〈전 략〉

조선반도에서의 침예한 군사적대치상태를 오직 완전한 군축을 실현함으로써만 해소될 수 있다.

남조선에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주정권이 선다고 하여도 지금처럼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유지하면 평화와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통일된 강토에서 영원히 전쟁과 불안을 모르고 평화롭게 살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열망에 맞게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 데서 결정적국면을 열어놓기 위하여 대규모적인 단계적 무력감축을 실현할데 대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조선에서 북과 남의 무력균형을 서로 무력을 증강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서로 무력을 축감하는 방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북과 남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무력을 축소하며 1992년부터 각각 10만이하의 병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북과 남의 병력이 먼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 따라 남조선주둔 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북과 남의 무력이 10만으로 축소되면 미국은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력을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철폐하여야 한다.

셋째, 조선의 북과 남은 각기 자기측의 무력축소정형을 상대측에 통고하고 세계에 공포하여야 하며 미국은 자기 군대의 철수정형을 우리측에 통지하고 세계에 공포하여야 한다.

현재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조선의 북과 남에서의 무력축소정형과 미군철수정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넷째, 북과 남의 병력이 축소되는 기간과 이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방지하며 계속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여기에 중립국감시군을 주둔시킨다.

다섯째, 조선반도에서의 무력축소와 철수 및 그에 대한 검증문제, 군사분계

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로의 전환,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확대와 중립국 감시군 조직 및 그 배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조선의 북과 남, 미국사이의 회담에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인 뿔스카, 체스꼬슬로벤스꼬, 스위스, 스웨리에 대표들이 방청으로 참가하는 다국적인 군축협상을 1988년 3월 제네바에서 진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실제적인 무력축소의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1987년말까지 조선인민군 10만명을 일방적으로 줄일 것이다.

조선반도에서 북과 남의 무력이 대폭 축소되고 외국군사기지가 철폐되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가 평화북도로 전환되면 조선은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 비핵평화지대, 완충지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군축제안이 실현되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기본요인이 영원히 제거되고 나라의 평화통일에 밝은 전망이 열려질 것이다.

또한 우리의 군축제안은 완화와 군축으로 나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것으로서 그의 실현은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정세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제안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성의있는 공동의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완화를 진정으로 이룩하려는 우리의 제안에 대하여 의심부터 앞세우지 말고 대세의 흐름에 맞게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조선에서의 정전을 공고한 평화어로 전환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도 우리의 평화적발기에 적극 호응해 나서리라고 기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전세계 평화애호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의 지지 성원밑에 조선반도에서 완전한 군축을 실현하여 영원한 평화가 깃들게 하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에 관한 보도 ; 『포괄적 평화방안』 제의

(1988. 11. 7)

〈전 략〉

연합회의는 이러한 입장에서부터 우선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공동의 기초로서 다음과 같은 평화보장 4원칙을 제기하였다.

첫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평화는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분열될 우리나라에서 평화를 결코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두개 조선〉으로 분열을 고정화하기 위한 〈평화〉로 되어서도 안된다.

우리 민족에게도 평화도 귀중하지만 통일은 보다 더 귀중하다. 이른바 〈평화 정착〉이라는 간판밑에 평화는 분열주의적인 〈두개 조선〉 조작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배격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통일을 위한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이며 따라서 평화는 반드시 통일지향적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

둘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외국무력의 철수에 의하여 담보되어야 한다.

외국무력의 존재는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고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요인이다.

우리 나라의 절반땅에 외국군대가 틀고 앉아 있는 한 평화는 실현될 수 없으며 외국무력을 그대로 두고 평화에 대하여 논한 것은 공담에 불과하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오직 외국무력의 철수에 의하여만 공고히 담보될 수 있다.

셋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북과 남의 군축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북과 남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무력은 쌍방에 다같이 무거운 부담으로 될 뿐 아니라 무력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된다.

경쟁적인 무력증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힘의 균형을 통해서서는 절대로 전쟁을 막을 수 없다.

북과 남사이의 무력충돌을 막자면 쌍방이 힘의 입장에 서서 군비경쟁을 하지 말아야 하며 무력을 최소한도로 줄이며 상대방에 대한 공격능력을 제거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남조선에서 외국무력을 철수시키는 것과 함께 북과 남 사이에 균형있는 군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항구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넷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긴장격화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긴장격화의 요인은 조선반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으며 그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남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과 조선의 북과 남이다.

조선반도안에 있는 전쟁의 화근을 외면하고 조선문제 토의에 이르지 못한 나라들을 끌어들여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는 평화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통일지향, 외군철수, 북남군축, 당사자협정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보장 4원칙을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원칙이며 평화문제를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게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공동의 이정표이다.

북과 남이 이 평화보장원칙을 함께 확인하고 그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평화는 가장 빠른 시일안에 가장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연합회의는 평화보장 4원칙에 기초하여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국군대와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북과 남의 무력을 단계적으로 대폭 줄여야 합니다.》

연합회의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존재가 가장 큰 장애로 되며 이 문제의 해결은 북남사이의 긴장완화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연합회의는 완화와 평화에로 나가는 현 추세는 남조선에서 미군무력의 철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성숙된 요구로 상정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현존무력의 단계적인 축감과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를 예견하는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제기하였다.

1.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 사이의 군축방안

1) 미군무력의 단계적 철수

- ①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가져올 핵무기들을 우선적으로 철수한다.

핵무기의 철수는 1990년말까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먼저 북위 35도 30분 이북지역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하며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그 이남지역의 핵무기를 철수한다.

- ② 미국은 남조선주둔 미군병력을 철수한다.

미군병력의 철수는 19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미군사령부와 함께 지상군을 북위 35도 30분 이남의 부산, 진해 계선으로 일단 철수하며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지상군의 전체를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하며 3단계(1991년말까지)에서는 해, 공군의 전체를 철수한다.

- ③ 미국은 미군무력을 철수하는 날부터 남조선에 새로 무력을 투입하거나 군사장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 ④ 미국은 남조선에게 철수하게 될 핵무기를 포함한 일체 무기와 전투기 술기재들을 남조선에 넘겨주지 않는다.

2) 북남무력의 단계적 축감

- ① 북과 남은 서로 병력을 축감하는 방법으로 무력균형을 유지한다. 병력의 축감은 군사분계선 전연지대에 배치된 병력과 특수부대, 육전대병

력부터 먼저하는 원칙에서 19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북과 남의 병력수는 각각 1989년말까지 40만명, 1990년말까지 25만명 수준으로 축감하여 1992년부터는 10만명 이하로 유지한다.

② 북과 남은 병력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를 단계별로 축감한다. 군사장비의 축감은 단계별 병력축감에 맞게 하되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비롯한 특수무기는 1단계에서 완전히 폐기한다. 무력의 축감이 시작되는 때로부터 외부로부터의 군사장비의 반입을 중지한다.

③ 북과 남은 무력축감이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안에 모든 민간군사조직을 해체한다.

3)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에 대한 통보와 검증

① 미군무력의 철수정형에 대하여 미국은 북측에 통지하고 북남무력의 축감정형에 대하여 북과 남은 상대측에 각각 통지하며 호상 통지한 내용을 공개한다.

②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을 확대하여 미군무력의 철수정형과 북남무력의 축감정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사업을 진행하게 한다.

4) 북과 미국, 남조선 사이의 3자회담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회담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회담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진행한다.

② 3자회담에서는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에 대한 검증문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확대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인 뿔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스위스, 스웨리에 대표들을 방청으로 참가시킨다.

③ 3자회담에서는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문제를 합의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조미사이의 평화협정과 북남사이의 불가침선언으로 확인하고 고착시킨다.

2. 북과 남사이에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1) 정치적 대결상태의 완화

① 북과 남은 호상 비방중상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상대측 지역에 대한 삐라살포와 군사분계선일대의 전연방송을 중지한다.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는 법규들을 철폐한다.

② 북과 남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정치행사를 중지한다.

③ 북과 남은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정당, 단체의 개별인사들의 쌍무적, 다무적 접촉과 자유로운 인사내왕을 실현한다.

북과 남은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이용하며 상품교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교육과 과학기술, 문화예술, 보건,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대결하거나 경쟁하지 않으며 공동협력을 실현한다.

2) 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

① 북과 남은 쌍방 무력의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분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 군사인원들로 조직된 중립국 감시군을 배치한다.

② 북과 남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군사연습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전후방에서 연합부대이상의 군사훈련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규모여하를 막론하고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을 일체 중지한다.

③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일대의 지상과 해상 및 공중에서 무력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일체 군사행동을 중지한다.

④ 북과 남은 우발적인 충돌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쌍방고위

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를 개설한다.

3) 북남사이의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북남사이의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에는 실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권을 가진 쌍방의 고위급 정치군사대표가 참가한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의 테두리안에서 고위급 정치회담과 군사회담을 따로 할 수 있다.

연합회의는 이상의 포괄적인 평화방안이 북남사이에 조성된 첨예한 대결과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가장 합리적인 평화강령이라고 일치하게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포괄적인 평화방안이 실현되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이 제거되고 핵전쟁의 위험도 사라지게 될 것이며 전쟁의 온상으로 간주되어온 조선반도는 안전한 비핵평화지대로 전환될 것이다. 수십년동안 지속된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 반목과 대결의 역사는 끝장나고 우리나라에는 화해와 신뢰와 단합의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 모든것이 온 민족에게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새희망을 안겨주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우리의 포괄적인 평화방안에는 완화와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의 추세와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민족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는 조선반도정세의 완화를 바란다고 하는 미국과 그리고 군축을 비롯한 군사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하는 남조선당국자의 의사가 충분히 고려되어 있다.

세상사람들은 우리의 포괄적인 평화방안에 대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태도에서 그들이 한 말의 진실성여부를 가려보게 될 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의 완화와 조미관계의 개선을 바란다면 문화분야의 부분적인 교류와 외교관접촉, 식료 및 의약품 판매 등 극히 제한된 문제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조선

문제 해결의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마땅히 우리 나라의 평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남조선당국도 유엔무대에 가서 군축을 하고 불가침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한 말이 진실이라면 구태의연하게 미국에 〈안보협력〉을 요청하거나 그 무슨 〈국제적 환경조성〉에 낚을 돌릴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 나라 땅에서 전쟁의 화근을 제거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후 략〉

□ 조선전쟁의 법적 종결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쟁

(1989, 『현대국제법 연구』, 평양)

미제가 일으킨 조선전쟁이 정전협정의 체결로써 정지된 때로부터 35년이 지나갔다. 정전이 이룩되었어도 이 기간 조선반도에서는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 등으로 말미암아 긴장상태가 계속되었으며 전쟁재발의 위험성을 띤 위기일발의 정세가 한두번만 조성되지 않았다.

세계의 진보적 인류는 조선반도에서의 긴장상태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킬 것을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오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35권, 344페이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오늘 성숙된 문제이며 해결하여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기본방도이며 나아가서 극동과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는 중요담보이다.

1) 조선정전협정의 의의(생략)

2) 미제의 정전협정 위반채동과 평화협정체결의 필요성(생략)

3)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와 평화협정의 기본내용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담보인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 현실적이며 논리적이다.

조선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의 교전일방이며 남조선에서 모든 군사통수권을 틀어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미국 정부사이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협정을 맺어야 조선에서 새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우리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길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30권, 433페이지)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교전일방이며 평화협정체결의 실제적이며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미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외면하거나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침략군과 15개 추종국가 군대에게 〈유엔군〉의 철갑모를 씌우고 유엔깃발을 쥐여서 그들을 조선전선에 내몰았으나 이것은 철두철미 날조된 비법적인 유엔의 〈결정〉에 기초한 것이였다. 〈유엔군〉은 유엔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전적으로 미국방성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 미제의 침략군이였다.

그것은 우선 〈유엔군〉조직에 관한 유엔의 〈결정〉이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현장의 원칙들을 위반하고 날치기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미제는 면밀히 짜놓은 각본에 따라 조선전쟁을 도발하고는 유엔을 이용하여 제놈들의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며 조선전쟁을 〈국제화〉하는 길에 서슴없이 뛰어들었다.

미제는 조선전쟁을 도발하고는 1950년 6월 25일, 27일, 7월 7일 연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벌려놓고 거수기를 발동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침략자>라느니, 미군은 <경찰적 행동>을 하여야 한다느니, 미국이 통수권을 틀어 쥐는 <유엔군>을 조직하여야 한다느니 하는 <결정>을 꾸며내었다.

이것은 미제가 조선전쟁을 일으키기에 앞서 짜놓은 각본에 근거한 서툰 연극에 지나지 않았다. 이 <결정>들은 철두철미 비법적이다.

미제가 자기의 침략무력으로 조선 내정에 간섭한 것은 유엔의 <결정>이 채택되기 전부터이다. 그러므로 미제가 유엔의 <결정>에 근거하여 그 무슨 <경찰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또한 미제는 유엔<결정>을 조선대표의 참가없이 안보이사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유엔헌장 제32조에 의하면 안보이사회에서 심의되는 분쟁의 당사국은 그가 유엔성원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심의에 초청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의 참가를 거부하고 유엔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를 초청하지 못하게 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의 비법성은 유엔총회 제28차 회의 결의와 대비해보면 더욱 명백하다.

1973년 10월 1일 유엔총회 제28차 회의에서는 조선문제를 토의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를 무조건 초청할 것을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유엔 <결정>의 비법성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일치가결 원칙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들의 참가없이, 그들의 찬동이 없이 <결정>이 날치기로 <채택>되었다는데 있다.

당시 소련은 미제의 부당한 책동으로 말미암아 국제법의 원칙과 유엔헌장의 기본요구에 맞게 안전보장이사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의 사업전반을 반대하고 이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일본 다마가와 백과대사전(세계역사편)에서는 《유엔 안보이사회는 소련이 회의를 보이코트하여 결석하고 있는 때에 미국의 요청에 의하여 유엔군의 조선출병을

결의하였다》라고 썼다.

19세기 70년대 아일랜드 농민들이 악질지주들에 대한 집단적 반대배격운동을 벌였는데 그 첫 투쟁대상이 영국대위 보이코트였다. 이때부터 보이코트란 말은 <반대배격>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다.

미제가 유엔안보이사회에서 <조선문제>를 강압통과시킬 당시 상임이사국인 소련이 이 토의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기권이 아니라 반대 의사표시이다.

상임이사국인 중화인민공화국 대표가 참가하지 않은데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 역시 미제의 부당한 책동 때문이다.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중국을 대표하는 국가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뿐이다. 대만은 중국영토의 한 부분이다.

<두개의 중국>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있을 수도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전 중국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하는 당사자로서 유엔을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들에서 이전 중국 의석을 그대로 계승할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현대국제법에 의해 인정된 원칙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중국인민을 전혀 대표할 수 없는 장개석 도당을 유엔의 중국의석에 눌러 앉혀놓고 중화인민공화국 대표의 합법적 의석회복을 각방으로 집요하게 반대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의 부당성은 그들이 펴 늦게나마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국가로 인정한데서 여실히 증시되었다. 1978년 12월에 발표된 중-미 공동커뮤니케에서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것을 언명하고 대만은 중국의 한 부분이라고 인정하였다. 이것은 사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을 때 벌써 미국이 취했어야 할 입장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적 지위는 창건당시로부터 오늘까지 변함이 없는 조건에서 미제가 유엔안보이사회에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 의석회복문제를 반대한 것이 얼마나 부당하였는가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명백히 증명하

였다.

이와 같이 온갖 비법성에 기초하여 날조된 유엔 〈결정〉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유엔군〉은 실제적인 유엔군이 아니라 미제침략군과 미제의 총알받이인 추종국가 군대였다.

사실 조선전쟁에 기여든 〈유엔군〉에 대하여 유엔은 아무런 통제도 한 적이 없으며 또 통제할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유엔군〉사령관을 임명, 해임하는 것으로부터 〈유엔군〉의 작전, 지휘, 통솔 및 그에 대한 보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사적 통제와 지휘는 미제가 전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한때 〈유엔군〉사령관의 철갑모를 뒤집어쓰고 날치던 패전장군 맥아더는 1951년 미국 상원에서 증언하면서 《나와 유엔과의 관계는 전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요컨대 무슨 형식을 취하건 나는 유엔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고 실토했다. 그리고 유엔본부 대변인까지도 《남조선에 있는 미군 사령부를 〈유엔군사령부〉로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였다.

미국이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체결의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다만 미군과 미국의 15개 추종국가 군대에게 〈유엔군〉모자를 씌워놓았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전후의 사태는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의 책임을 더욱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전후 〈유엔군〉 산하에 있었다는 것은 미군뿐이고 다른 나라 군대는 한명도 없었다. 이것은 〈유엔군〉이자 곧 미군이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드러내놓았다. 이뿐 아니라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 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어 미제침략군이 쓰고 있는 〈유엔군〉이란 너울을 벗겨버림으로써 미국이 조선전쟁의 일방이라는 것은 논의할 여지없이 명백해졌다.

미제는 〈유엔군사령부〉해체문제가 일정에 올라 대세가 제놈들에게 불리하게 전변되게 되자 그 이전까지 남조선주둔 미군이 〈유엔군〉에 속한 듯이 떠들던 논조를 집어치우고 〈유엔군〉과 미군이 다르다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놈들은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어도 남조선주둔 미군은 그대로 있어야 한다고 떠벌였다.

이와 같이 미제는 자주시대의 흐름앞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허튼 소리를 쫓았다.

미국은 역사적 사실로 보나 논리적 견지에서 보나 조선전쟁의 일방이며 조선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이며 따라서 평화협정체결의 당사자이다. 미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평화협정체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결코 그것을 회피하여서는 안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1974년 3월에 평화협정체결과 관련한 편지를 미국국회에 보냈다. 편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의 쌍방회담에서 토의할 평화협정의 기본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미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펍 늦어서야 쌍방회담이 아니라 3자회담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의사를 표명하였다. 1976년 8월에 당시 미국무장관이 3자회담에 대해서 들고나왔다. 그후 1978년 3월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카터가 미국을 방문한 어느 한 나라의 국가수반과의 회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그리고 남조선 대표들사이의 접촉과 회담에 커다란 관심을 표시하였으며 1979년 7월에 남조선에 기여들어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우리와 미국 그리고 남조선 사이의 <고위당국자회의>를 소집할 것을 밝혔다. 1983년 9월에 미국은 제3국을 통하여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만날 용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 회담에 남조선도 동등하게 참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 대통령 레간자신도 1983년 11월에 남조선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3자회담에 미국이 기꺼이 참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측이 표명한 이와 같은 공식적 입장을 고려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그리고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의 개최문제를 신중히 토의하고 3자회담을 하루빨리 열데 대한 건설적인 제안을 주동적으로 제기하였다.

1984년 1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에서는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 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미국 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편지

에는 3자회담을 열고 조선전쟁의 종결을 법적으로 공식선포하며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정체결문제와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자는 제안이 담겨져 있다.

1984년 1월 하순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 회의에서는 <조선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할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3자회담 제안을 적극지지찬동하였다.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이 언제 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미국측의 성의와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평화협정은 조선전쟁의 법적 종결을 선포하게 되는 것만큼 지금까지의 강화조약의 규범이나 전례에 비추어보면 응당 손해배상문제, 전범자처단문제 등도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미제가 3년여의 조선전쟁에서 우리 인민에게 끼친 인적 및 물적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놈들은 한 평방키로메터에 평균 18개의 폭탄을 떨어뜨려 공화국북반부의 도시와 농촌을 잿더미로 만들었으며 무고한 평화적 주민들의 생명, 재산을 빼앗아갔다. 미제가 조선전쟁에서 감행한 야수적 만행은 히틀러도당의 만행보다 더 훨씬 악랄하고 잔혹하였다. 미제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된 세균무기를 사용하였으며 전쟁포로들을 세균무기의 실험대상으로 대량 학살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전쟁의 종결과 함께 계산되고 결산되는 것이 국제법상의 하나의 규범이고 관례였다. 조선인민은 미제를 상대로 전쟁배상청구권과 전범자처별권을 행사할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협정이 하루빨리 체결되어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가 마련되기를 갈망하는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염원을 고려하여, 그리고 조선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려는 진지한 염원으로부터 출발하여 평화협정에 포함시켜야 할 기본내용으로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공고히 보장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평화협정에서는 우선 조선전쟁의 법적 종결을 공식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나라와 미국사이의 관계에서 선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초미의 문제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와 미국사이에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음으로써 1950년대의 전쟁상태가 완전히 가셔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무력증강책동을 강화하며 남조선 괴뢰도당에 대한 군사(원조)를 늘여 조선전쟁을 또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본 화근의 하나이다. 이에 대하여 세계인민들은 우려하고 있으며 조선에서 평화가 위협당하고 있는 것을 원치않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상태는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커다란 장애로 된다. 조선에서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결하지 않음으로써 정세가 긴장되던 끝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미국인민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

다음으로 평화협정에는 남조선에서의 미군철거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은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기본장애이며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 격화의 근원이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을 강점함으로써 조선의 분열, 조선민족의 분단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또 이 분열과 분단의 비극이 지속되고 있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 등지를 틀고앉아 조선전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전후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초긴장상태를 여러번 조성하였으며 조선에다 전쟁의 검은 구름을 항시적으로 몰아오고 있다.

일제 패망후 40여년의 역사는 미국이 남조선에 등지를 틀고 있는 한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평화협정에서는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조선과 미국사이의 전쟁상태를 끝장내는 기본조건의 하나로서 반드시 남조선에서의 미군철거 문제를 규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평화협정에서는 또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조선경외로부터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거듭되는 군축제안과 긴장완화를 위한 대규모군사연습의 중지제안을 비롯한 일련의 건설적이며 합리적인 제안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조선괴뢰도당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정세가 긴장되게 되는 근본화근의 하나는 남조선에서 미제가 감행하는 군사연습과 〈원조〉의 미명밑에 신형무기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반입한데 있다.

그러므로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 목적을 가지는 평화협정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무력증강책동, 무기반입책동을 금지하는 문제를 규제하여야 한다.

조선에서 항구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에 대한 그 어떤 외국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며 조선반도에서 그 어떤 나라의 군사기지건설도 허용하지 않을데 대한 문제를 규제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게 제기된다.

외세는 조선의 분열을 가져왔다. 외세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자주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 교훈은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 수 없으며 평화의 공고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래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원칙은 현대국제법의 공인된 원칙의 하나인 것만큼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그러나 미제는 남조선피뢰도당과 각종 비법적인 〈조약〉을 체결하고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실제적 통수권을 틀어쥐고 있다. 이러한 간섭현장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결코 조선반도의 정세가 안정될 수 없다.

또한 남조선과 그 주변에 있는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도 조선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기본요소의 하나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신식민주의정책 실현에서 외국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에서 비행기, 대포, 함선 등이 공화국북반부를 겨냥하고 출동준비를 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에 대한 그 어떤 담보도 있을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기한 평화협정체결문제는 이와 같이 그 합리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다.

평화협정의 체결은 조선인민은 물론 미국인민의 이익에도 부합된다. 만일 미국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3자회담 제안과 평화협정 제안에 선의를 가

지고 긍정적으로 대한다면 체면을 손상시킴이 없이 조선문제에서 손을 뺄수 있게 될 것이다.

□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정무원연합회의,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 10개항 채택

(1990. 5. 31)

우리민족은 지난 40여년 동안 어느 한시도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느 한때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보지 못하였다.

오늘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대결과 분쟁이 가셔져도 조선반도에서 만든 긴장상태가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

북과 남의 우리민족은 귀중한 나라의 재부를 서로 대결에 소모하면서 너무도 오랜 세월 전시상태나 다름없는 불안한 정세속에서 살고 있다.

대결과 전쟁은 북에도 남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

북과 남은 날을 따라 가중되고 있는 대결과 전쟁위험을 더이상 방관시해서도 안되며 수십년 동안 민족이 머리우에 무겁게 드리워져있는 핵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위한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주저해서도 안될 것이다.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는 그 누가 선사하지 않으며 더우기 빈말로는 결코 이룩할 수 없다.

우리민족은 자신의 노력으로 나라의 평화를 쟁취하고 우리나라가 외세의 각축장으로, 참혹한 핵전쟁마당으로 되는 것을 피하여야 하며 세계가 어떤 동란을 겪는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어떻게 하나 온 겨레가 자주적인 통일조국에서 평화를 누리며 화목하게 살아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현 시점에서 우선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러한 불가침선언에서는 북과 남사이에 서로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공하지 않을테 대하여 확약하는 동시에 그를 위한 실질적인 담보를 예견하여야 할 것

이다.

불가침선언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는 북과 남의 대폭적인 군축을 실현하는 것이다.

군축을 하지 않고서는 북과 남사이에 신뢰를 도모할 수 없고 통일을 위한 대화도 성공시켜 나갈 수 없으며 협력과 교류도 실현할 수 없고 나라의 평화 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

북과 남은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낳고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대결과 군비경쟁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거래의 염원과 국제적추세에 맞게 대폭적인 단계적군축을 실현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련합회의는 이미 1988년 11월에 내놓은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현실적 조건에 맞게 더욱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군축방안을 천명한다.

〈북남신뢰조성〉

1. 북과 남은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제한한다.
 - ① 외국군대와외 모든 합동군사연습과 군사훈련을 금지한다.
 - ② 사단급이상 규모의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금지한다.
 - ③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일체 군사연습을 금지한다.
 - ④ 자기 령내에서 외국군대의 군사연습을 허용하지 않는다.
 - ⑤ 군사연습을 사전에 호상 통보한다.
2.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 ① 비무장지대안에 배치한 모든 군사인원들과 군사장비들을 철수한다.
 - ② 비무장지대안에 설치한 모든 군사시설물들을 해체한다.
 - ③ 비무장지대를 민간인들에게 개방하며 평화적 목적에 이용하도록 한다.
3. 북과 남은 우발적충돌과 그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
 - ① 쌍방 고위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 ②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상대측에 대한 일체 군사적도발행위를 금지한다.

〈북남무력축감〉

4. 북과 남은 무력을 단계적으로 축감한다.
 - ① 병력축감은 쌍방사이에 군축안이 합의된 때로부터 3~4년동안에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첫 단계에서는 쌍방이 각각 30만명선으로, 둘째 단계에서는 다시 각각 20만명선으로 축소하며, 세번째 단계가 끝날 때에는 쌍방이 각각 10만명 아래 수준에서 병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② 단계별 병력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들도 축소폐기한다.
 - ③ 정규무력축감의 첫 단계에서 모든 민간군사조직과 민간무력을 해체한다.
5. 북과 남은 군사장비의 질적개신을 중지한다.
 - ① 새로운 군사기술, 장비의 도입과 무장장비의 개발을 중지한다.
 - ②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군사기술과 무장장비를 반입하지 않는다.
6. 북과 남은 군축정형을 호상 통보하며 검증을 실시한다.
 - ① 무력축감정형을 호상 상대측에 통지한다.
 - ② 상대측 지역에 대한 호상 현지시찰을 통하여 군축합의 이행정형을 검증한다.

〈외국무력의 철수〉

7. 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든다.
 - ① 남조선에 배비된 모든 핵무기들을 즉시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② 핵무기를 생산, 구입하지 않는다.
 - ③ 핵무기를 적재한 외국 비행기, 함선의 조선경내에로의 출입과 통과를 금지한다.
8.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일체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① 남조선주둔 미군과 그 장비들이 북남무력축감에 상응하게 단계적으로 완전 철수되도록 한다.

- ② 미군철수에 상응하게 남조선에 설치된 미군사기지들도 단계적으로 철폐 되도록 한다.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 9. 북과 남은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 ①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안에 중립국감시군을 배치할 수 있다.
 - ② 군비통제와 북남사이에 있을 수 있는 군사상의 분쟁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쌍방 군총참모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10. 북과 남은 협상을 통하여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대폭적인 군축에 합의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완전하고도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켜야 한다.

미국은 조선반도평화보장의 주되는 당사자인 것만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조미회담이나 3자회담에 반드시 나와야 할 것이다.

□ 로동신문 논설 ;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는 빠를수록 좋다』

(1990. 10. 21)

오늘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것으로서 더는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는 빠르면 빠를수록 조선의 통일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는 빠를수록 좋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조선강점 미군의 철수가 빠를수록 조선의 평화통일이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며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을 낳는 항시적인 근원이다.

지금 미국은 남조선에서 물러갈 대신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을 피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남조선으로부터 침략무력을 끌어내갈 대신 무력증강을 다그치고 새로운 핵수단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들은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조치를 취할 대신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연습을 더욱 빈번히 벌여놓고 있으며 하늘과 땅, 바다에서 무장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조선의 분열을 고착시키기 위하여 미쳐날뛰고 있으며 북침전쟁 준비를 더욱 완성하고 있다. 이것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시종일관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인민에 대한 횡포한 도전이다.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미군이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한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빨리 끝장내는 것은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해결하는 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절박한 문제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끝장나게 되면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요인과 우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제거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선인민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1990년대에 기어이 성취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에 넘쳐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그것을 구현한 합리적인 연방국가창립방안이 마련되고 통일운동이 전민족적범위에서 양양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새롭게 천명된 조국통일 5개방침은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온 민족의 이익에 맞게 가장 빨리 이룩할 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주고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의 합리적인 제안들과 주동적인 조치들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

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입장과 진지한 노력의 표시로서 날이 갈수록 내외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

우리의 적극적인 평화통일노력에 남조선인민들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들은 반미자주, 통일구호를 전면에 제기하고 미군철폐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최근 남조선의 현대사회연구소가 각지 38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조선 강점 미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자의 80% 이상이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하면서 미군철폐를 주장하였다고 한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미군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주되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불행과 재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반미자주화의 기치밑에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군은 제집으로 돌아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국깃발을 불태우고 미군사기지와 침략기관들을 공격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높아가고 있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미투쟁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려는 굳센 의지의 발현이다.

미국이 남조선강점을 언제라도 지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다.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폐가 빠를수록 그것은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도 좋을 것이다.

남조선에 4만여명의 미군과 1,000여개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고 나아가서 아세아의 다른 나라들을 침략함으로써 세계 제패야망실현의 돌파구를 열어놓으려 하고 있다.

미제가 조선반도를 〈미국전략의 제1선〉으로 선포한 것이나 우리나라를 훨씬 벗어나는 사정거리를 가진 핵무기들을 남조선에 배치한 것 등은 그러한 기도의 발로이다. 이런 조건에서 만일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불길은 쉽사리 조선경외를 벗어나 넓은 지역으로 번져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조선의 평화는 물론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가 철수되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원지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조선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데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철수는 미국자체에도 좋을 것이다.

지금 미국은 심각한 재정, 경제 위기에 직면해있다. 미국은 해외군사기지를 유지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고 있으며 그로 하여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인민들은 세금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인민들은 조선에서 침략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자기의 자식들이 무모한 대포밥으로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미국신문 <워싱턴 타임스>는 《남조선에서의 반미감정의 원인은 미군강점에 있다.》고 썼으며 미국 사회계인사 <칼 로와>는 《많은 돈을 들여가며 남조선에 미군을 두어둘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최근 조미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왔던 미국의 여러 대표들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비법적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지어 미 국회위원들 속에서까지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정의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지체없이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조국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집회, 시위, 서명운동 등 각종 연대성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견결히 규탄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군축을 위한 로조일군들의 국제적 상봉」 모임에서는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지 46돌이 되는 1991년 9월 8일을 계기로 미군을 남조선으로부터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국제로조 서명운동을 전세계적 범위에서 벌려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유엔총회를 비롯한 국제회의들에서도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미군을 즉시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힘있게 울리고 있다.

미국은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아야 하며 분별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만약 미국이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빨리 철수시킬데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고 남조선에 대한 강점정책을 지속하려 한다면 안팎으로부터 더욱더 커다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조선반핵평화위 성명 ;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끌어내야 한다』

(1993. 1. 30.)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1월 26일 지난해 중단하였던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올해에 다시 실시한다는것을 공식발표하였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정세를 또다시 전쟁접경으로 끌어가려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범죄적인 핵전쟁연습책동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깊은 우려와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조선반핵평화위원회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책동을 우리 인민의 평화노력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온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로 인정하며 이를 준렬히 규탄한다.

남조선괴뢰들은 이번에 《팀 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대규모적인 핵전쟁연습을 강행하는것이 그 무슨 《핵사찰》 문제해결에 진전이 없기때문이라고 떠들어대고있는데 그것은 저들의 침략적인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려는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지금 우리 나라에서 《핵사찰》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지 못하고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35년전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기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에 반입된 1,000여개의 핵무기와 17년전부터 해마다 계속되는 대규모적인 핵전쟁연습으로 인하여 항시적으로 엄중한 핵위협을 받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화할것을 주장

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진지하고도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 왔다.

최근 연간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력사적인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발효되어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에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게 된것도 우리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전환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비핵화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합의서와 구체적인 핵사찰규정안까지 내놓고 어떻게 하나 합의를 보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애당초 바라지 않는 남조선괴뢰들은 핵사찰이 진행되면 남조선에 있는 1,000여개의 미국핵무기를 그대로 남겨둘수 없게 되고 나아가서 미군의 영구강점구실이 없게되며 저들이 오래전부터 극비밀리에 추진해온 핵무기개발책동의 진상이 드러날것이 두려워 핵통제공동위원회사업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하면서 비핵화공동선언의 리행을 악랄하게 방해해나섰다.

지어 남조선당국자들은 지난해 10월 있지도 않는 우리의 《핵의혹》 설을 퍼뜨리면서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할것이라고 선포함으로써 북남대화를 동결상태에 빠뜨리고 북남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의 리행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으며 내외여론의 한결같은 규탄에도 불구하고 그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끝끝내 강행하는 길로 나갔다.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그 성격과 내용, 규모에 있어서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극히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북침공격연습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조금이라도 바란다면 이 무모한 핵전쟁연습을 취소하지 못할 그 어떤 리유도 없으며 더우기 북남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리행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때에 와서 전쟁불장난으로 정세를 긴장시킬 필요는 더욱 없을것이다.

제반 사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바라지 않으며 오직 정세를 긴장시키고 북침을 위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핵전쟁연습소동으로 우리를 위협해보려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팀 스피리트》핵시험전쟁연습은 미국이나 남조선에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수 없다.

미국은 《랭전의 종식》과 《평화시대의 도래》를 말로만 외우지 말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동을 중지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당장 끌어내야 한다.

남조선괴뢰들은 외세와 결탁하여 동족을 해치려는 사대매국적이며 반민족적인 자세를 버려야 한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내외여론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끝 끝내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 93》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는다면 북남대화와 비핵화의 실현을 파탄시킨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 외교부 대변인 담화

(1995. 3. 20)

외신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군현대화계획에 따라 지난 두달동안에 이미 20대의 다목적 고속이동차량을 남조선에 반입하였고 앞으로 500대의 고속이동차량을 더 끌어들인다고 한다. 그리고 5월에는 150대의 《에이브람스》 탱크를, 하반기에는 24대의 《아파치》 공격용직승기를 남조선에 반입한다고 한다.

조미기본합의문이 본격적인 리행단계에 들어선 오늘에 와서 미국행정부가 새로운 《동아세아전략》이라는것을 발표하고 남조선강점 미군의 철수계획을 무효화한데 이어 그의 기동력과 타격력을 강화할것을 목적으로 한 현대적인 작전장비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매우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이러한 대대적인 무력증강책동은 조선반도를 비핵화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것을 공약한 조미기본합의문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다. 미국 측이 우리에게 납입할 경수로형 선택문제와 관련하여 부당한 주장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해서나 있지도 않는 남조선형경수로를 우리에게 내려먹여 보려는것도 바로 군사적 압력책동의 일환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조선정전협정의 준수에 대하여 입으로 곧잘 외우는 미국당국자들은 근 40년 전에 외부로부터 무기와 작전물자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조선정전협정 조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남조선에 핵무기와 신형군사장비들을 체계적으로 끌어 들여왔으며 오늘도 남조선에 대한 무력증강책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를뿐 아니라 조선정전협정 자체를 백지화한지 이미 오래다는것을 그들 스스로가 자인하는 것이다.

제반 사실은 미국행정부가 조선반도에서 의연히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 준비에 매달리고 있으며 그들이 새로 내놓았다는 《안보전략》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침략과 간섭 전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행정부는 긴장완화의 현 국제적 추세와 조미기본합의문 정신에 역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압력시도를 포기하고 남조선에서 무력증강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미국은 구태의연하게 《힘의정책》에 기대를 건다면 거기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한 책임이 저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외교부 대변인, 미군의 남조선 강점 50주년 관련 담화

(1995. 9.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은 올해 9월 8일이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50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7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함으로써 하나의 조선은 둘로 갈라지고 우리 인민은 분열의 고통과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

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 토의된 조선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원칙들과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 3390 B에 따라 오래 전에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철수시켰어야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남조선에서 군사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시키고 핵무기들과 신형군사장비들을 끌어들이면서 정세를 계속 긴장시켜왔다.

냉전이 종식되고 세계는 평화와 완화로 나가고 있으나 조·미 두 나라는 조·미 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지금까지도 정치군사적으로 대결관계에 있고 정세가 완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되는 원인은 다름아닌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틀고 앉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 50년동안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민족적 멸시와 모욕, 값비싼 희생을 강요하여 왔다.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바라는 것은 남조선에 있는 극소수 매국노들뿐이며 절대다수의 남조선 인민들은 미군이 하루빨리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남조선의 몇몇 사람이 애걸한다고 하여 자기의 군대를 계속 남겨두겠다고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현시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수>하는 것이며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조·미사이의 평화보장체계수립은 다만 정전체계를 평화보장체계로 전환시키는 문제이다.

우리와 남조선에서 군통수권을 쥐고 있는 미국사이에 평화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게 되면 조선반도 정세는 대폭 완화되게 될 것이며, 북남합의서의 이행도 추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동북아세아와 태평양지역의 정세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냉전의 유물을 청산하기 위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데 응해 나와야 할 것이다.

□ 외교부 대변인, 미군의 남조선 강점 51주년 관련 담화

(1996. 9.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때로부터 51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2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 담화”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때로부터 5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반세기가 넘는 미군의 남조선 강점은 우리 민족의 분열에 비극을 가져왔으며 냉전이 종식된 오늘까지도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통일 실현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전체 조선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미군의 남조선 강점이 아니었던들 우리 조국은 일찍이 50년대에 재난적인 3년간의 전쟁도 겪지 않았을 것이며 대결과 전쟁, 분열로 특징지어지고 있는 오늘의 조선반도 사태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조·미 사이의 지속적인 교전관계와 뿌리깊은 적대 관계로 하여 우리와 미국 사이에 좀처럼 신뢰 분위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에 대한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에 있다.

미군의 남조선 강점은 비단 우리 민족 하나에만 국한되고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동북아세아 지역에서 냉전의 후과가 의연히 가셔지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심히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도 다름아닌 미국의 군사적 존재와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남조선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강점이 더는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실상 미군이 이제와서 남조선에 더이상 남아있어야 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이미 북과 남 사이에는 1992년 2월에 불가침을 약속하는 합의서가 발표되었고 조·미 사이에는 1994년에 핵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경제관계를 정상화하며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데 대한 기본합의문이 채택되었다.

더욱이 냉전에 의한 동·서 구조가 해체되고 어제는 미국의 적이었던 나라들이 가까운 우방으로 동반자로 되어가고 있는 동북아세아에서의 정세발전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존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쥐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철거시킬 용단을 내릴 때가 되었으며 또 지금이야 말로 영예로운 철수를 위한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구태의연하게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 계속 눌러앉히고 좀처럼 철군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남조선 주둔군에 무기와 군사장비를 보다 현대화하고 미국·남조선, 미국·일본 사이의 군사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등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위협과 공갈, 압력의 도수를 한층 높이고 있으며 지역 나라들 사이의 대결과 군비경쟁을 고취해 나가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우리 인민과 아세아, 태평양지역 인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현시기 냉전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아있는 조선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도는 조선 전쟁의 결과 산생된 낡은 정전체계를 청산하고 그것을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를 시급히 수립하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현실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1994년 4월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건설적인 제안을 내놓은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조·미 사이의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대신하는 잠정협정을 체결하며 그것을 이행 감독하기 위한 군사공동기구를 내놓을 데 대한 보다 전개된 평화보장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의 이 제안은 미국이 당장 포괄적인 평화보장 체계 수립 문제를 토의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당면하여 쌍방이 용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돌발 사건과 무장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적 문제라도 먼저 토의하자라는 진지한 염원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윤각도 똑똑치 않고 언제 성사될지 알수도 없는 4자회담이라는 것을 들고나와 우리의 잠정협정 제안에 대치시키려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16일에 발표한 제주도 선언에서 4자 회담의 목적은 항구적인 평화협정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회담에서 주 의제는 미군 철거문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미국측이 이 회담에서 남조선 주둔 미군 철수 문제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잠정협정을 체결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반대할 목적에서 그러한 명목상의 제안을 내놓은 것인지 분명치 않다.

미국은 이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미국측이 4자회담에서 남조선 주둔 미군의 즉시적인 철수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없다면 그런 형식의 회담은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

우리는 여러모로 보아 현 단계에서 미국이 우리의 잠정협정 체결 제안에 응해 나오는 것이 미국의 이해 관계에도 부합된다고 간주한다.

우리는 미국측의 금후 태도를 지켜볼 것이다.

나. 작전통제권 문제

□ 로동신문 ; 『미국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조작한 것은 무력으로 남조선을 영구히 강점하려는 공공연한 침략책동이다』

(1978. 11. 9)

11월 7일 남조선에서는 미국방장관과 남조선 괴뢰도당의 참가밑에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조작하는 놀음이 벌어졌다.

미국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조작한 것은 무력으로 남조선을 영구히 강점하려는 공공연한 침략책동이다.

미국은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있는 저들의 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유엔의 결의가 채택되고 그의 이행을 요구하는 세계인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게 되자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을 모색하여 왔다.

미국이 남조선에 있는 저들의 군사기지들을 해체할 대신 오히려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같은 새로운 군사기구를 서둘러 만들어 낸 것은 바로 미군을 철거시키지 않고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를 계속하며 안팎으로 고립배격당하고 있는 남조선 괴뢰도당을 부추기고 두개 조선 조작을 힘으로 뒤받침하려는데 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조작은 또한 유사시 조선에 투입할 대규모의 미군전투부대들과 남조선괴뢰군의 군사작전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며 이른바 전방작전지휘를 완성하기 위한 새 전쟁준비책동의 한 고리이다.

남조선괴뢰도당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조작으로써 남조선을 미제의 영원한 식민지 군사기지로 내맡기며 그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대가로 장기집권야욕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이번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조작은 미 군사당국자들과 남조선괴뢰들이 조선에서 새 전쟁도발을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으며 조선에서 정세를

전쟁접경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한미연합군사령부 조작놀음은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하루빨리 철거시킬 것을 요구하는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에 대한 도전으로 조선과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유린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

지금 미군사당국자들은 한미연합군사령부를 내온 것이 그 무슨 조선의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라느니, 아세아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느니하고 떠들어대고 있다.

이것은 흑백을 뒤집어 놓은 침략자들의 논리이며 침략적 정책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들이 상투적으로 쓰고 있는 수법이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은 남조선에 있는 저들의 지상군을 지난해에 비하여 올해 상반기기간에만도 2,600명이나 더 늘이였으며 이번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조작에 앞서 남조선 주둔 미육군에 최신형땅크 엠-60에이-1 50대와 대전차차량과 전술지원차량 130대로 이루어진 땅크대대를 증설하였다.

미국은 또한 저들의 어느 해외기지에도 전개하지 않았던 토우미사일중대를 남조선에 배치하였다.

11월 8일에는 에프-4디팬텀전투기 대대를 남조선에 새로 끌어들였다.

미국은 유사시 조선전선에 출동시킬 기동타격부대까지 조직하였고 지금 그것을 전개하기 위한 특수훈련을 벌이고 있으며 조선전선에 긴급히 투입할 그 밖의 각 병종무력의 규모와 행동절차를 규정한 비상동원계획을 짜놓고 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철군에 따르는 보완조치라는 구실밑에 이미 수 많은 핵무기를 비롯한 살인무기들과 군사장비들을 남조선괴뢰들에게 넘겨주었으며 앞으로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 각종 전투비행기와 땅크, 위치탐지기 및 자주곡사포 등 더 많은 공격무기와 장비들을 넘겨주기로 하였다.

한편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조선인민공화국을 적으로 가상하고 실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적 군사연습을 연이어 감행하고 있다.

미국의 새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하나의 거대한 무기고로 아세아에서 위험한 전쟁발원지로 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정세는 더욱더 침체화되

고 있다.

모든 사실은 미국이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을 더욱 증강하고 있으며 조선에서의 평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전쟁을 추구하고 있으며 조선의 통일이 아니라 영구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뒤편침밀에 남조선 괴뢰도당은 괴뢰군 무력을 늘이고 남조선 괴뢰군과 무고한 인민들을 강제동원하여 전쟁연습에 내몰고 있으며 연일 안보를 위한 행사놀음을 벌이고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고 있다.

오늘 미국과 남조선 괴뢰도당이 벌이고 있는 무분별한 새 전쟁도발책동은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을 도발시킬 뿐 아니라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를 계속하며 나아가서 전조선을 침략하려는 망상을 버리고 유엔의 결의와 자신의 공약대로 남조선에서 모든 미국군대와 살인무기를 지체없이 끌어내야 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매국배족행위를 중지하고 전쟁과 분열정책을 평화와 통일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침략과 전쟁정책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그들은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더욱 강력한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도당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선과 아세아의 평화를 수호하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고자 할 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망록

(1982. 9. 7)

〈전 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전변시킨 미제국주의자들의 죄행과 남조선 정권의 식민지적 예속성과 침략도구로서의 정치를 까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지배체계 확립—

침략과 약탈, 지배와 예속은 제국주의 고유의 속성이며 생존방식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는 피비린내나는 침략과 약탈이 감행되고 식민지 예속화 정책이 강요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하고 있는 남조선의 경우도 결코 예외로 될 수 없다.

〈중 략〉

—정치적 지배—

독립국가라면 응당 자주권이 있어야 하며 대내외정책을 독자적으로 규제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의 이른바 정부에서는 자주권과 독자성이란 찾아볼 수 없다.

〈중 략〉

—군사통수권 장악—

군사적 통수권은 독립국가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어떠한 나라든지 독립국가라면 군대에 대한 통수권을 행사하기 마련이며 군대는 있어도 그에 대한 통수권이 없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벌써 독립국가가 아니다.

남조선에서 70여만의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은 철저히 미제침략자들의 수중에 있다.

미제는 각종 예속적인 조약들과 협정들을 통하여 남조선 괴뢰군에 대한 일체의 통수권을 틀어쥐고 있다.

〈후 략〉

□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3차회의, 허담 보고

(1984. 1. 25)

〈전 략〉

이번에 연합회의가 제기한 3자회담을 열데 대한 방안은 공화국정부의 바로 이와 같은 일관한 입장과 확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회의에서 정당하게 제기된 바와 같이 대화를 통하여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미사이의 회담에 남조선당국을 참가시켜 3자회담을 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조선의 평화를 보장하고 조선의 통일도상에 가로놓인 장애를 제거해야 할 회피할수 없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늘까지 근 40년동안이나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남조선과의 〈호상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은 그 무력을 제한없이 늘이고 기한없이 주둔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은 이른바 〈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남조선 〈국군〉의 통수권과 작전지휘권을 쥐고 있으며 남조선에 있는 모든 무력을 자기의 통제밑에 두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미군무력을 증강하는 것은 물론 핵무기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미국이고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대소규모의 모든 전쟁연습을 지휘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며 남조선〈국군〉에게 무장장비를 대주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군사적대결에로 부추기고 있는 것도 다름아닌 미국입니다. 조선반도정세가 항시적으로 긴장하고 오늘과 같이 사태가 전쟁접경에로까지 이르게 된 주되는 책임은 이처럼 남조선에서 모든 군사적실권을 쥐고 있는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이 조선정전협정의 체약당사자로 오늘도 판문점에서 우리와 마주 앉고 있는 것 자체가 미국에 이와 같은 회피할수 없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여 주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협을 막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문제, 미국의 내정간섭을 배제하는 근본문제부터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회담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에서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문제가 모든 측면에서 충분히 해결되자면 오늘의 긴장상태조성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다른 일방인 남조선당국도 회담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대아세아정책의 궤도를 따라 남조선을 그의 핵무기로 내맡기고 남조선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미국의 전쟁정책수행에 밀어넣고 있으며 외세를 등에 업고 남북대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의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철거할 뿐 아니라 남조선이 또한 미군을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말아야 하며 미국이 남조선당국을 군사적 대결에로 부추기지 않을 뿐 아니라 남조선당국이 또한 우리와의 대결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마땅히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저해를 주는 이러한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미국과 함께 3자회담에 나와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과 미국과의 회담에 남조선을 참가시키는 3자회담은 현 시점에서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회담방식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3자회담보다도 남북간 대화를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진실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조선에서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문제는 북과 남사이의 대화만으로써는 결코 풀수 없습니다. 남조선에서 군사통수권을 포함하여 모든 실권을 쥐고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인데 <국군>통수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 남조선당국자와만 마주앉아서 어떻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논의할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 일부 여론에 의하면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회담에 미국이외의 다른 나라들도 참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어느 나라도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 내정에 직접 간섭하면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전쟁위험을 조성하고 있는 나라는 없으며 미국과 같이 아

직도 조선땅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은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첨예한 긴장상태와 전쟁의 위협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유일한 외부세력입니다. 이와 같은 형편에서 과연 어느 나라가 조선문제해결을 위한 회담마당에 나와 미국과 자리를 같이하려 하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십년동안 지속되고 있는 첨예한 긴장상태와 전쟁의 화근을 뿌리뽑고 조선의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려는 염원에서 출발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3자 회담제안이 미국이나 남조선당국에 접수되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3자회담제안에 오래전부터의 미국의 요구가 충분히 고려되어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3자회담은 우리가 조미회담을 제기한 후인 1976년 8월에 당시의 미국무장관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였습니다. 그후 1978년 3월에 미국대통령이었던 카터는 미국을 방문한 어느 한 나라 국가수반과의 회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그리고 남조선대표들 사이의 접촉과 회담에 커다란 관심을 표시하였으며 1979년 7월 남조선을 방문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우리와 미국 그리고 남조선사이의 〈고위당국자회의〉를 소집할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최근에도 미국당국자들은 거듭 3자회담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제3국을 통하여 미국이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만날 용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 회담에는 반드시 남조선을 참가시켜야 한다는 것을 내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미국대통령 레간자신도 그후 11월에 남조선〈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남조선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우리와의 회담에 미국이 기꺼이 참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에 비추어 보아 미국의 3자회담제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합니다.

3자회담이 실현되면 우리와 마주앉는 미국으로서도 거부할 것이 없을 것이며, 남조선당국도 거부할 것이 없을 것이며 남조선당국도 신경을 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대의원동지들!

이번 연합회의가 3자회담에서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한데 대한 제안을 내놓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자주적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수 있게 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연합회의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조선정전협정의 체결쌍방인 우리와 미국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과 함께 핵무기를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는것은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에서 나서는 기본문제입니다. 조선정전협정은 어디까지나 전쟁을 정지한데 대한 협정이지만 공고한 평화를 담보하는 협정은 아닙니다. 평화도 전쟁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30년이상 지속되어오는 가운데 지난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한 때도 긴장상태가 가셔진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어떤 때에는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날 우리 공화국정부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여러번 제기한 것은 조선에서 전쟁상태의 종결을 법적으로 선포하고 불안정한 정전상태에 끝장을 내기 위한 것이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킬데 대한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의를 왜 것처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이 더욱 짙어가고 있는 오늘이야말로 조선의 공고한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수만리 떨어진 미국이 조선땅에서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태의 종식과 조·미관계의 새 출발을 위하여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이에 응해나서야 할 때이라고 인정합니다.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거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근원이 없어질 것이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담보가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과 함께 북과 남사이에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군대와 군비를 대폭 축소할데 대한 불가침선언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가침선언이 채택되면 우리 나라의 평화는 공고한 것으로 되고 이

른바 <미군철수후 문제>는 믿음직하게 담보되게 될 것입니다.

<후 략>

□ 외교부 대변인 담화

(1994. 9. 9)

조미회담에서 평화협정체결문제를 토의하고 합의보는 것은 현시기 당면하고 절박한 문제의 하나이다.

이것은 얼마전에 우리 나라와 미국사이에 발표된 합의성명을 이행하여 조미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고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해소하는 견지에서 보아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더욱이 조선반도에서 미국과 남조선에 의한 무력증강이 계속되고 전쟁위험이 날로 커가는 현 상황은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을 하루빨리 취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지난 4월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협상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왔다.

우리는 이미 제네바에서 진행된 3단계 조미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미국측에 제기하고 토의하였다.

공화국정부의 발기와 노력은 북과 남의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다.

오래전에 북남사이에 불가침을 공약한 합의서가 채택된 조건에서 이제 우리와 남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남조선무력에 대한 통수권을 쥐고 있는 미국사이에 평화보장체계까지 수립된다면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가장 공고하고 철저한 평화보장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될것이다.

그런데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니고 자기 군대에 대한 통수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 남조선당국자들만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현실도 가려볼줄 모르고 저들의 처지도 가늠하지 못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분수없는 행동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아무리 반대한다고 해도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는 반드시 수립될 것이다.

□ 외교부 대변인 담화

(1994. 10. 13)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미국의 워싱턴에서 26차 《연례안보협의회》와 16차 《군사위원회》라는것을 벌리었다.

여기에서는 《핵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전제밑에 우리에게 유엔을 통한 《압력》을 가한데 대하여 운운하면서 미제의 《신속전개억제전력》규모를 늘이고 그 전개시간을 최대로 단축하기 위한 조치들과 《평시작전권이양》문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군사적문제들이 모의합의되었다고 한다.

미국과 남조선의 군부우두머리들이 남조선주둔 미군과 남조선 괴뢰군의 《전력증강계획》을 앞당겨 끝낼것을 또다시 획책한것은 그들이 조선반도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우리를 군사적으로 제압해 보려는 망상을 버리지 않고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조미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 미군부의 보수세력들이 남조선의 군사당국자들을 불러들여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모의판을 공공연히 벌려놓은 것은 조·미사이의 대화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된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심중히 대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조선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보장체계수립문제가 일정에 오르고 있는 때에 미국이 우리를 반대하는 심상치 않은 군사적소동을 벌리는 것은 결국 남조선을 영원히 군사적으로 가로타고 앉아 주인행세를 하며 동북아세아 지역에서 평화

와 안전을 교란하는 작전기지로 계속 써먹으려는 속심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제반 사실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지 못하고 냉전시기의 대결구조가 제거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이 다름아닌 미군부내의 보수세력과 남조선괴뢰들에게 있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하여 주고있다.

또한 이번 모의에서 남조선괴뢰군에 대한 이른바 《평시작전권이양》이라는 놀음을 벌린것도 가소로운 일이다.

남조선괴뢰들이 넘겨받았다는 《평시작전지휘권》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 핵심 부분은 미군에 그냥 남아있고 남조선괴뢰들은 부차적인 부분만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세상에 전시와 평시의 작전지휘권을 나누어 행사하는 당국이 있다면 유독 남조선뿐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들이 이것을 가지고 민중이 쑥대꼴에 오른듯이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그것은 미국에 군사적으로 철저히 예속되어 있는 그들의 가련한 처지를 드러내 보일뿐이다.

이번에 김○○역도가 미군유지비까지 더 올려주면서 미군의 장기주둔을 애걸해 나선것은 그가 역대 남조선독재자들도 무색케 할 민족반역자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미군부와 남조선괴뢰들은 대세를 바로 보고 분별있게 행동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소동을 계속 벌린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은 《평시작전통제권》을 통해 저들이 괴뢰군의 《경계임무》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있다. 더욱이 김○○역도는 누구의 《대남도발기도》요 뭐요 하며 전쟁열을 고취하였다. 이것은 《평시작전통제권이양》을 코에 걸고 북남대결과 전쟁책동을 더욱 강화할 범죄적기도를 드러낸 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은 《주둔군지원협정》에 따라 미군이 요구하면 아무때나 항만, 도로 등 남조선의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다 섬겨바쳐야 하고 해마다 30억달러

가 넘는 유지비까지 부담하는 처지에 있다.

남조선은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외세의 식민지이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얼마전 남조선잡지 《월간중앙》은 《군은 한마디로 미군의 속군이다. 미군이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 군이 미군의 속군이라는 사실에 국민적 자존심은 형편 없이 무너진다. 엄청난 치욕이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이 《아무리 발버둥쳐야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수 없다》고 개탄하였다.

남조선사회가 자주화되기 전에는 그따위 《작전통제권이양》놀음을 골백번 벌려도 소용이 없다.

□ 로동신문 논설 ; 『식민지주구의 자주타령』

(1994. 12. 4)

남조선의 《제1라디오》가 전한데 의하면 김○○일당이 미국, 남조선《연합군사령부》가 가지고 있던 괴뢰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이 12월 1일부터 남조선의 《합동참모본부》로 넘어오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지금 남조선괴뢰들은 저들이 미국에 빼앗겼던 《평시작전통제권》을 44년만에 《되찾게 되》었다고 하면서 무슨 《주권행사》요, 《자주국방》이요 뭐요 하고 큰것이나 얻은듯이 떠들어대고 있다. 김○○역도는 《청와대》에서 괴뢰군부우두머리들과 떡자판까지 벌렸다.

외세에 군사통수권까지 빼앗긴 식민지괴뢰의 가련한 몰골을 스스로 드러낸 추태라 하지 않을수 없다.

원래 군통수권문제는 자주독립국가와 식민지를 가르는 중요한 징표이다.

남조선괴뢰들이 이번에 저들이 44년동안 군통수권을 외세에 빼앗겼다는 것을 자인한 것은 남조선이야말로 철저한 식민지라는 것을 세상사람들 앞에 인정한 것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남조선괴뢰들이 《평시작전통제권이양》을 통해 큰것이나 얻은 것처럼 떠드는

것도 어리석기 그지없다.

작전통제권으로 말하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괴뢰들은 이번
에 《작전통제권》을 되돌려 받은 것처럼 떠들지만 전시에 대비한 작전계획 수
립과 연합훈련, 조기경보에 관한 기능 등은 그전과 다름없이 남조선강점 미군
사령부가 행사하게 된다. 남조선괴뢰들도 《평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는다 해도
미국, 남조선 《연합군사령부설치협정》이 존재하는 한 《연합군사령부》의 《근본
적인 역할에는 변화가 없》으며 《기능 또한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토하고
있다. 또 조선반도에 무슨 《위기》가 고조되면 평시에도 이를 《전시》로 규정하
고 괴뢰군에 대한 작전통제기능을 《연합군사령부》가 행사하게 된다. 이것은 사
실상 《평시작전통제권이양》이란 것이 하나하나한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판이 이룬데 《주권행사》니 뭐니 하는것은 여론에 대
한 또 하나의 우롱행위가 아닌가.

남조선괴뢰들은 《평시작전통제권》을 통해 저들이 괴뢰군의 《경계임무》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있다. 더욱이 김○○역도는
누구의 《대남도발기도》요 뭐요 하며 전쟁열을 고취하였다. 이것은 《평시작전통
제권이양》을 코에 걸고 북남대결과 전쟁책동을 더욱 강화할 범죄적기도를 드
러낸 것이다.

남조선괴뢰들은 《주둔군지원협정》에 따라 미군이 요구하면 아무때나 항만,
도로 등 남조선의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다 섬겨바쳐야 하고 해마다 30억 달러
가 넘는 유지비까지 부담하는 처지에 있다.

남조선은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외세의 식민지이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얼마전 남조선잡지 《월간중앙》은 《군은 한마디로 미군의 속군이다. 미군이
시키는대로 해야 한다. 군이 미군의 속군이라는 사실에 국민적자존심은 형편없
이 무너진다. 엄청난 치욕이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이
《아무리 발버둥쳐야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날수 없다》고 개탄하였다.

남조선사회가 자주화되기전에는 그따위 《작전통제권이양》놀음을 골백번 벌
려도 소용이 없다.

□ 평양방송 논평 ; 『군사통수권을 빼앗긴 주구』

(1996. 7. 2)

김○○ 반역도당은 저들이 마치도 주권행사나 하는듯이 무슨 징표요, 대외관계 자주권이요, 뭐요하며 요란하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김○○ 괴뢰역도는 공식석상에서 저들이 대외관계에서 지도적 역할을 놓고 있는듯이 히떠운 소리를 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앓은뱅이 키자랑을 하는 것과 같은 가소로운 수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 일당의 이러한 놀음은 가련한 식민지 주구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 일당은 군사통수권마저 외세에게 빼앗긴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군사통수권은 독립국가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독립국가라면 군대에 대한 통수권을 행사하기 마련입니다. 군대는 있어도 그에 대한 통수권이 없으면 그것은 벌써 자주권을 잃은 것으로 됩니다.

남조선에서 군사통수권을 틀어쥐고 있는 실권자는 김○○ 일당이 아니라 미국방성의 현지 대리인인 남조선 강점 미군사령관입니다.

원래 남조선의 군대는 남조선 인민들의 의사와 이익에 따라 조직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와 이해관계에 부합되게 만들어진 고용군입니다.

미국은 1948년 8월에 잠정 군사협정을 통해서 군정통치기관이 장악했던 괴뢰군에 대한 지휘권과 관할권을 계속 행사한다는 것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 7월에는 일명 대전협정이라고 하는 통수권 이양에 관한 협정을 조작해 냈습니다.

미제는 또한 1954년 11월에 남조선과의 합의의사록을 통해 지난 조선전쟁시에 행사하던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장기적으로 틀어쥘 수 있도록 법적으로 다시금 고착시켰습니다. 이 합의의사록에는 이른바 유엔군사령부가 남조선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괴뢰군을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휘권안에 둔다는 것이 법문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1977년에 남조선과의 제10차 안보협의회에서 미국-남조선 연합군 창설안을 제기하고 이듬해 7월에 연합군사령부 구성에 관한 협정을 조작했습니다. 남조선 괴뢰군은 사실상 연합군사령부의 창설로 남조선 강점 미군에 편

입된 남조선 군부대나 다름없이 되었으며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이 미국의 직접적 권리로 다시금 확인되고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남조선 강점 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과 연합군사령관의 직책을 겸하면서 괴뢰군 무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대한 작전지휘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김○○ 괴뢰가 군사통수권자가 어찌고 최종결정권이 어찌고 하는 것은 상전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식민지 주구인 제놈의 몸값을 올려보려는 허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김○○ 괴뢰가 찍하면 누구의 도발에 대해 떠들며 괴뢰 육해공군 무력을 비상경계태세에 돌입시키고 화약내 풍기는 전쟁연습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다 상전의 지령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남조선의 한 군사평론가가 《이남 군대는 한마디로 미군의 속군이며 미군이 시키는대로 해야하는 고용군이다. 국방군이라고 하는 이남 군대가 미군의 속군이라는 사실에 민족적 자존심은 형편없이 무너진다. 엄청난 치욕이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라고 잡지에 쓴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 미국주재 남조선 괴뢰 대사가 《현재 미국은 우리의 일체 무기를 통제 하에 두고 있을뿐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휘발유를 장악하고 있다. 이와같은 조건하에서는 미국의 승인없이 누구도 마음대로 국군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남조선 괴뢰군의 예속성을 그대로 드러내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김○○ 일당이야말로 아무런 자주권도 없는 식민지 주구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정책 작성으로부터 그의 시행은 물론 군사통수권도 가지고 있지 못한 김○○괴뢰도당이 아무리 그 무슨 권한이라도 있는듯이 떠들어대도 이 세상에 그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외세의 추악한 주구이며 민족반역의 무리인 김○○ 일당을 권력의 자리에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 인민들이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진정한 군대를 가질 수 없고 외세의 식민지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이 외세를 몰아내고 김○○ 일당을 타도하기 위한 반미반괴뢰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이고 있는 것은 실지 생활체험을 통해 그것을 더욱 똑똑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 한·미 안보협력체제 관련자료

2. 한·미 안보협력체제 관련자료

- 한·미 정부간의 대한민국 정부에의 통치권이양 및 미국 점령군대의 철수에 관한 협정

각서교환으로 체결

1948년 8월 9일 및 11일 서울에서 서명

1948년 8월 11일 발효

〈대통령으로부터 주한미군 총사령관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실

1948년 8월 9일
서울

귀하,

본관은 1948년 5월 10일 국제연합 임시 한국위원단 감시하에 실시된 선거의 결과로 구성된 한국 국회의 토의와 조치의 결과 1948년 8월 5일자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귀하에게 통고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 관한 1947년 11월 14일자 국제연합 총회결의 2의 제3항에 따라 국제연합 임시 한국 위원단에 대하여 본 정부 수립을 통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 관한 국제연합 총회결의 특히 결의 2의 제4항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 임시 한국위원단과 협의한 후 통치기능을 인수할 것임을 귀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존하는 모든 경찰, 해양경비대 및 국방경비대의 지휘와 함께 귀하가 주한 미국군대 총사령관의 자격으로 현재 행사하는 일체의 기능을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함에 있어서 귀하의 협력과 원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귀하가 한국

에 관한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한의 이양과 한국으로부터의 미국 점령군의 철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구역과 시설(이른테면 항구, 야영지, 철도, 통신망, 비행장 등)에 대한 관리권을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으리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귀하의 지휘를 받는 인원은 군인과 문관을 불문하고 또한 그들의 부양가족과 함께 귀하의 전속적 관할에 계속 복(服)할 것입니다.

일체의 통치 책임과 권한을 주한 미국군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점진적이고 질서있게 이양하는 준비를 하고 또한 위에 언급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범석, 윤치영 및 장택상 제씨를 귀 사령부의 대표와 협의하도록 임명하겠습니다.

이 승 만
대 통 령

서 울
주한미군총사령관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cerning
the Transfer of Authority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ithdrawal of United States Occupation Forces

Effected by Exchange of Letters
Signed at Seoul August 9 and 11, 1948
Entered into force August 11, 1948

*The President to the Commanding General,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Republic of Korea
Office of the President

Seoul, 9 August 1948

Sir,

I have the honour to inform you that, in consequence of the deliberations and act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which was constituted as a result of the election held on 10 May 1948, under the observation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there was formed, as of 5 August 1948,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resolution II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on Korea of 14 November 1947,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was notified, on 6 August 1948, of the formation of this Government.

In furtherance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on Korea, particularly paragraph 4 of resolution II, I have the honour further to inform you tha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will be prepared to take over the functions of government. To that end, your co-operation and assistance are requested in transferring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ll such functions now exercised by you as Commanding General.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including the direction of all police, coast guard and constabulary units now in be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s that it will be necessary for you to retain control over areas and facilities of vital importance to you (such as ports, camps, railways, lines of communication, airfields, etc.) as you may deem necessary in order to accomplish the transfer of authority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withdrawal of United States occupation forces from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on Korea. During this period, the personnel of

your Command, both military and civilian, including their dependents, shall remain under your exclusive jurisdiction.

In the interest of providing a progressive and orderly transfer of full governmental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from the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accomplish the purposes set forth above, I am prepared to name Mr. Lee Bum Suk, Mr. Yun Tchi Young and Mr. T. S. Chang to consult with representative of your Command.

SYNGMAN RHEE

President

Lieutenant General JOHN R. HODGE,
Commanding General,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Seoul

□ 대한민국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1948년 8월 24일 서울에서 서명

1948년 8월 24일 발효

전 문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은 1948년 8월 9일과 8월 11일 부로 각자 미군의 한국철병과 한국점령 종결을 목적으로 하여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대한민국정부에 정권이양을 점진적으로 질서있게 행하는데 관한 각서를 교환 하였으므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은 점진적이며 질서있는 정권이 양과 주한미군사령관하에 있는 군대철폐에 관한 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를 할 대표를 임명하였으므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의 대표들이 회담한 결과 미군철퇴가 완료될 때까지 한국의 안전을 유지하며 현존하는 대한민국국방군의 조직, 훈련 및 장비를 계속함이 대한민국정부와 주한미군사령관의 공통의 이익이라는 것이 표현되었으므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의 대표들의 협의에서 현시된 공통의 군사 및 안전의 요구를 달성할 합의의 기반을 성립시킴이 요망되므로, 대한민국헌법 제61조에는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하며,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행정수반 및 군사통수자의 양자격으로서의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할 하기(下記)의 군사 및 안전보장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 합의한다.

제1조

주한미군사령관은, 본국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또한 자기의 직권내에서, 현존하는 대한민국국방군을 계속하여 조직, 훈련 무장할 것을 동의한다.

단, 동 사령관의 이에 대한 책임은 군대의 한국철퇴와 동시에 종료한다.

제2조

주한미군사령관은 공동안전에 부합된다고 간주할 때에 점진적으로 가급적 속히 전경찰, 해안경비대 및 현존하는 국방경비대로서 된 대한민국 국방군의 지휘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양하기를 동의하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동 국방군지휘책임을 인수하기로 동의한다.

또한, 1947년 11월 14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통용된 결의 112(II)호 제4절(C)항 (동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C) 가급적 조속히 그리고 가능한 한 90일이내에 그들의 군대를 한국으로부터 완전히 철수하기 위하여 점령군과 약정한다」에 의하여 예기된바 미군철수의 완료시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은 공동안전을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국방군의 조직, 훈련 및 장비를 용역케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방군(국방경비대, 해안경비대 및 비상지역에 주둔하는 국립경찰과견대를 포함함)에 대한 전면적인 작전상의 통제를 행사하는 권한을 보유할 것으로 합의한다. 본조의 규정은 한국 국방군행정이나 대한민국정부의 적을 배제하기 위한 인사전형이나 현재 또는 미래의 부대인원의

충당을 위한 모병이나 또는 대한민국 헌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한 법률에 따라서 규정될 수 있는 한국국방군의 증강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3조

대한민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발송한 1948년 8월 9일부 각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그가 대한민국정부에의 권한의 이양과 국제연합총회의 한국에 관한 결의에 의거한 한국으로부터의 미국 점령군의 철수를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지역과 시설(항구, 진지, 철도, 병참선, 비행장 기타)에 대하여 통제권을 보유할 것을 동의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은 가급적 속히 이상에 언급한 미군의 사용지역과 시설의 목록을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작성하며 그에 대한 모든 변경을 동 정부에 항상 통지할 것을 동의한다.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은 그의 지휘하에 있는 부양자를 포함한 군대 및 민간인원에 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보유하고 그들의 개인으로서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률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의 관할하에 있는 상기 개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시행기관에 의하여 체포된 자는 주한미군사령관의 보호와 지배에 즉시 회부하고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의 관할하에 있지 않는 개인으로서의 그의 관할하의 인원 및 재산의 안전에 대한 유해한 행위로 인하여 체포된 자는 대한민국정부의 보호와 지배에 즉시 회부할 것으로 합의한다.

제4조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은 이 잠정적협정에 표시된 제원칙에 의거한 대한민국정부의 한국 국방군에 대한 책임의 점진적 및 질서있는 이양의 완수에 관한 세목은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의 적당한 관리간에 결정할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정부에 한국 국방군 책임의 이양은 가급적 조속한 단시일 내에 착수할 것을 동의한다.

제5조

본협정은 1948년 8월 24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2통 작성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에 등록한다. 한국어 본문 및 영어본문은 동등의

효력이 있으나 상위가 있을 시에는 영어 본문에 의한다.

1948년 8월 26일

대한민국대통령

이승만

주한미군사령관

중장 존 R. 하지(Jonn R. Hodge)

□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주한 미국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

1950년 1월 26일 서울에서 서명

1949년 7월 1일 소급 발효

서 문

미국정부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미국대통령은 아래에 규정
한 조항하에 주한미국군사고문단(이하 단이라 약칭함) 설치를 인가한다.

제1조

단의 목적은 육군 해안경비대 및 국립경찰을 포괄한 군경의 조직 통할 및
훈련에 있어서 대한민국정부를 고문 및 원조하여 전기(前記) 군경이 미국의
군사원조를 유효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군경을 한국경제력
범위내에서 발전시키는 데 있다. 본 단의 국방부 인원수는 양 정부의 합의가
없는 한 장교 및 병사 도합 5백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한국군경의 장교 및 병
원(兵員)의 선택은 대한민국정부가 이를 행한다.

제2조

본 협정은 하기(下記)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종료한다.

(1) 일방의 정부에서 상대방 정부에게 사전 6개월에 서면으로 종료통고를 할
때

(2) 일방의 정부에서 본 단의 철회가 동 정부의 공익상 필요하다는 인정하에 상대방 정부에게 이 철회를 통고할 때 단, 이 때에는 본조 (1)항 규정을 준수함을 불요한다. 단, 철회로서 본 협정을 종료할 시에는 동 단의 직무를 종료하고 실제적으로 한국을 출발함에 필요한 기간(3개월을 초과함을 부득함)내에는 한국정부는 본 협정하에서 발생하는 한국정부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제3조

본 단의 직무는 군사 및 기타 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본 협정 제1조에 표시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고문과 원조를 대한민국정부에게 공여하는데 있다. 단은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한국군경대에 대하여 고문과 원조로 공여한다.

제4조

본 단원과 동 가족은 주한미국대사관 및 해당계급의 동 관원(館員)에게 부여한 제특권과 면책권을 향유하는 목적을 위하여 동 대사원의 일부로 인정된다.

제5조

본 단원은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게 되는 임무를 인수할 수 없으며 또한 인수케 할 수 없다.

제6조

본 단회원은 실무에 종사하며 미국정부로부터 일정한 봉급과 수당을 정기적으로 수취하는 동시에 이에 부가하여 양등한 생활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별수당을 수취한다.

이 특별수당은 한국정부가 원화로 지불한다. 특별수당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합의하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인 바 이를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본 단 각 인원이 그 직무를 띠고 한국에 거주하는 전 기간에 선(亶)하여야 지급한다.

제7조

대한민국정부는 본 단에 공용으로 또는 본단원 또는 동 가족의 사용으로 수입되는 물자비품, 공급품 및 기타 일반물품에 한하여 관세를 면제한다.

이러한 물자, 비품, 공급품 및 기타 일반물품은 한국 국산세, 소비세 및 기타 세, 관세, 수입세 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반출시에 수출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8조

(1) 대한민국정부는 동 단 단원 및 단원 가족의 주택 및 단의 공무를 위한 건물 사무소의 수리유지에 필요한 원화 및 본 협정 제8조 2항과 제9조에 규정한 한국인 직원에 대한 보수 및 국내 교통비를 지불함에 필요한 원화 및 기타 동 단체원 및 단원가족의 유지에 필요한 현지 공급품, 비품(식료품 제외)의 구입과 노무를 고용함에 충분한 원화를 지정된 주한미국대사관대표에게 수시로 공급한다.

(2) 대한민국정부는 본 단원이 한국 국내에서 공무여행함으로 소용하는 비용을 원화로 지불한다.

(3) 대한민국정부는 본 단 또는 미국정부에게 경비를 부가시키지 않고 본 단원과 동 가족에게 적당한 주택과 본 단이 공무수행에 사용할 적당한 건물 및 사무소를 제공한다. 이러한 주택 건물 및 사무소 유지에 필요한 공익시설과 연료를 미국정부에게 경비를 부가시키지 않고 공급하여 본 단이 사용하도록 한다. 상기한 모든 주택과 사무소는 가능한 한 미국군사처에서 동양의 주택 또는 사무소에 대하여 규정한 표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의 사전동의가 없이는 건물의 신축비용에 대하여 지불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

단에 필요한 현지 직원의 보수는 대한민국정부 대표자와 주한미국대사관 대표자가 수시 결정하며 그들 한인 통역, 서기, 노무자 등의 임금 및 사용인(私傭人)을 제외한 기타 직원의 임금과 단 및 단원이 필요로 하는 한국 국내 여행비, 비품비, 용도비는 대한민국정부가 이를 부담한다. 단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공용우편요금 무료송달의 특전 인지(印紙)를 대한민국정부는 무료로 제공한다.

제10조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의료원과 동 의무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본 단원과 동 가족에 대하여 적당한 의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정부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 단원 또는 동 가족 중 위중한 환자를 국내에서 미국의료시설이 있는 지방으로 이송한다.

제11조

대한민국정부 및 본 단간의 정책에 관한 모든 사무연락은 주한미국대사를 통하여 이를 행한다. 본 단은 동 단장이 승인하는 순전히 군사적인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정부 직원과 더불어 직접 교섭할 수 있다.

제12조

한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군사기밀 정보교환 또는 발표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에서 제정한 군사방첩세목의 규정에 의하여 동 정보를 수호한다는 상호적 양해하에 실행할 것인 바 동 정보를 접수한 정부는 그 제공 정부의 특정한 승락이 없는 한 제3국정부 혹은 수취권한이 없는 자에게 이를 재발표할 수 없다.

제13조

본 협정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 제출 등록케 한다.

제14조

본 협정은 양대표가 서명할 시에는 1949년 7월 1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인준을 요한다.

본 협정문은 1950년 1월 26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문 및 영문으로 두 통을 작성한다. 한국본문 및 영본문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상이가 있을 시에는 영본문에 의한다.

위를 입증키 위하여 양국정부 정식대표자가 본 협정에 조인한다.

대한민국대표
신성모 김도연

미 국 대 표
존J. 무초

□ 대한민국정부 및 북미합중국정부간의 상호방위 원조협정

1950년 1월 26일 서울에서 서명
1950년 1월 26일 발효

서 문

대한민국정부 및 미합중국정부는

국제연합헌장 범주내에서 그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충실한 각국으로 하여금 그 목적과 원칙을 지지함에 유효한 자위책을 발전시킬 능력을 증진케 함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육성하기를 원하며 또한 그 헌장에 제정한 바와 같이, 국제연합에 무력을 비치함과 또한 범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신뢰할 만한 보장하에 보편적으로 군비를 축소 및 정비에 대하여 각 가맹국의 합의를 얻는데 공명정대하게 최대의 노력을 계속하기를 원하며

침략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되는 불안전을 제거하는 대책이 경제발전을 향상시킬 것을 인정하며

이 원칙을 촉진시키려고 미합중국정부는 북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군사원조를 제공하기 위하여 1949년 상호방위원조법을 제정한 것을 고려하며

1949년의 상호원조법에 의하여 미국정부가 원조를 제공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이를 수취하는 것을 규정하는 상호간의 양해사항을 명시하기를 원하여 아래와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

1. 경제부흥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절대필요함으로 이를 우선 실행하여야 된다는 원칙에 순응하여 각 정부는 원조공여정부가 허락하는 기구, 물자, 노력 내지 기타 군사원조를 본 정부가 동의하는 약정, 및 조건하에 상대방의 정부

혹은 기타 정부에게 제공 혹은 계속 제공한다. 협정국 중, 일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원조는 국제연합헌장에 순응하여야 한다. 본 협정에 의하여 미합중국이 제공하는 원조는 1949년의 상호원조방위법의 각 규정, 조건 약정 및 종료규정과 금후 시행될 기타 미국법령에 의거한다. 양국 정부는 수시로 본항의 규정을 실행함에 필요한 상세한 조정을 협의한다.

2. 대한민국정부는, 본조 제1항에 의하여 수취한 원조를 그 공여목적에 위하여 유효히 사용할 것과, 미국정부의 사전승락이 없이는 원조공여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유용하지 않을 것을 공약한다.

3. 대한민국정부는 미국정부의 사전승락이 없이는 제1항에 규정한 설비 물자 내지 노력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한국정부의 관원이나 대표자가 아닌 개인이나 기타 국가에 이양하지 않을 것을 공약한다.

제2조

한국 서울에서 1948년 12월 10일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조인한 경제 협조협정 제8조가 본 협정 종료전에 실효될 시에는 대한민국은 본협정이 유효한 기간내에는 합의한 조건과 약정에 의하여 미국이 자원결핍 또는 결핍가능성으로 인하여 요구하며 한국내에서 구득(求得)할 수 있는 원료품 및 반제품을 소정기간중에 소정량을 생산하여 미국정부에게 이를 양도하도록 편의를 도모한다. 이러한 양도의 조정에 있어서는 한국의 국내사용과 상업수출용에 필요한 적당한 양을 고려한다.

제3조

1. 각 정부는 보안상 지장이 없는 한 본 협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업을 공표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2. 각 정부는 본 협정에 의하여 상대방 정부가 제공한 군용품 기술 또는 정보의 기밀이 발로되거나 누설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정부 합의하에 안전보장 방도를 취한다.

제4조

양국정부는 일방이 요청할 시에는 본 협정하에 제공된 기구, 물자 또는 기술에 관한 발명, 가공, 기술, 정보 및 기타 법률이 보호하는 재산의 전매특허권과

유사한 요구권에 대하여 적당한 조정을 협의한다. 이러한 협의에 있어서 각 정부는 각자 국민의 전기(前記)요구와 그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바 본 협정국이 아닌 외국 국민의 요구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는 공약을 협의사항에 포함할 것을 고려한다.

제5조

대한민국정부는 다른 협정이 없는 한 본 협정에 관련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 재산, 자재 내지 기구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세와 국내과세를 면제한다.

제6조

1. 양국정부는 일방정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본 협정의 적용 및 본협정에 의하여 행한 운영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의한다.

2. 대한민국정부는 정식미국대표에게 본 협정에 의하여 제공된 원조의 이용 상태를 자유로 또 충분히 시찰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제7조

양국정부는 상호안전과 부흥 목적을 위하여 전력자재, 기구 및 가능한 범위 내의 기술자료 등의 수출에 관하여 유효한 통제를 행함에 상호관심이 있음을 인정하며 양국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8조

1. 본 협정은 쌍방대표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일방정부가 상대방에게서 본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의 서면통지를 수취한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 본 협정은 대한민국국회의 인준을 요한다.

2. 본 협정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 등록한다. 본 협정은 1950년 1월 26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문 및 영문으로 두 통을 작성한다. 한국본문과 영본문은 동일한 효력을 띠나 차이(相異)가 있을 시에는 영본문에 의한다.

위를 입증키 위하여 양국정부의 정식대표자가 본 협정에 조인한다.

대한민국대표

신 성 모

김 도 연

미 국 대 표

존 J. 무 초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84호, 통합군사령부의 설치 권고

(1950. 7. 7)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이 대한민국에 무력공격을 가한 것은 평화의 파괴가 됨을 결정하며, 국제연합 회원국이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동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1. 대한민국을 원조하여 무력침공에 대하여 이를 방위함으로써 동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1950년 6월 25일 및 27일의 결의에 대하여 국제연합 회원국 정부 및 국민들이 보낸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환영하며
2. 국제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국제연합에 보내왔음을 유의하고
3. 전기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군대와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여사한 군대와 기타 원조를 미국관하 통합사령부에 제공할 것을 권고하며
4. 미국이 동 군대의 사령관을 지명할 것을 요청하며
5. 본 통합사령부는 그의 재량에 의하여 작전중에 제참전국의 국기와 함께 국제연합기를 사용할 것을 승인하며
6. 미국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하여 통합사령부 지휘하에 취한 활동에 관하여 적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RESOLUTION 84 ADOPTED BY THE SECURITY COUNCIL ON 7 JULY
1950 (S/1588)

The Security Council,

Having determined that the armed attack upon the Republic of Korea by forces from North Korea constitutes a breach of peace,

Having recommended tha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urnish such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necessary to repel the armed attack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1. Welcomes the prompt and vigorous support which Governments and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given to its resolution 82 (1950) of 25 and 27 June 1950 to assist the Republic of Korea in defending itself against armed attack and thus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area;

2. Notes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have transmitted to the United Nations offers of assistance for the Republic of Korea;

3. Recommends that all Members providing military forces and other assistance pursuant to the aforesai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make such forces and other assistance available to a unified command under the United States;

4. Requests the United States to designate the Commander of such forces;

5. Authorizes the unified command at its discretion to use the United Nations flag in the course of operations against North Korean forces concurrently with the flags of the various nations participating;

6. Requests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the Security Council with reports as appropriate on the course of action taken under the unified command.

Adopted at 476th Meeting,
7 July 1950

□ 대한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일명 대전협정)

각서교환으로 체결
1950년 7월 12일 대전에서 서명
1950년 7월 12일 발효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로 송부된 서한〉

1950년 7월 12일
주한 미국대사관
한국, 대전

미국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대하여 경의를 올리는 바이며 또한 미국군대(단, 1950년 1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된 협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주한미군 고문단은 제외함) 및 대한민국 정부의 각기의 권리 의무 및 관할권상의 한계를 정의 내지 규정하는 정식 협정이 결여하므로 주한 미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 재판권은 미국군법회의에 의하여 행사되도록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또한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구속은 한국인이 미국군대 또는 그의 구성원에 대한 가해행위가 발각된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질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상술한 바와 같은 사정하에서 한국인이 구속되었을 경우에 이러한 자는 가급적으로 속히 대한민국의 민간 관헌에게 인도될 것입니다.

외무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내에 북한인이 침투하는 등의 절박한 사태에 비추어 미국군대 이외의 여하한 기관의 관할에도 복종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는 바를 양해하실 것입니다.

지방재판소의 부재로 인하여 요청이 있지 않는 한 미국군대의 재판소는 대

한민국 국민을 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대사관으로서는 외무부에서 대한민국정부를 대신하여 재한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전기 요구조건을 확인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로부터 미국대사관에게 송부한 서한〉

대한민국 외무부
대전 1950년 7월 12일

대한민국 외무부는 미국대사관에 대하여 경의를 올리고 또한 대전에서의 동사령관의 1950년 7월 12일자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본 부는 1950년 7월 12일자 귀 대사관의 서한중에서 언급된 다음과 같은 제의를 이의없이 수락하는 바를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즉

(1) 미국 군법회의는 재한 미국군대의 구성원에 대하여 배타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2) 한국인이 미국군대 또는 구성원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범하였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미국군대에 의한 한국인의 구속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그러한 자는 가급적으로 속히 대한민국 민간관헌에게 인도된다.

(3) 외무부는 전쟁이라는 절박한 사태에 감하여 미국군대는 미국군대이외의 여하한 기관에도 복종할 수 없으며 또한 미국군대의 재판소는 지방재판소의 부존재로 인한 요청이 있지 않는 한 한국인을 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양해한다.

대한민국 외무부
대전

□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공한

〈이승만대통령이 맥아더장군에게 보낸 공한〉

(1950. 7. 15)

대한민국을 위한 국제연합의 공동군사노력에 있어 한국내 또는 한국 근해에서 작전중인 국제연합의 모든 부대는 귀하의 통솔하에 있으며, 또한 귀하는 그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있음에 경하여 본인은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절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며, 여사한 지휘권을 귀하 자신, 또는 귀하가 한국내 또는 한국 근해에서 행사하도록 위임한 기타 사령관이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군은 귀하의 수하에서 복무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며, 또한 한국국민과 정부도 고명하고 훌륭한 군인으로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국토의 독립과 보전에 대한 비열할 공산침략을 대항하기 위하여, 힘을 합친 국제연합의 모든 군사권을 갖고 있는 귀하의 전체적 지휘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격려하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심후하고도 따뜻한 개인적인 경의를 표하나이다.

1950년 7월 15일

이 승 만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맥아더장군이 이승만대통령에게 보낸 회한〉

7월 15일자 공한에 의하여 이대통령이 취하신 조치에 대하여 본관의 사의와 충심으로부터의 찬의를 그에게 표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한국내에서 작전중인 국제연합군의 통솔력은 반드시 증강될 것입니다. 용감무쌍한 대한민국 군을 본관 지휘하에 두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나이다. 이대통령의 본관에 대한 개인적 찬사에 대한 사의와 그에 대하여 본관이 또한 가지고 있는 존경의 뜻도 아울러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우리들의 장래가 고난하고 요원

할지도 모르겠으나 중국적인 결과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므로 실망하지 마시도록 그에게 전언해 주시기 바라나이다.

1950년 7월 18일

맥 아 더

□ 한·미 상호방위조약

1953년 10월 1일 서명

1954년 11월 18일 발효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치가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행사를 삼가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당사국은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고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으로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의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국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 두 벌로 작성됨.

대한민국을 위해서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해서 존 포스터 델레스

미합중국의 양해사항

어떤 체약국도 이 조약의 제3조 아래에서는 타방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를 원조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또 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 아래 합법적으로 존치하기로 된 것과 합중국에 의해 결정된 영역에 대한 무력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조를 공여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의사록

1954년 11월 17일 서울에서 서명

1954년 11월 17일 발효

1955년 8월 12일 워싱턴에서 수정

1955년 8월 12일 수정 발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공동이익은 긴밀한 협조를 계속 유지하는데 있는 바 이는 상호유익함을 입증하였으며 자유세계가 공산침략에 대하여 투쟁하며 자유로운 생존을 계속하고자 하는 결의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를 그의 정책으로 삼는다.

1. 한국은 국제연합을 통한 가능한 노력을 포함하는 국토통일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미국과 협조한다.

2.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군을 국제연합사령부의 작전지휘권하에 둔다. 그러나 양국의 상호적 및 개별적 이익이 변경에 의하여 가장 잘 성취될 것이라고 협의후 합의되는 경우

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3. 경제적 안정에 배치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자원내에서 효과적인 군사 계획의 유지를 가능케 하는 부록 B에 규정된 바의 국군병력 기준과 원칙을 수락한다.

4. 투자기업의 사유제도를 계속 장려한다.

5. 미국의 법률과 원조계획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관행에 부합하는 미국정부의 원조자금의 관리를 위한 절차에 협조한다.

6. 부록 A에 제시된 것을 포함하여 경제계획을 유효히 실시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대한민국이 실현하겠다고 선언한 조건에 기초하여 미합중국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를 그의 정책으로 삼는다.

1. 1955회계연도에 총액 7억 불에 달하는 계획적인 경제원조 및 직접적 군사 원조로써 대한민국이 정치적, 경제적 및 군사적으로 강화되도록 원조하는 미국의 계획을 계속한다. 이 금액은 1955회계연도의 한국에 대한 원조액으로 기왕에 미국이 상상하였던 액보다 1억 불 이상을 초과하는 것이다. 이 총액 중 한국민간구호계획의 이월금과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에 대한 미국의 거출금을 포함하는 1955회계연도분의 계획적인 경제원조금액은 약 2억 8천만 불에 달한다 (1955회계연도의 실제 지출은 약 2억 5천만 불로 예상된다).

2. 양국정부의 적당한 군사대표들에 의하여 작성될 절차에 따라 부록 B에 약속한 바와 같이 예비군제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군비를 지원한다.

3. 대한민국의 군비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실시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적당한 군사대표들과 충분히 협의한다.

4.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에 의하지 않은 침공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의 헌법 절차에 의거하여 침략자에 대하여 그 군사력을 사용한다.

5. 필요한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한국의 재건을 위한 경제계획을 계속 유지한다.

1954년 11월 1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민국외무부장관
변 영 태
대한민국주재미합중국대사
에리스·오·브릭스

□ 국가재건최고회의-유엔사 공동성명

(1961. 5. 26 『5. 16 실록』 PP. 224~225)

〈전략〉

혁명위원회는 혁명으로 인하여 잠시동안이나마 미제8군사령관의 지휘권을 벗어난 비정상상태의 수습을 위해 「매」대장과의 교섭에 착수했다.

즉 1. 한·미우호관계 증진

2. 주한유엔군으로 하여금 혁명을 인정케 하는 문제

3. 작전지휘권의 재정비로써 대공방어 임무

혁명과업 완수를 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세가지 목적아래 교섭이 시작됐다.

5월 19일 제8군사령관 「매」대장은 정보관 「몰」대위를 통하여 김종필 중령과의 면담을 제의해 왔다. 혁명위원회는 교섭에 임한 혁명위의 방침을 결정하고 김종필 중령으로 하여금 통역에 김소령을 대동케하고 「몰」대위의 안내로 상오 9시 미제1군사령부에 도착하였다. 혁명후 처음으로 한·미간의 회담이 열린 것이다.

참여자

미군사 : 「매」대장, 정보국장 「콘」대령, 정보관 「몰」대위

한국측 : 「김종필」중령, 통역 김소령

회의내용

〈매〉대장 : 이번 「쿠데타」로 인한 사태는 대전협정에 의한 지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육군단 포병대, 해병대, 전진주군의 즉시 원대복귀를 요구

〈김중령〉 : 「매」대장이 그렇게 대전협정을 고집한다면 우리 요구도 들어주어야 한다.

첫째, 혁명의 인정

둘째, 적어도 헌병 5개중대와 서울을 방어할 수 있는 병력으로 수도방위 사령부를 혁명위 직속에 두어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날 회담은 쌍방이 서로 거리가 먼 주장만을 되풀이하여 아무런 타결없이 헤어졌다. 20일 상오 다시 「매」대장이 혁명위측과의 회담을 제의해오자 “혁명은 사전에 보고할 수 없는 것”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전협정 위반, 작전지휘권 침해문제는 따지지 않기로 하여 혁명을 인정, 사실화하는데 성공하고, 이러한 타결원칙에서 전일 한국혁명위측의 두가지 요구안건에 흡족한 내용의 한·미 공동성명 발표에 합의하였다. 5월 26일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유엔군사령관에게 모든 작전지휘권을 복귀시켰음을 자에 성명하며, 유엔군사령관은 공산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위함에 있어서만이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

(2) 유엔군사령관은 현재 서울시에서 근무중인 제1해병여단 및 제6군단 포병단의 원대복귀를 지시하였다. 이는 전에 수행하던 전선방어군사력을 복귀시키기 위함이다.

(3) 유엔사령관은 제30사단, 제33사단, 제1공수특전단 및 전방부대로부터 추가적인 5개 헌병중대를 국가재건최고회의 통제하에 둔다.

1961년 5월 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유엔군총사령부 사령관

□ 주월 한·미군사실무 약정서

(1965년 9월 6일, 사이공)

1. 대한민국정부는 월남공화국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월남내에 공산주의자들의 사주와 지원에 의한 반란 및 침략을 격퇴하여 이 지역에 있어서의 자유와 안전을 회복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전투 및 전투 지원부대와 행정사령부로 구성된 대한민국군을 증파한다.

가. 파월한국군사령부(이하 한국군사령부로 약칭한다) 및 직할부대

나. 1개 육군보병사단

다. 1개 해병연대

라. 1개 야전지원사령부

2. 증파되는 전투부대는 월남공화국정부의 증파요청 취지에 따라 월남공화국정부의 국가평정계획을 지원함에 필요로 하는 작전임무를 수행하며 이미 파견된 한국군부대 및 인원들은 기정약정에 입각한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

3. 대한민국정부로부터 파견된 파월한국군의 지휘권은 대한민국정부에서 임명한 한국군사령관(COM ROKF-V)에게 있다. 기 파견되어 있는 한국군에 대한 ROK MAC-V 부대장에게 부여된 지휘권은 새로 설치 임명되는 한국군사령관이 월남에 도착과 동시에 통합 관장한다.

4. 한국군, 월남군 그리고 US MAC-V간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한국군에 예하 각 부대의 적절한 통제체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국제군사원조기구를 존속 운영한다. 이 기구의 구성은 월남군합동참모총장(의장) 한국군사령관 및 US MAC-V 사령관으로서 구성되며 이 기구에는 각 실무자급 대표를 포함한다. 이 기구의 기본기능은 한국군 각부대의 임무 통제 및 작전 지역등에 관한 방책을 결정하는 데 있으며 이 기구에서의 결정은 각 정부대표에게 상호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군, 월남군 및 미군의 이해관계에 관한 방침상의 문제는 필요에 따라 국제군사원조정책회의에 상정된다.

5. 한국군에 의하여 포로된 VC 혹은 VC용의자는 한국군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Geneva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취급되며 가급적 신속히 지정된 월남군 심

문소 혹은 시설에 인계한다.

6. 한국군과 US MAC-V는 그들의 임무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상호제공 또는 교환하며 US MAC-V는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정보활동을 협조지원한다.

7. US MAC-V는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지도 및 항공사진과 소요의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8. 파월 한국군사령관은 그 부대장에 대하여 월남공화국에 도착전과 도착후 및 부대전개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교육에는 한국군과 월남국민 및 정부 사이에 가능한 한 최대의 우호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월남의 역사, 풍속 및 전통 등과 관계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US MAC-V사령관은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한국군사령관에게 소개 및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이 계획에 관하여 한국군사령관은 월남군 당국과 협조한다.

9. 군수지원

US MAC-V는 미군부대의 기준과 동일한 군수기준에 의거하여 한국군을 지원한다. 세부적인 군수지원계획과 한국군이 휴대할 보급품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약정에 의한다.

가. US MAC-V는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인가문서와 규정 인가량에 따라 한국군의 T/A에 수록된 품목 및 월남군계통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장비와 보급품의 지원을 제공한다. 한국군은 부여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그의 예하 각 부대가 소요하는 지원을 계획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US MAC-V가 필요로 하는 장비 및 편성표(TO & E) 인가표(T/A) 그리고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US MAC-V는 한국군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TO & E 및 T/A를 수정하는데 동의한다.

나. 한국군에 의하여 월남에 투입된 장비(함정포함) 및 보급품의 소유권은 한국군사령부에 있다.

전투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망실되었거나 전투 정상마모 및 불가피한 사유로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사용 불가능케 된 한국군의 장비 및 보급

품은 같은 종류로서 보충되며 이의 소유권은 한국군사령부로 이전된다. 이와 같이 같은 종류로 대치된 장비 이외에 월남군원조계획이나 미군계통에서 제공된 장비의 소유권은 그 장비를 제공한 근원에게 있다. 한국군에게 소유권이 없는 장비를 월남으로부터 철수함에는 US MAC-V 사령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 다. US MAC-V는 미군에게 공급되는 동일한 기준금액을 초과치 않는 동일한 수준의 식량을 한국군에게 제공한다. 한국인의 독특한 지방적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식량은 미군근원에서 제공치 않으나 그러나 미군은 한국항만으로부터 월남공화국까지의 그러한 품목의 수송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군수 및 재정부록에 포함시킨다.
- 라. US MAC-V는 한국군과 동일한 조건하에 작전중인 미군전투부대에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군사령부 예하 각 구성부대에 대한 병원(兵員)의 숙소, 건강 그리고 복지를 줄 수 있도록 협조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 마. US MAC-V는 상황이 위급하거나 한국군의 능력을 초과하는 의료지원을 한국군이 요구할 때에는 미군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미군계통으로 후송진료를 하여야 한다.
- 바. US MAC-V는 한국군 요원이 필요로 하는 국내수송을 미군과 동일한 조건과 우선순위에 의하여 제공한다.
- 사. 국외수송
US MAC-V는 한국군 요원과 한국군의 활동과 관련있는 자 및 한국군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물자에 대한 국외수송기관 이용을 미군과 동일한 조건과 우선순위에 의하여 이용하는 것에 합의한다. 이 수송에는 한국군 요원의 교체, 본국으로의 소환, 사망한 자의 영현의 후송, 한국군과 관련있는 검열단의 수송, 긴급후송 또는 한국군의 긴급철수 등을 포함한다. 기타 소요는 개별적으로 고려한다.
- 아. 한국군은 4단계 정비까지 수행한다. 한국군 및 월남군의 능력을 초월하는 장비의 정비지원은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문서 및 지원수준에 따라

US MAC-V에서 제공한다. 전투 혹은 정상마모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 불가능하게 된 TO & E 및 T/A장비는 보충한다.

자. US MAC-V는 미군부대와 동일한 기준의 부대에 휴양시설을 제공할 것을 동의한다.

차. US MAC-V는 통신, 수송, 장비 및 필요한 민간고용인을 포함한 근무지원을 US MAC-V에서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230명(장교 70명, 사병 160명)의 범위내에서 Saigon에 설치될 한국군사령부를 지원한다. 이 사령부에 필요한 건물, 숙소 및 식당 등의 소요부동산은 월남군에서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사무용 보급품 및 비품과 장비 그리고 본 협정서에서 한국군에 제공키로 된 기타 지원 등을 제공한다. 월남군에서 이와같은 부동산을 제공할 때까지 한국군은 IMAO 건물내의 사무실을 잠정적으로 이용한다.

10. 인사근무

US MAC-V는 한국군에 대하여 보통 미군에게 제공되는 동등한 기준조건 및 수준의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한다. 이 시설의 사용이 허가된 자는 미군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규칙, 규정 및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가. 미군 Rest and Recuperation 계획에 참여

나. 미군 종교시설의 이용

다. 미군 PX시설의 이용

한국군은 125명 또는 그 이상의 인원이 집단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곳에 인근 미군 기존 PX시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 PX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시설에서 판매될 품목은 월남에서 PX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미군기관에서 공급한다.

US MAC-V는 이 미군기관이 한국군의 지방적인 기호에 맞는 품목을 10가지 범위내에서 한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 미군식당, 숙소 및 구락부 시설의 이용

파월한국군 요원은 미군식당, 숙소 및 구락부를 사용한다. 125명 또

는 그 이상의 인원이 집단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곳에 한국군은 자대 식당, 숙소 및 구락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품목은 미국기관에서 상환제로 공급한다.

마. 월남내에서 수송을 위한 기존 미군버스, Sedan, Taxi 및 항공기 등 미군에서 운영하는 수송수단의 사용.

바. 미군 우편시설의 이용

파월한국군 요원은 지정된 미군 우편수집소와 대한민국 서울 군우시설간의 공문 및 개인서신(1종부터 4종까지)송달을 위한 무료 “봉인파우치”를 사용한다.

사. 장례근무

한국군은 적절한 관습에 따르는 영현의 처리를 위하여 사단에 영현등록 및 수집소를 설치 운영한다. 영현처리용 보급품은 US MAC-V에서 제공하며 한국으로 후송되어 추후 안치될 유해는 미군 후송계통을 따라 수송한다.

아. US MAC-V는 미군계통을 통한 한국군의 의무후송 및 한국군의 활동과 관련된 기타 연락업무를 지원협조하기 위하여 월남과 한국간에 필요한 한국군 연락장교를 배치할 것과 이들 연락장교에 대하여 이와 같은 직무를 맡은 미군과 동등한 지원을 제공할 것에 동의한다.

자. 한국군은 각 개인에게 사진을 부착한 영문으로 번역된 신분증명서를 발부한다. 이 신분증은 상술한 미군의 제 봉사시설에서 적용된다.

차. 한국군사령부에서 인정하는 한국 종군기자는 미국 종군기자의 대우에 준한다.

11. 한국군을 위한 통신지원은 별도 약정서에 의한다.

12. 한국군사령관과 US MAC-V 사령관과의 경리문제는 별도 약정서에 따른다.

13. US MAC-V 사령관은 한국군부대가 그 특정한 지역에서 전개 완료할 때까지의 경계 책임을 진다.

14. US MAC-V는 한국군 예하 각 부대에서 임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통역관 및 일반고용인을 제공한다. 이에 관한 절차는 상술한 경리약정에 따른다.

15. 한국군사령관과 US MAC-V 사령관은 월남국내에 있어서 각기 자국의 종업원에 의하여 발생된 소송권을 상호 포기한다. 전투 또는 비전투활동시 한국군이 가한 월남정부나 개인의 재산 및 인명피해의 보상은 별도 약정서에 따른다.

16. 한국군사령관과 US MAC-V 사령관은 군법회의 또는 타군과의 행정적 소송에 의하여 필요한 증언과 또는 통역관 등의 가능한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충분한 협조를 할 것에 동의한다.

17. 한국군사령관과 US MAC-V 사령관은 본 협정서에서 제공된 비밀조항 근무 혹은 첩보 등의 누설과 타협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에 동의한다.

18. 1950년 5자협정의 조항에 의하여 미군이 취득한 동일한 권리, 특권 및 면제를 한국군에게도 적용시킨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한다.

19. 약정서

가. 본 협정서는 합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장교에 의하여 서명되며 쌍방이 합의한 일반 군사실무약정서를 성립시키고 또한 효력을 발생한다. 본 약정서는 대한민국과 미국정부의 적절한 대표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쌍방은 공히 90일전에 사전통보를 함으로써 본 약정서의 전부 혹은 일부에 관한 재협상을 요청할 수 있다.

나. 1964년 9월 5일 대한민국과 US MAC-V 대표간에 의하여 연서된 이동외과병원에 관한 군사실무약정서는 본 협정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다. 1965년 2월 8일 대한민국과 US MAC-V 대표간에 의하여 연서된 ROK MAC-V에 관한 군사실무약정서는 본 약정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본 약정서는 1965년 9월 6일에 서명한다.

한국군 대표
육군소장 이 세 호

미국군 대표
주월 미군사참모장
육군소장 W.B.Rarsen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일명 행정협정 : SOFA) 요약

(1966. 7. 9)

-서명일자 : 1966. 7. 9

-발효일자 : 1967. 2. 9

-서명자

• 한국측 : 대한민국 대표 이동원, 민복기

• 미국측 : 미대표 Dean Rusk, Winthrop G. Brown

-협정근거 :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관련협정 : 한·미 정부간 주한미군의 관할권에 관한 협정(1950. 7.12)대체

-협약목적 : 대체 한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구역제공 관련 사항 규정

-주요내용

• 주둔미군에 대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및 반환, 보안조치, 경비와 유지, 용역제공, 통관 및 관세적용사항 규정

•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기상업무, 교통관제, 과세, 현지조달, 노무지원, 군표, 회계절차, 형사재판권, 청구권 등 명시

-부속문서

•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

• 동 협정 및 합의의사록에 대한 합의 양해사항

• 1966. 7. 9자 교환서한

□ 박정희-존슨 공동성명

(1968. 4.17)

1.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은 미합중국 「린튼.B.존슨」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

16일, 17일 양일간 「호놀룰루」를 방문하고 현하 국제정세와 양국간의 공동 이익과 상호관심사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국사태〉

2. 양국 대통령은 지난 1월에 있었던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를 목표로한 북한의 공격과, 「푸에블로호」의 공해상에서의 납치사건을 포함하여 과거 18개월 간에 공하여 북괴의 증가된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위의 결과로 초래된 대한민국의 안전과 동아의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관하여 상세히 검토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또한 이러한 북괴의 침략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중대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정부의 계획들에 관하여 서로 검토하였다.

3. 양국 대통령은 북괴에 의한 이 이상의 침략행위는 평화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협을 조성할 것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러한 경우, 양국정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할 행동을 즉각적으로 결정할 것에 합의하였다. 「존슨」대통령은 이 조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격퇴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용의와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4. 「존슨」대통령은 한국동란중 대한민국을 지원한 바 있는 16개국에 의하여 1953년 7월 27일 결의된 바 있는 공동선언을 미국정부는 준수할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

5. 양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한·미양국군의 증강을 위하여 취하여지고 있는 특별조치들에 관하여 예의검토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양국군이 한국에서 발생할 모든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사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 합의하였다.

6. 양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은 한국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반의 안전을 위하여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존슨」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지속적인 현대화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이러한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와 대한민국에 의하여 이미 추진되고 있는 효과적인 대간첩 작전계획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미국의 군사원조가 기여할 수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도 검토하였다.

양국대통령은 이러한 사항들을 더욱 토의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5월에 「워싱턴」에서 양국 국방부간의 제1차 각료회담을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다.

7. 박대통령은 북괴의 침투와 파괴기도를 분쇄하고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각종 조치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이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존슨」대통령은 향토방위군 편성을 포함한 박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들에 대하여 찬성하고 이를 지원할 뜻을 천명하였다.

「존슨」대통령은 또한 이러한 박대통령의 조치들은 현명하고도 선견지명이 있는 조치들이라고 말하였다.

8. 「존슨」대통령은 북괴의 대남 치안교란과 민심소란을 위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정체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신속한 경제발전에 경의를 표명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미국과 여러 우방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대한 민간투자는 필요한 것이며, 또한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월 남〉

9. 양국 대통령은 월남공화국이 침략을 막고 월남국민이 외부의 간섭 또는 「테러」분자들의 압력 없이 그들 자신의 장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들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한·미 양국군이 어깨를 나란히 하여 싸우고 있는 월남에 있어서의 사태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하였다.
10. 양국 대통령은 월남정부가 그 군대를 증강하고 증가시키며, 또한 정부의 능률을 개선하기 위해 취해진 정력적인 조치에 주목하였다.
11. 양국 대통령은 명예스럽고 확고한 평화라는 공통목표 달성을 위하여는 계속적인 결의와 군사적 결단성을 수반하는 외교적인 해결을 성의있게 추구

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평화가 달성되기까지 모든 면에서의 투쟁에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노력을 지속한다는 양국정부의 정책을 표명하였다.

12. 「존슨」대통령은 월남공화국과 그 지원을 위해 병력을 파월한 나라와 상의하여 이루어진 북월 폭격지역을 축소시키기 위한 그의 결정으로서 시작된 과거 2주간의 진전상황을 검토하였다. 박대통령이 이 진전상황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13. 「존슨」대통령은 미국과 월맹의 대표들의 조속한 접촉을 위한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는 노력의 결과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존슨」대통령은 박대통령과 미국대표가 사전접촉에 있어 취할 입장을 상호 검토하고 미국정부는 교섭진전 상태 및 연합국측이 각 단계에서 취할 입장에 관해 대한민국이 기타 연합국들과 충분히 협의를 계속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14. 양국 대통령은 가까운 장래에 평화의 본질에 관한 진지한 회담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공동적인 희망을 품고, 연합국의 입장을 계속해서 1966년 「마닐라 코뮤니케」에 기초를 둘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15. 양국 대통령은 또한 1967년 4월에 있었던 7개국 외상회담에서 언명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즉 그것은 “영속적이어야 할 월남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월남국민의 소망과 회원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과, 월남공화국은 분쟁의 해결을 가져오기 위해 기도되는 여하한 협상에도 전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는 것과, 또한 월남공화국을 방어함에 있어 원조를 한 연합국들도 분쟁이 여하한 해결에도 참가해야 한다는 것”들이다.

〈아세아·태평양지역〉

16. 박대통령은 아세아·태평양지역의 안전·평화, 그리고 번영을 지원하기 위한 미합중국의 커다란 역할과 꾸준한 노력을 높이 찬양하였다. 박대통령은 또한 이 지역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미군의 재류는 올바르고 영속적인 평

화에 긴요하다는 그의 소신을 표명하였다.

17. 「존슨」대통령은 아세아 각국 국민 자신들의 요청과 희망에 의거하여 미국은 그 지역에서의 안정과 안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18. 이에 관련하여 양국 대통령은 1966년 10월의 「마닐라」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아세아 및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와 진보에 관한 선언”에서 행한 그들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박대통령은 「존슨」대통령과, 하와이 주지사 그리고 그 시민들에게 이번 방문기간 중 자신에게 베풀어준 따뜻한 영접과 환대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였다.

□ 한국군현대화 및 주한미군감축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공동성명서

(1971. 2. 6)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발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는 한국군 현대화계획과 주한 미군감축에 관한 제반조처에 관하여 만족스러운 회담을 완료하였다.

미합중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군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에 대하여 양국 군사당국의 공동 건의에 입각한 장기적 군사원조계획을 통하여 대한민국정부를 원조할 것에 동의하였다. 대한민국정부는 미국 의회가 전기 현대화계획의 제1차년도분을 위한 추가예산으로 1억 5,000만 달러를 승인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주한미군 2만 병력의 감축과 이에 따른 한국군 및 미군의 재배치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의 역시 상호이해와 긴밀한 협력의 정신에서 종결되었다.

주한 미군병력수준의 감축은 1954년에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처한다는 미합중국 결의에 추

호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성격을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양국정부의
외무 및 국방관계 고위관리가 참석하는 「연례안보협의회」가 개최될 것이다.
이와같은 토의에 있어서는 그러한 위협에 대한 전반적인 방위능력이 평가될
것이다.

1971년 2월 6일

서울

□ 닉슨 독트린 -“평화의 구축”-

(1971. 2.25)

「닉슨」대통령의 대의회 외교보고

〈전 략〉

제1부 「닉슨 독트린」

세계평화구축을 위해서는 강력하면서도 재조정된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신념아래 우리 정부는 출발의 첫발을 내디뎠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그동안 계
속적인 독립성과 힘의 성장이 있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과잉팽창에 대한 반작
용으로 초기상태의 고립주의가 있었다. 이같이 변화한 상황에 비추어 우리는
과거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전시대에 겪었던 충
동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미국역할의 범위와 우방국들의 능력사이에 점점 불균형상태가 짙어졌으며
이러한 사실의 지각에서 「닉슨 독트린」이 탄생했다. 우리가 지난 2년동안 무
엇을 했으며,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이
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닉슨 독트린」은 다음과 같은 현실들을 반영하려고 시도했다.

-미국의 주요 역할은 아직도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제는 다른 국가들이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더욱 큰 책임을 맡을 수 있고 또 맡아야 한다.

-전략적 유대관계의 변화는 새로운 「독트린」을 필요로 한다.

-공산권의 다극화 추세는 색다른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 략〉

1969년 여름 「괘」도에서 또 1969년 11월 3일 「국민에게 보내는 연설」에서 본인이 규정한 새로운 유대관계의 기초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감안한 것이었다.

첫째, 미국은 모든 조약상의 공약을 준수할 것이다. 〈중 략〉

둘째, 만약 핵보유국이나 또는 우리의 안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국가의 자유를 위협할 경우 우리는 방패를 제공할 것이다. 〈중 략〉

셋째, 다른 형태의 침략전쟁이 일어나 조약에 규정된 원조를 요청받았을 때 미국은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 위협을 받은 국가가 자국방위를 위한 병력동원에 주도적 책임을 질 것을 기대한다.

〈중 략〉

제2부 제(諸)국가와 관련된 미국의 국익

22년을 끌어온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사이의 적대관계는 또 다른 미해결의 문제로서 재능과 정력을 갖춘 7억 5천만 인민들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정하는데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요 강대국의 하나가 국제질서에서 테두리 밖에서 적의를 품고 있을 때 국제질서의 온전한 확보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70년대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중국으로 하여금 세계사회와 아시아 각국에 대해 건설적인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중 략〉

심각하고 위험한 중·소분쟁은 중국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다. 이 분쟁은 양국사이의 광대한 국경지대에서 전개되어온 역사적 사건속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최근의 이념투쟁과 힘의 경쟁 그리고 민족적 적대관계는 이 분쟁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 두 강대국의 분쟁은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

된 사회의 구도와는 모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소분쟁이 결코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우리는 어떠한 이익도 찾지 않는다. 그 분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거나 부채질하는 어떠한 행위도 우리는 하지 않겠다. 우리가 어느 한 쪽과 야합하여 다른 한 쪽을 해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에게 그럴 의도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데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동시에 중국이나 소련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과 행동을 강요하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다. 중·소분쟁의 여파로 양국이 서로 혁명의 종주국임을 선양하려는 의도아래 비공산국가에 대해 호전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그와 같은 위험한 대치상태의 결과 양대국이 다른 정책분야에서는 더 이상 분규를 일으키지 않아야겠다는 자극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중국이나 소련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말보다도 행동을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북경과 대화를 가질 용의가 있다. 우리는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과 사상적 개념을 수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합법적인 국가이익을 거부하는 자세를 취하려 하지도 않는다. 북경과의 대화를 위해 우리는 공약을 희생시킬 수 없다. 우리의 자세는 명확한 것이다. 우리는 아시아 우방국들에 대한 조건상의 공약들을 계속 존중할 것이다. 그러한 공약들을 저버리면서 까지 북경과의 명예로운 공약들의 관계를 수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 략〉

〈대한정책〉

「닉슨 독트린」의 실천과정에서 우리는 아시아인들의 신뢰감과 안정감을 해치지 않게 하려면 그 실천을 너무 성급하게 서두를 수 없다. 그들의 신뢰감과 안정감을 유지하고 북돋아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시아의 미국 우방국들이 그들의 안보책임을 스스로 떠맡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지 않은 채 그들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삭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막 이양하기 시작한 책임들을 우리의 우방국가들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이러한 의무는 미국의 지원역할을 감축하는 결정속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시아의 안정기조를 구축하려는 우리의 기본목표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한국은 이 점에서 훌륭한 일례가 된다. 일정수준의 미군병력을 한국에 계속 주둔시키는 것은 한국방위에 대한 미국공약의 한 상징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징은 중대한 위협의 시련과 이에 대처하는 한국 군사력에 대한 시련을 제거해 주었다는 점에서 상징은 본질보다도 더욱 큰 중요성을 띠어 왔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사정은 한국에 2개 사단의 미군을 주둔시키기로 결정했던 1954년에 비해 분명히 크게 달라졌다.

오늘날 한국의 군사력은 대폭 강화됐으며 한국군은 대규모의 세련된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분야에도 역시 큰 변화가 있었다. 1953년 한국의 경제는 전쟁으로 피폐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경제는 활기에 넘치고 지난 4년 동안에는 연평균 10%란 현저한 성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힘의 바탕에서 우리 동맹 한국과 우리는 한국방위를 위한 상징적 필요보다 그 본질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함께 군사협정계획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 양국은 현존하는 한국군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한국은 자체방위를 담당할 경우 더욱 큰 능력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양국정부는 1971년 2월6일 주한미군 2만명을 1971년 6월 30일까지 감축한다는 것과 한국군현대화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발표했다.

현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군은 한국방위임무의 더욱 큰 몫을 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미군 2만 명의 귀국조치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된 것이다. 한국군의 조속한 현대화는 미국의 원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회는 현명하게도 원조제공에 필요한 첫단계의 재원승인에 찬성태도를 보여주었다.

□ 제10차 SCM 공동성명

(1977. 7. 26. 대한민국, 서울)

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1971년 2월 6일자 합의와 1976년 7월 25일 및 26일의 미합중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시에서 개최된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10차 연례안보협의회의가 1977년 7월 25일 및 26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서종철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해롤드 브라운 미국방장관, 노재현 대한민국 합참의장, 조지 에스 브라운 미합참의장 그리고 양국정부의 고위외교 및 국방관리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한국방문중 브라운 국방장관은 박정희 대통령각하와 최규하 국무총리를 예방하였다.

2. 서장관과 브라운장관은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의 전반적인 추이에 관하여 토의하고 동북아세아의 안보정세를 신중히 검토하였다.

양대표단은 서해5도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공동으로 분석하고 이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연합방위능력을 신중히 재검토하였다.

서장관과 브라운장관은 근년에 북괴가 현대화된 무기를 더욱 확보하고 군수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군사력을 증강하여 왔음에 유의하였으며 북괴의 위협이 계속 심각하다는데 동의하였다.

3. 서장관은 계속적인 미국의 군사지원의 중요성과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에 유의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위태세를 설명하였다.

양대표단은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방위력을 만반의 준비태세로 추진·강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결론지었다.

4. 브라운장관은 미지상 전투병력의 철수계획이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의 여하한 변화도 의미하지 않으며, 1954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계속, 전적으로 유효하고, 또한 동 조약에 따라 무력공격시 대한민국의 방위를 돕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는 계속 확고부동하다는 카터대통령의 보장을 전달하였다.

브라운장관은 북괴나 다른 어느 나라도 미국의 이 공약이 계속 강력하다는 데 대하여 아무런 의문도 갖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카터 대통령이 강조한 사실에 유의하였다.

5. 브라운장관은 4~5년간에 걸친 미지상 전투병력의 신중하고도 단계적인 철수가 한국군을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수반한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서장관과 브라운장관은 주한 미지상전투병력의 철수계획과 관련하여 제반 보완조치가 철수에 선행하여, 또는 이와 병행하여 이행될 것이라고 합의하였다.

브라운장관은 미국의 공·해군·정보·군수 및 기타 지원을 대한민국에 계속 제공할 것임을 확약하고, 서장관에게 철수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시행될 것임을 보장하였다.

브라운장관은 또한 한국에 주둔할 미합중국의 전술 공군력은 이 지역의 여타 미육·해·공군과 더불어 미국의 이러한 결의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6. 서장관과 브라운장관은 한국으로부터의 미지상군 철수방법 및 철군을 보완하기 위한 제반조치에 관하여 양국 정부간에 긴밀하고 솔직한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협의 결과를 검토하였다.

브라운장관은 1978년말까지 6,000명이 철수할 것이고 잔여 지상전투병력의 철수는 신중히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미제2사단의 본부와 2개 여단은 철수 최종단계까지 한국에 잔류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브라운장관은 대한민국에 잔류하는 미합중국 공군이 증강될 것이며 미해군이 계속 이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미합중국의 정보·통신 및 기타 지원부대도 대한민국에 잔류할 것이다.

서장관과 브라운장관은 한국의 역량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 및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을 한국정부와 계속협의 하므로써 북괴의 침략에 대한 억제력을 계속 강화시킬 것을 합의하였다.

7. 서장관과 브라운장관은 합동군사 실무위원회의 협의를 포함하여 금번 안보

협의 회의전에 이루어진 협의내용을 재검토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계속 보장하기 위한 보완조치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브라운장관은 미의회와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토록 지원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 (1)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적절한 장비를 대한민국에 무상으로 이양함.
- (2) 대한민국의 방위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대외군사 판매차관을 추가로 제공함.
- (3) 전반적인 한국군 전투증강을 위해 지원을 계속함.

브라운장관은 또한 미합중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 (1) 미합중국 정부의 대외무기 이양정책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이 북괴의 침략을 확실히 저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무기를 우선적으로 제공함.
- (2) 미합중국 정부의 무기이양 정책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자금계획과 관련, 국방과학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경주함.
- (3) 대한민국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침략에도 대처하기 위한 한·미 연합군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군과의 합동군사훈련을 계속하고 확대함.

8. 서장관과 브라운장관은 한·미 양국간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및 양국간의 오랜 협력의 역사와 아울러 긴밀한 유대관계를 더욱 확대할 것을 소망하면서 미지상 전투병력 제1진의 철수완료전에 한국방위의 작전효율화를 위해 한·미 연합사령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서장관과 브라운장관은 이미 한·미 양측 참모진에 의해 시작된 연합사령부의 구성에 관한 계획과 연구는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양대표단은 연합사령부 설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 공동공약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였다.

9. 서장관과 브라운장관은 관계 당사국들로 하여금 휴전체제를 유지토록 마련한 유일한 현행 법적 조치인 휴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없는 한 UN군사령부는 평화유지기구로서 계속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10. 서장관과 브라운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력에 자신을 표명하면서 이러한 계획과 보완조치의 성공적인 완료는 미합중국의 공군·해군·군수 및 기타 필요한 지원과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과 아울러, 북괴에 대하여 어떠한 무력공격도 성공할 수 없으며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협력만이 한국문제에 대한 유일, 가능한 방도임을 분명히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 점에 있어 양대표단은 대한민국이 제의한 불가침협정 제의를 포함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취한 중요한 정책적 조치에 유의하였다.

양대표단은 또한 북괴가 1973년에 중단한 남북대화 재개에 응함으로써 한국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다.

미국대표단은 한반도에 관한 4자회담 제의에 유의하고, 미국은 한국의 참여없이 북괴와 한반도의 장래에 관하여 어떠한 교섭도 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하였다.

11. 양대표단은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의 중요성과 성과에 유의하면서 차기 연례안보협의회의를 미합중국 정부 주최로 1978년에 미합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2. 브라운장관은 대한민국 당국이 동 장관과 미합중국 대표단에게 베푼 호의 및 환대와 이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한 훌륭한 제반 준비에 대하여 서장관에게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 제11차 SCM 공동성명

(1978. 7. 27. 미합중국, 샌디에고)

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합의와 1977년 7월 25일 및 26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제1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가 1978년 7월 26일 및 27일에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주 썬디에고시에서 개최되었다.

노재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해롤드 브라운 미국방장관, 김종환 대한민국 합참의장, 데이빗 씨·존즈 미합참의장 그리고 양국정부의 외무 및 국방 고위관리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노장관과 그 일행은 미국방장관의 초청으로 미합중국내 군사기지와 방위산업 시설등을 방문하여 유익하고 건설적인 관찰을 하였다.

2. 노장관과 브라운장관은 특히 한·미 양국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중점을 두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정세에 관하여 광범한 의견교환을 하였다.

양대표단은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이 위협에 대처할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신중히 검토하였다.

노장관과 브라운장관은 북괴가 현대화된 무기를 더욱 증강하고 군수산업을 확대시킴으로써 공격적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북괴의 전반적인 군사적 위협이 계속 심각하다는데 합의하였다.

3. 노장관과 브라운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태세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충분한 수준의 방위력을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양측 대표단은 대한민국의 방위능력의 성장은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의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뿐 아니라 동북아 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적극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유의하면서 만족을 표하였다.

4. 브라운장관은 카터대통령의 1978년 4월 21일자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의 보장과 미지상군 전투병력의 철수계획 일부 수정에 관한 특별설명에 대하여 다시 설명하면서, 미지상군 전투병력의 철수가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이나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기본방위전략에 어떠한 변화도 의미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브라운장관은 노장관에게 1954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계속 전적으로

로 유효하며, 동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시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대한민국에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는 계속 확고하고 강력하다고 보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운장관은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하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고 재확인하였다.

브라운장관은 북괴나 또는 다른 어떤 나라도 이와같은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이 계속 강력하다는데 대하여 추호도 의심이나 오해를 해서는 아니될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5. 노장관과 브라운장관은 미지상 전투병력의 철수는 동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존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합의하였다.

브라운장관은 이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태변화가 있을 경우,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이 변화를 분석, 평가하고 사태의 진전이 그렇게 하기를 요구할 경우에는 미국의 철군계획을 조정할 것이라고 보장하였으며, 노장관은 이를 환영하였다.

6. 노장관과 브라운장관은 한국으로부터의 미지상 전투병력 제1차 철수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한·미 양국정부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와같은 협의들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라고 합의하였다.

또한 노장관은 1978년말까지 1단계로 한국으로부터 3,400명이 철수될 것임을 확인하고 동 철수계획과 관련하여 보완조치는 철군에 선행하여 또는 병행하여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운장관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공군의 증강과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창설은 이 지역에서의 여타 미군의 주둔과 더불어 한국을 방어하고 침략을 억제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결의의 표시라고 언명하였다.

또한 동 장관은 미해군이 한반도 주변에 계속 전개 배치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7. 브라운장관은 미의회와의 협의와 동의하에 한국의 방위력 증강을 위해 특

히 한국군 전력증강계획을 위해 미국이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재천명하였다.

브라운장관은 미국은 또한 대한민국이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한국이 필요한 전쟁비축물자를 보강하겠다고 약속하고, 노장관은 한국이 전쟁비축물자의 충분한 사전비축을 확실히 하도록 자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8. 노장관과 브라운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 전문가의 상호 방문 등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방위산업 연구개발 분야에서 그간 양국 정부간에 긴밀한 협력이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계속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및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위한 양국 협력관계의 증진을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데 합의하였다.
9. 노장관과 브라운장관은 팀 스피리트를 비롯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한·미 집단방위체제의 효율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고 결론지었다. 양장관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훈련을 매년 계속할 것을 합의하였다.
10. 노장관과 브라운장관은 한국방위의 작전효율의 증진을 위하여 1978년내에 설치된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한·미군사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신념을 표명하면서, 양국정부는 동 기구의 운용을 한·미간에 수시로 공동 검토함으로써 연합군사령부의 효율성을 계속 증대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 대표단은 양국정부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설치와 동시에 군사위원회의 효율적인 협력과 조정을 통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11. 노장관과 브라운장관은 관계 당사국들로 하여금 휴전체제를 유지하도록 마련한 유일한 현행 법적 조치인 휴전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없는 한 UN군사령부는 평화유지기구로서 계속 그 기능을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12. 노장관과 브라운장관은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한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공격도 성공할 수 없으며 한국문제의 해결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도

록 모든 관계 당사국의 상호협력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양대표단은 대한민국이 제의한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을 포함하여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취한 주요한 정책적 조치에 유의하였다. 또한 양측 대표단은 북괴가 1973년에 중단시킨 남북대화 재개에 응함으로써, 한국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성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운장관은 미국정부를 대신하여 남·북한간의 경제협외기구 설치를 제안한 박대통령각하의 1978년 6월 23일자 제안을 환영하면서 이와 같은 건설적인 제안에 대하여 북괴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브라운장관은 미국은 한국의 참여없이 북괴와 한반도의 장래에 관하여 어떠한 교섭도 하지 않을 것을 재확인하였다.

13. 양측 대표단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중요성과 성과에 유의하면서 차기 연례안보협의회의를 대한민국정부 주최로 197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4. 노장관은 미합중국정부가 동 장관과 대한민국 대표단에게 베푼 호의 및 환대와 이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게 한 훌륭한 제반 준비에 대하여 브라운장관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였다.

□ 한·미 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

〈한국측 제안각서〉

1978년 10월 17일, 서울

각하 :

본인은 1978년 7월 26일 및 27일에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제11

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미합중국 국방장관간에 합의된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에 관한 권한 위임사항」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권한위임사항이 1953년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및 1954년에 서명되고 1955년과 1962년에 각각 개정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합의의사록」 중 한국측 정책사항 제2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상당하게 이루어진 약정이며 또한 동 약정은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미군 4성 장군으로서 국제연합군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임하는 동안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함을 통보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가 귀 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도 상기와 같이 이해함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 장관

〈미국측 회답각서〉

1978년 10월 17일, 서울

각하 :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8년 10월 17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미국정부를 대표하여 미합중국 정부도 상기와 같이 이해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대사

Exchange of Not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 Korean Proposing Note 〉

Seoul, October 17, 1978

Excellency :

I have the honour to refer to the Terms of Reference for the Military Committee and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agreed upon between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ecretary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t the 11th ROK/US Annual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held in San Diego, California, on 26—27 July 1978.

I have further the honour to inform that it is the understanding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said Terms of Reference is an arrangement duly mad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gned in 1953 and paragraph 2 of the Korean undertakings as set forth in the Agreed Minutes between the Govern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lating to Continued Cooperation in Economic and Military Matters signed in 1954 as amended in 1955 and 1962 respectively, and that the said arrangement will remain in force while the Commander—in—Chief,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is a US four—star general who also serves as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and Commander, United States Forces Korea.

I should be grateful if Your Excellency would confirm on behalf of your Government that the aforementioned is also the understanding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 Excellency, the renewed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 U. S. Note in Reply 〉

Seoul, October 17, 1978

Excellency:

I have the honour to acknowledge the receipt of Your Excellency's Note of 17 October 1978, which reads as follows.

“(Korean proposing Note)”

I have further the honour to confirm on behalf of my Government that the foregoing is also the understanding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 Excellency, the renewed assurances of my highest consideration.

Ambassador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주한미지상군 철수에 관한 보고 ; 미상원외교위원회에 제출된 동아시아 태평양문제 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서

보고서한(내용 생략)

미상원외교위원회

워싱턴, D.C.

1979. 6. 22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소위원회 위원장

존 글렌(John Glenn)

〈 요약과 결론 〉

본인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종전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이 재평가에서 본인은 미군철수는 임의적 시간표에 의하지 않고 남북한 군사력 균형에 근거하

여 용의주도하게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결론짓는다. 이 점에 있어서 최근 군사정보는 북한의 상황을 재평가하고 북한의 군사력이 종전에 믿었던 것보다 상당히 강력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정보에 근거하여 본인은 미군철수를 계속 하는데 따르는 위험부담은 우리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며 한국에 제2보병사단을 주둔시켜야 된다고 판단한다. 참으로, 미군을 계속 철수한다는 사실은 정확히 서울, 동경, 방콕, 자카르타, 캔버라 및 기타 우방국가의 수도에 대하여 걱정을 끼쳐온 미국의 의지와 힘에 대한 의문들을 자아내게 한다.

장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지상군의 철수는 바람직하다. 미전투부대가 영원히 세계각지에 주둔할 수는 없다. 다행히도 다가오는 10년내에 북한의 우세는 기울어질 것이다. 또한 한국은 보다 강력한 경제력과 인구기반을 가지고 멀지 않은 장래에 자주국방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철수의 시기와 집행은 동남아시아 관점에서 한반도의 군사균형과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것이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장완화의 전망은 중공과 소련 당국자가 북한에 대하여 정책 변경을 촉구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전망은 밝지 않으나, 협상분위기 조성 노력은 필히 계속되어야 한다. 희망하건대, 장래에 있어서 남북한은 DMZ 연변 긴장을 완화하고 분단된 이 나라의 최저 수준의 인도적 접촉을 시작하려는 심각한 토의를 좀더 순하게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다가올 10년내에 한국의 우세가 이루어짐에 따라 북한은 협상과 한국 민족주의를 호소하여 이에 대응하게 될지도 모른다. 중대한 변수는 중·소 동맹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노선변경(Disengagement)과 기타 신뢰조성조치를 수락하겠끔 압력을 가할 것인가 가하지 않을 것인가이다. 북한은 다가올 10년내에 북한이 국내경제문제가 북한으로 하여금 방대한 군사력증강을 억제케하고 다른 공산동맹국가로부터 많은 자원을 추구할 필요를 자아내게 됨에 따라 중공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기술적 자원이 제한되어 있음으로 소련은 현저한 우위를 향유할 것이다.

미국, 중공과 소련이 협력하면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불신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 시기에 4강 또는 5강국 회의의 가능성과 한반도

에 있어서의 평화적 긴장완화의 진척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적 협상노력과 시간의 경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랄 뿐이다.

〈건의안〉

1. 철군중지

최근 정보평가로 북한의 한국에 대한 확실한 군사적 우위가 부각되었는데 이 사실은 미군철수를 무기한 중지해야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철군의 재개는 북한의 행동에 직접 연결시켜야 하며, 이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국군 현대화 계획의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현상의 수락을 나타내는 것이다.

2. 미군공약의 신빙성

한국에 대한 공약의 신빙성을 강조하고 그릇된 인식을 배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계속 실시하며
- 예정에 맞추어 효율적인 방법으로 안보지원의 계속을 보장하며
-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과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는 미국의 결의를 강조하는 단호한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3. 지역정책

미국은 정기적으로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한반도 통일에 관한 3각회의(한국, 북한, 미국)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계속 재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미국은 중공과 소련과의 쌍무관계가 한반도에 관하여 이들 나라가 취하는 행동에 따라 개선될 수도 있고 손상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4. 안보원조

미국은 일방적으로 안보원조삭감을 삼가하여야 한다. 1980회계년도 예산중에서 5천만불을 임의로 삭감하고도 한국관리에게는 충분히 그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관리의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많은 의혹을 사게 했다.

종전의 글렌·험프리(Glenn-Humphrey)보고서(1978. 1)의 권고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은 F-16 항공기를 한국에 판매하는데 대해 의심스럽게 생각한다. 이유는 이것이 소련의 북한에 대한 현대무기 공급을 정당화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F-5G 항공기의 판매 또는 합동제작으로 고도로 정밀한 공격용 항공기를 제공하지 않고도 한국공군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F-5G기는 F-16기와 비교하여 항속거리도 적재량도 경감되어 있다. 더욱이 1970년에 제작되어 약간의 구조변경을 가하여 여러나라에 판매한 F-5G기의 판매실적으로 미루어보아 미국이 지역적 군비경쟁을 둔화시키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중략>

〈경제적 요인〉

한반도에서의 철군은 미국의 국고절약에는 도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마 궁극적으로는 미국납세자에게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될 것이다. 철수한 군부대를 해체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경제적 이득도 없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은 없다. 그대신 한국에서 철수한 제2보병사단은 미국내에 영구기지를 둔 기계화 보병사단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증언에서 국방성은 동 철수가 다음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약 15억 내지 24억불의 추가지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철수계획 시행에 대한 추정경비

계 획 내 용	단위 : 100만불
1. 2사단 장비의 선별이동	5~10
2. 2사단 장비의 한국이관	800
3. 2사단 재배치에 필요한 새로운 군사시설	300~800
4. 2사단의 기계화	380~760
계	1,485~2,370

<중략>

〈주한 미지상군철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

〈요약문〉

한국주둔 미지상군 제2보병사단이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을 때 카터행정부는 한반도에서의 군사균형이 유지되려면 한국군이 현대화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미심계원은 제2보병사단의 철수로 인한 능력상실을 메꾸고 한국군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일련의 보완조치에 동의한다.

- 철수할 것으로 예정된 미지상군이 사용해 온 장비의 일부 품목을 한국군에 이양한다.
- 이양되고 있는 이들 방위품목들에 대한 한국에서의 기동훈련과 기술훈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한국군 발전계획에 따라 군사무기를 획득하는데 한국을 원조하기 위해서 대외 군사판매차관을 한국에 제공한다.
- 한국의 방위산업을 지원한다.
- 한·미 합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시킨다.
- 한국에 12개의 전투비행기를 추가 주둔시킴으로써 미공군력을 증강시킨다.

이들 제조치는 제2사단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투능력을 한국군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고, 한국의 전면적인 전투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며, 미국의 강력한 대 한국방위공약을 과시함으로써 주한미군 제2사단의 철수로 인한 억지력을 부분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다.

한국이 군발전계획을 완성시키고 한국군에 장비를 보충시켜 줄 때 한국은 그의 방위태세가 개선될 것이다. 이양될 장비는 주로 철수될 미지상군 전투부대의 기동력 및 화력 상실을 대체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이 장비가 미지상군의 군사적 공헌을 대체할 범위는 다음 수년 동안에 한국이 받을 모든 장비를 한국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동화하여 사용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미당국은 철수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약을 하고 또한 성실성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현 주한미군의 군사능력으로 한국군의 군사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데는 잠재적인 제문제점이 있다.

적절한 병참지원과 보완장비 이양안에 필요한 훈련된 인원을 제공하는데 드는 한국측 추가부담은 긴급한 관심을 갖게 한다. 철수계획의 일정은 중요군비 이양품목에서 한국이 필요로 하는 것과 미국이 주겠다고 하는 것의 상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융통성있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심계원은 믿고 있다. 훈련연습 확대와 방위산업 지원과 합동사령부 설치 등과 같은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역지력에 공헌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은 심계원은 미지상군의 전쟁역지 역할을 보상하는 범위에 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한국에 대한 방위개념은 적대행위가 있을 경우 미국의 공군, 해군 및 병참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다. 계획된 미지상전투병력 철수는 병참계획 및 지원을 개선하려는 미국과 한국 양국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다.

한국군은 적절한 전쟁비축물자가 부족하고 이들 부족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성은 전쟁비축물자 증대와 전시보급품 제공을 위한 계획을 포함해서 한국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제반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관리들은 그들이 가까운 장래에 동맹국을 위해 전쟁비축물자를 늘리기 위한 미국의 능력은 예산상의 또한 입법상의 구속에서 계속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이 그 방위계획상 전쟁비축물자조달을 위해 증대된 자금을 제공하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전쟁비축물자에 드는 총액은 기타 고도의 중요 무기 구득에 드는 필요액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심계원은 미국이 한국군을 위해 더 많은 전쟁비축물자를 한국에 제공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전시재보급계획이 한국 등에 대한 재보급을 위해 미국의 육·해·공군에 의해 개발되어 있다. 이전의 심계원 보고서는 분쟁시 미국이 한국에 병참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한·미 계획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비록 심계원이 현 재보급계

획을 평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군사령관들은 한국에 병참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심계원에 말하였다.

합동군사훈련기간 동안 미군의 활동만이 방송되었으며, 그럼으로써 한국군의 취약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심계원은 앞으로의 군사연습에서 미국이 한국에 합동군사활동의 전술작전과 공참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참여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해보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제10차 안보협의회중에 기술이양을 지원하고 한국의 방위산업능력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행해진 미국공약의 이행은 여러가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자아내게 하였다. 그러나 한국정부내 어떤 관리들은 한국 자신이 정밀한 무기 생산능력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관리들은 한국이 현대경영기술과 생산기술 및 품질관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지 못하여 무기생산을 지연시켰고 비용을 증대시켰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애로사항은 무기구득을 위한 3군간의 협조결여로 더욱 가중되고 있다.

방위관리에 관련된 많은 문제점들은 군사원조계획에 의거하여 사업계획, 구득 및 병참계획과 같은 기능이 한국인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미국인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무상군사원조에서 방위물자를 현금과 차관으로 구입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결국 미국관리들은 한국인이 효과적인 관리체계나 절차를 확립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한국인의 능력이 많이 개선은 되었으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심계원은 이러한 개선조치를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기는데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나 심계원은 미국관리들이 이들 문제점을 알고 한국관리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미지상군 철수와 한국의 자주국방력을 증강시켜야 할 필요성은 지속적인 자문과 훈련상의 봉사를 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961년의 대외원조법은 미국의 대한국군사원조단의 적절한 역할과 기능을 발휘시키기 위해서 개정되어야 한다.

심계원은 공식적인 평가서를 입수하지 못했으나 국무성과 국방성의 중요관리들과 이 보고서를 가지고 토의한 바 있다. 이들 관리들은 대체로 이 보고서와 이 보고서의 결론에 동의하였으며 그들의 논평은 이 보고서의 적절한 부분에 삽입되었다.

□ 주한미군철수에 관한 정보재평가의 영향에 대한 하원군사위원회 조사소위원회 보고서

〈상신서〉

미하원군사위원회
조사소위원회
워싱턴, D.C.
1979년 9월 7일

멜빈 프라이스(Melvin Price)위원장 귀하
하원 군사위원회
워싱턴, D.C.

친애하는 위원장 : “주한미군철수에 관한 정보재평가의 영향”이라는 제하의 유첨 보고서는 군사위원회 조사소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1979년 6월 21일과 7월 17일에 조사소위원회에 의해 개최된 청문회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인쇄에 회부하도록 하루속히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사무엘 S. 스트래튼(Samuel S. Stratton)

인쇄를 승인함.

위원장, 멜빈 프라이스
1979년 9월 14일

〈주한미군철수에 관한 정보재평가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

〈서 언〉

1979년 1월 몇몇 신문들의 보도에 의하면 미정보기관에 의해 실시된 한 연 구검토는 북한의 군사력이 이전에 평가된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결론을 내 렸다. 「뉴욕 타임즈」는 북한군이 “이전에 카터행정부에 의해 추산된 28개 사 단이 아닌 41개 사단 상당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아미 타임 즈」(Army Times)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새로운 추산에 의하면 북한이 약 600개의 전술대대를 갖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의 배 이상이나 된다. 새로운 북한지상군 추산은, 북한이 비무장지대 근 처에 주둔한 한국군 부대를 구속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게다가 다른 방향으로 부터 서울에 대한 주요공격을 감행하기에 충분한 병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는 “군정보기관과 중앙정보국의 수정된 추산에 의 하면 북한이 56만~60만의 병력을 갖고 있어 이전의 추산에 비하면 약 1/4이 더 크다.”는 것이었다.

「아미 타임즈」지의 기사는 감이 잘 안잡히는 새로운 정보가 “의회의 주요 위원회의 비밀회의에서 제시되었다.”고 한다. 전체위원회와 이 소위원회가 북 한의 군사력문제에 대해 2년간이나 개입하였으나 이 새로운 정보를 소위원회 에 제기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그 결과로 스트래튼 위원장과 테네시주 출신의 공화당소속위원과 소위소속 야당의 고위 의원들이 새로운 추산에 관한 비공개 브리핑을 요구하여 그것을 청취하였다. 그동안에 그들은 새로운 결과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완수되지 못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러므로 대통령에게 보 낸 1979년 1월 3일자 서한에서 그들은 소위가 극동에 있어서의 미국의 안보태 세에 관한 새로운 정보의 충분한 의의와 장기적 함축성을 평가할 수 있을 때 까지 주한미군의 그 이상의 철수는 저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이 권고는 대통령의 국가안보담당보좌관에게 전달되었으나 애매한 대답을 들었을 뿐이 다. 그러나 2월 9일에 대통령은 언론계 대표들과의 회합에서 주한미군의 추가

철수는 새로운 평가의 영향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중단되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언명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아니하여 한참 후에야 비로소 온 국민이 철군계획의 이러한 수정을 알게 되었다.

군당국이 새로운 정보결과에 대한 완전한 평가가 완료되었다는 통고를 소위에 한 직후인 6월 21일에 청문회가 시작되어 주한 미지상군철수계획에 관한 정보평가의 영향을 결정하는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또한 합동참모본부가 그러한 정보에 의거하여 어떠한 권고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되었다.

소위의 청문회가 끝난지 3일후이며 그가 한국을 다녀온지 얼마 안된 7월 20일에 대통령은 전투부대의 철수는 중지될 것이며, 철수의 시기와 속도는 1980년에 철수될 일부 지원부대를 예외로 하고 1981년에 재검토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그 청문회의 결과로 소위는 다음과 같은 평결 및 결론을 내리고 또한 권고를 하였다.

〈평결 및 결론〉

1. 1978년말과 1979년초에 걸쳐 행해진 정보자료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에 의하면 북한 군사력이 크게 증강되었다.
2. 그 재검토의 결과 남북한의 군사력대비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1977		1979	
	북한	한국	북한	한국
병력	0.9	1	1.1	1
탱크	1.5	1	2.1	1
포	1.9	1	2.3	1
장갑차	1.9	1	2.3	1

3. 정보기관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a) 북한은 한국보다도 강력하다. (b) 북한의 행위는 중공이나 소련에 의해 중지되지 아니한다. (c) 북한은

당면 추세가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 틀림없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접어들고 있는 시기는 특히 위험하다. (d) 북한의 방위력 산정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는 미국의 의향이다.

4. 합동참모본부는 1979년 4월에 주한 미지상군의 철수를 현시점에서 더이상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5. 합동참모본부는 남북한간의 군사력균형을 1981년에 재평가하여 그 이상의 주한 미군철수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였다.

6. 1979년 7월 20일에 대통령은, 1980년에 철수될 일부 지원부대를 제외하고 전투부대의 철수는 그 시기와 속도에 대한 재검토가 1981년에 실시될 때까지 중단된다고 천명하였다.

7. 한국의 통일은 김일성의 정치적 편향성과 억지스런 자세 때문에 실현될 것 같지 않다.

8. 상세한 정보평결, 합동참모본부의 잇따른 제 건의, 대통령의 조치 등, 이 모든 것은 1977~1978년간에 싱글라브(Singlaub) 장군을 비롯한 기타 증인들이 소위에 제시한 증언, 즉 한국측에게 불리한 군사적 균형이,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보다는 더욱 심각하여 미지상군이 전면철수하면 정말로 위험하게 될 것이라는 증언을 지지해 준 것이다.

〈 권 고 〉

소위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한다 :

1. 이 이상의 주한미군 철수는 무기한 연기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지상군 철수는, (a) 잔류미군 및 한국군의 전투능력이 그러한 철수에 의해 감소되지 아니한다는 주한미군사령관의 확인과, (b) ①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과 ② 한국전쟁의 정치적 해결을 달성하려는 행정부의 정확한 조치 등에 관한 대통령의 대의회 보고서에 의거해야 한다.

2. 대통령은 한국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성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북한간의 협상을 주관하도록 국무장관에게 지시해야 한다.

3. 한국지상군의 군사력은 미지상군철수가 연기되는 기간 중 추가적인 훈련과 새로운 무기체계의 구매 등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4.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그 군사력의 개선과 현대화를 위해 할당되는 자원을 증대시키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5. 미국은 한국의 군 현대화계획을 위해 약속한대로 매년 2억 7,500만불 상당의 대외군사판매차관을 제공해야 한다.

6. 대통령은 재래식무기이양정책의 제한조치를 한국에는 적용시키지 않아야 한다.

〈후략〉

□ 제24차 SCM 공동성명

(1992. 10. 8, 미국, 워싱턴)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24차 안보협의회의(SCM)가 1992. 10. 7~8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최세창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리차드 체니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미 양국의 고위 국방·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SCM에 앞서 1992. 10. 7에는 제14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가 이필섭 대한민국 합참의장과 콜린 포웰 미합중국 합참의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2. 양국 대표단은 제23차 SCM 이후의 국제정세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을 심도있게 평가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동북아시아 지역과 미국의 안보에 중추적인 요소임을 재천명하였다. 양측은 범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에는 북한의 핵개발을 포함한 불안정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체니장관은 미국은 지역내 미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시아 안보와 관련된 지속적 역할과 동지역내 미군의 장기 주둔을 재천명하였다.

3. 양측은 지난 23차 SCM 이후, 한반도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되는 몇가지 긍정적인 사건들이 발생했음에 유의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체니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기반을 제공하는 뜻에서 이러한 합의들이 즉각적이고도 완전하게 이해되어야 한다는데 대한 미국정부의 지지를 재천명하였다.

4. 양국 대표단은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다짐하였다. 체니장관은 노태우 대통령이 1991. 12. 18 「한반도 핵부재 선언」을 상기하고, 미국은 노대통령의 동 선언을 환영하며, 미국의 정책 또한 동 선언과 기초를 같이하고 있고, 남북합의에 의한 상호 핵사찰이 이행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강조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동 협정을 이행하며 IAEA 핵사찰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단계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대표단은 최근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구실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명시된 남북 상호사찰을 계속 지연·회피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최장관과 체니장관은 북한이 강제사찰을 포함한 신뢰성있고 효과적인 남북 상호사찰에 동의하고 핵무기개발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핵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공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또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지속적인 공세전력 증강을 불안정 요소로 평가하고, 북한 당국에게 이러한 활동을 중지함으로써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 당국이 이러한 미사일수출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6. 체니장관은 대한민국이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미국은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확고한 대한안보공약을 재천명하였다. 체니장관은 적절한 연합억제력 보

장 차원에서 한·미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계속 제공될 것임을 재확약하였다.

7. 최장관과 체니장관은 미국의 동아·태전략구상(EASI) 1단계('90~'92)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된데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동 기간중에 주한미군 감축, 정전위 수석대표에 한국장성 임명, CFA 해체 및 최근에 발표된 연합사 지상구성군 사령관에 한국장성 임명 등에 유의하면서, 향후 주한미군 감축과 현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의 역할 조정 등 한·미간 군사현안은 “한·미 연합 억제력 유지”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단계적·신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8. 양측은 주한미군에 대하여 “한·미 양국 정부와 국민이 대북억제력을 제공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다고 믿는 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주한미군의 추가감축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이 철저히 규명될 때까지 계속 유보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대표단은 지난해 SCM에서 논의되었던 주한미군의 현대화와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증강 노력이 만족스럽게 추진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체니장관은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노력이 계속될 것임을 재천명하였으며, 최장관은 체니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연합억제력 증강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9. 양국 대표단은 미국의 한국방위 역할이 지원적 역할로 순조롭게 전환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늦어도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국에 전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최장관과 체니장관은 한·미 군사위원회로 하여금 시행지침과 구체적인 전환시기를 1993년 제25차 SCM에 건의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양측은 한·미 연합훈련은 한반도 연합전비태세 및 대북억제력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남북관계 특히 상호핵사찰 등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93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조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0. 최장관과 체니장관은 한국의 연합방위를 위한 양국간 방위비분담 관련사

항을 검토하고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양측은 한국정부가 '93년도에 2.2 억불 상당의 지원을 주한미군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체니장관은 그동안 주한미군의 유지를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과 한국정부가 '95년까지 주한미군 현 지발생비용(WBC)의 1/3수준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해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최장관과 체니장관은 한·미간 방위비분담 계획은 앞으로 계속 유지·강화되어야 할 한·미간 긴밀한 협력관계의 또 하나의 증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11. 최장관과 체니장관은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요 수단인 남북대화가 계속 진전되어 긴장완화와 가시적인 신뢰구축 조치들을 통해서 평화통일로 이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아·태 지역의 안정과 한·미 양국의 공동 이익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는 공동인식하에, 한·미 안보협력도 남북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지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1953년 군사정전협정은 남북한 직접협상에 의해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존속되어야 하며, 군비통제도 남북한 직접대화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12. 양측은 1990년대 기간중 한·미 쌍무관계는 안보동맹에서 점차 한·미 양국 및 한반도·지역·세계 차원에서의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보다 포괄적인 정치·경제·안보 동반자 관계로 진전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최장관과 체니장관은 21세기를 지향하여 한·미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인식하에 한·미 국방정책검토위원회로 하여금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장기 발전방향 설정 및 관련사항의 정립을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994년 제26차 SCM에 보고하도록 합의하였다.

13. 양국 대표단은 한·미간 방산·군수·기술 협력이 양국의 국가이익에 최대한 기여하는 방향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는데 합의하고, 한·미 방산/기술 협력소위원회 등 기존의 협력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재다짐하였다. 양측은 지난 4월 미육군 기술협력단의 한국방문과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팀의 답방 계획을 양국간 방위협력 촉진 활동의 주요 사례

로 평가하였다.

양국 대표단은 1989년 7월에 체결된 「재래식 무기의 특허료지불에 관한 양해각서」의 수정본은 조기에 서명하고, 상호조달방산물자에 대한 「품질보증협정」은 방산·기술협력위원회의 주관하에 1992년말까지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1991년 제23차 SCM시 서명된 전시지원(WHNS) 협정과 관련해서, 동 협정이 한국국회 비준시 협정집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약정합의서 초안에 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시하였다.

14. 최장관과 체니장관은 금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는 특히 급변하는 국제 정세하에서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아·태지역내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장기 안보협력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데 합의하고, 차기 안보협의회의는 1993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5. 최장관은 금번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배려를 해준 미국측 대표단에게 사의를 표명하였다.

□ 제25차 SCM 공동성명

(1993. 11. 4, 한국, 서울)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25차 안보협의회의(SCM)가 1993. 11. 3~4간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권영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레스 애스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미 양국의 고위 국방·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SCM에 앞서 1993. 11. 3에는 제15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가 이양호 대한민국 합참의장과 존 샬리캐쉬빌리 미합중국 합참의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애스핀 미 국방부장관은 서울 체류기간중 김영삼 대통령과 한승주 외무부장관을 예방하고 한·미 공동 안보관심사에 대하여 요담하였다.

2. 양국 대표단은 제24차 SCM이후 세계정세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 세

계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한·미 상호협력, 그리고 전반적인 한반도 안보환경을 재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는 아·태지역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 미국의 안보에도 중추적인 요소임을 재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재래식 공세전력과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증강은 물론 핵개발 계획의 추진 여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수용을 지금까지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3. 권장관과 애스핀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및 아·태지역의 안정과 세계 핵비확산체제의 유지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북한에게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안전조치협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명시된 남북 상호사찰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양국 장관은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억제력과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또한 남북한 군비통제 계획의 실현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전협정체제(1953)는 남북 직접협상에 의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존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4. 애스핀장관은 대한민국이 외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미국은 1954년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거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재천명하였다. 또한 애스핀장관은 미국이 한국에게 핵우산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애스핀장관은 최근 미국이 「신국방정책」상의 「2개전장 동시승리 전략」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보위협을 고려하였으며, 한반도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충분한 전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미군의 군사력 구조를 신중하게 조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차제에, 권장관과 애스핀장관은 한·미 군사위원회에 한반도와 관련해서 2개전장 동시승리 전략의 시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다.

5. 양측은 향후 주한미군 구조재편과 한국방위에 대한 미국의 역할변경 등 모든 군사현안은 한·미 연합억제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양국간 긴밀 협의하에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권장관과 애스핀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쟁억제와 동북아 지역 안정 유지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은 계속 중요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의 핵개발 계획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철저히 해소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2단계 감축을 유보하기로 한 제24차 SCM 합의사항을 재확인 하였다.

애스핀장관은 한국 국민이 원하는 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클린턴 대통령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전투력을 현대화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하였다. 양측은 또한 전투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기 체계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6. 양국 대표단은 한국이 한국방위에 대하여 점차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방위역할이 지원적 역할로 순조롭게 전환되고 있다는 데 만족을 표명하였다.

권장관과 애스핀장관은 한·미 군사위원회로부터 평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재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부여된 지정된 한국군 부대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1994. 12. 1일부로 한국 합참의장에게 이양하기로 합의 하였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 군사위원회에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도록 지시 하였다. 양측은 또한 한·미 연합전비태세 유지 차원에서 한·미 연합연습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7. 양국 대표단은 한반도의 공동방위에 따른 방위비분담 문제를 협의하고 한국정부가 '95년도까지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WBC)의 1/3수준까지 부담하기로 한 제23차 SCM 합의사항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국정부가 1994년도에 2.6억불을 주한미군에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애스핀장관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의 유지를 위하여 지원해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8. 양국 대표단은 장기안목적 차원에서 한·미간 군수, 방산, 기술협력의 호혜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방산기술협력위원회, 안보협력위원회, 군수협력위원회 및 정책검토위원회 등 SCM의 분과위원회들은 지난 8월 「상호조달 방산물자에 대한 품질보증 협정」, 「재래식 무기의 특허료 지불에 관한 양해각서 개정본」 및 「전시지원 연합운영위원회 강령」을 체결하는 등 생산

적인 협의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돈독한 한·미 군사협력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9. 장관관과 애스핀장관은 한반도내 대결구조를 종식시키는 것이야말로 향후 한·미 양국의 장기적 공동이익 수호는 물론 아·태지역 전체의 안정과 평화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미 한보협력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대표단은 21세기를 지향한 한·미 안보관계는 포괄적이고 상호보완적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역내 다자간 안보대화는 한·미 쌍무동맹관계를 보완해주고 클린턴 대통령이 제시한 신태평양 공동체의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이해를 같이하였다. 차제에, 양국 장관은 제24차 SCM 합의하에 추진중인 「21세기를 지향한 한·미 안보협력방향 공동연구」에 대한 진척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제26차 SCM시 최종 연구결과가 건의될 것임을 확인하면서 동 연구의 중요성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였다.

10. 양국 대표단은 금번회의를 통하여 한·미 양국의 신행정부 사이에 전통적 우호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한편,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안보환경하에서의 새로운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켰다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장관관과 애스핀장관은 차기 SCM을 양국 국방장관 주재하에 1994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1. 애스핀 장관은 금번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배려를 해준 한국 국방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하였다.

□ 제26차 SCM 공동성명

(1994. 10. 7, 미국, 워싱턴)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26차 안보협의회의(SCM)가 1994. 10. 6~7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이병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미 양국의 고위 국방·

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1994. 10. 6에는 제16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가 이양호 대한민국 합참의장과 존 샬리캐쉬빌리 미합중국 합참의장 주제로 개최되었다.

2. 이장관과 페리장관은 최근 국제 정세와 한반도 내외의 전반적인 전략환경을 재평가하고, 한반도의 안보가 아세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필수적인 요건이며 세계 평화 유지와 미국의 안보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과 재래식 공세 전력의 증강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3.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이장관과 페리장관은 어떠한 사태의 발생도 억제하고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밀한 공조체제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페리장관은 대한민국이 외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이를 격퇴하기 위하여, 미국은 1954년의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거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재천명하고, 또한 미국이 한국에게 계속적으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하였다.

4. 이장관과 페리장관은 북한의 핵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핵활동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북한이 IAEA 안전협정상의 재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대화의 실질적 진전이 긴요함을 공감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완전히 이행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5. 이장관과 페리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1992년의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에 따라 남북한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1953년에 체결된 군사정전협정은 남북한간의 직접 협상에 의거 영구적인 평화협정 체제로 대체될 때까지 유효하다는데 합의하였으며, 남·북한간의 군비통제 계획의 실천은 한반도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6. 이장관과 페리장관은 한·미 연합억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

의를 통하여 모든 군사적 사안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쟁 억제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지대하게 기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기여할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2단계 감축을 유보하기로 한 제25차 SCM 합의사항을 재확인하였다.

페리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한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 클린턴 대통령의 공약을 재천명하고, 주한미군의 전력 현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란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장관은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군사장비의 상호운용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였다.

7. 양측 대표단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는 데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이장관과 페리장관은 현재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부여된 지정된 한국군 부대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을 1994년 12월 1일부로 한국 합참의장에게 이양한다는 제24차 SCM 합의사항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1978년도에 작성된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TOR)의 개정안에 서명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한·미 양국 정부의 필요한 내부 절차를 완료한 후 1994년 12월 1일부로 발효된다.

양 장관은 평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 연합방위 체제는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될 것임을 강조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하여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지속적인 실시가 긴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8. 양국 대표단은 한국의 공동방위에 따른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하여 협의하고 1993년 워싱턴에서 서명된 협정(SOFA특별협정)을 재확인하였으며, 한국 정부가 1995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3억불을 지원키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장차의 새로운 방위비 분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페리장관은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 긴요한 주한미군의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9. 양국 대표단은 한·미 방산 기술협력체제가 호혜적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위하여 기존 및 추가적인 한·미 공동연구개

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전투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지지원협정(WHNS)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95년 SCM시까지 상호군수지원의 효율성 증대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정책건의를 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반도 및 한반도 주변에 배치된 미군 항공기의 한국기업 정비를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하고, FMS 판매문제, 한국내에서 생산되는 미국 원산 방산물자의 제3국 수출 등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군수협력위원회(LCC), 안보협력위원회(SCC) 및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등의 SCM 분과위원회가 SCM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공감하였다.

10. 이장관과 페리장관은 남·북한 관계가 진전될 경우 한·미 양국의 장기적인 공동 안보이익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21세기를 지향한 한·미 안보협력관계는 포괄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 관계가 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다자간 지역안보 대화는 양국의 쌍무적 안보관계를 보완하고, 클린턴 대통령의 신태평양 공동체 건설 구상을 촉진할 것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11. 이장관과 페리장관은 1992년 제24차 SCM에서 합의하여 추진해 온 「21세기를 지향한 한·미 안보협력 방향 공동연구」의 최종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장기적 안보환경을 재평가한 후 미래에도 한·미 양국의 안보협력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동 연구의 결과에 동의하고, 양국 정부의 검토를 위하여 후속연구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12. 양국 대표단은 제26차 SCM과 제16차 MCM이 한·미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의 안보협력 관계를 검토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이장관과 페리장관은 현재와 같은 상호간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다음 SCM은 1995년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13. 이 장관은 금번 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배려를 해준 미국측 대표단에게 사의를 표명하였다.

□ 국방부-한·미연합사 공동발표문

(1994. 11. 30)

- 이병태 한국 국방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 국방장관은 최근의 제2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정전시 지정된 한국군부대에 대한 연합사령관의 작전 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에게로 전환한다는 제24차 SCM의 합의사항을 확인하였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양국정부간의 필요한 내부 협조절차를 마침에 따라 1994년 12월 1일 00:00시부터 시행된다.

- 금번의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한국의 방위를 위한 미군의 주도적 역할이 지원적 역할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12월 1일부터 한국군은 한국방위를 위하여 더 큰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 지난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언급한 바와 같이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 동맹관계는 공고히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및 가까운 장래의 한반도 안보환경을 분석 평가해 볼 때 북한의 위협은 상존해 있으므로 한국정부는 전쟁을 억제하고 외부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하여 정전기간 중에 필요한 기능, 책임, 권한을 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할 것이다.

- 이러한 새로운 작전체계는 전투준비태세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전반적으로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전쟁 억제태세는 향상될 것이다.
- 한·미 양국은 평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양국간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한 단계 발전된 군사협력시대를 맞게 되었다.

□ 한·미간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번역문)

〈한국측 제안각서〉

(서울, 1994. 11. 30)

각 하

본인은 1954년 11월 17일에 서명되고 1955년 8월 12일과 1962년 1월 30일에 각각 개정된 바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합의 의사록” 및 1978년 10월 17일자 “한·미 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교환각서”와 1978년 7월 27일자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1994년 10월 7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2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정부 국방당국간에 전술한 「관련약정」의 개정에 관한 합의 결과, 유엔사령부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한·미 연합군사령관이 정전시 수행하여 온 지정된 한국군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1994년 12월 1일부로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사항을 미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1994년 10월 7일자 「관련약정」은 각하의 같은 취지의 회답각서와 함께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여 1994년 12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되며, 전술한 1978년 10월 17일자 각서와 1978년 7월 27일자 약정은 1994년 12월 1일부로 종료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미합중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미국측 회답각서〉

(서울, 1994. 11. 30)

각 하

본인은 아래와 같은 각하의 각서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미합중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각하에게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1994년 10월 7일자 「관련약정」은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오늘 날짜로 발효하여 1994년 12월 1일부로 시행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미합중국
특명전권대사

대한민국
외무장관 각하

※ 위 내용중 「관련약정」은 1978. 7. 27자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약정(권한위임사항)」의 개정 약정을 의미함.

□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방위전략」 요약

(한국일보 1995. 2. 28)

아시아 방위전략

미국은 금세기말까지 동아시아 지역에 미군을 유지할 것이다. 태평양을 사이에 둔 지리적·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에 미군의 영구기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유사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전진배치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우방과 적,

잠재적 적대세력들간의 불편부당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직한 브로커」로 남게 될 것이다.

아시아지역 주둔 미군은 지난 '90년 13만 5천명에서 지난해 10만명으로 줄었다. 주둔병력 규모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진보, 전체적인 군구조 재편 등에 의해 조정될 것이다. 그러나 지역내 필요성에 부응하고 중동이나 기타 지역에서의 전쟁발발시 대처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다.

미군이 철수하면 아시아 안보는 위태로워지고 이는 미국과 아시아에 다같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 미국이 아태지역의 성장과 번영으로부터 혜택을 얻으려면 경제·외교·군사분야 등에서 완전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와의 안보관계 유지는 동북아 안정에 핵심이다. 미국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를 지지한다.

하지만 남북한이 견해차를 해소할 때까지 휴전협정에 규정된 약속을 준수할 것이다. 휴전협정과 휴전체제는 적절한 합의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존속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보유규모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안보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10만 병력을 유지할 것이다. 한국에는 1개 사단(중무장된 2개연대와 사령부 1개 전투항공여단 포함)의 지상군과 전술비행단을 유지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계획은 이미 중단됐다. 미국은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북한의 침공을 저지하고 격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군사력을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자동적으로 즉각 개입할 것이라는 사실에 오해가 없도록 북한측에게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를 포착하게 될 경우를 대비, 결정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3만 7천여 명의 주한미군은 전쟁 억지력 향상을 위해 한국군과의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한 억지력이 필요할 경우 미군은 신속히 보강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더라도 상호 안보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강력한 안보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한국군 현대화 평가

한국군은 보다 기계화하고 기갑화된 부대조직으로 지상군의 전투력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강력하고 기동성이 뛰어난 탱크, 중거리 자주포, 장갑차, 고성능 전투기, 수송용 헬기, 해안 경비정 등의 개선으로 한국군 현대화계획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또 전투중심의 훈련이 횡수와 범위 및 부문에서 늘어나고 있다. 한미합동 기획참모단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방위비는 지난 5년간 전체 예산의 24~30%를 차지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6~4.2%에 이른다.

유사시 미군이 증파되더라도 지상군 병력은 대부분 한국이 담당할 것이다. 미국은 해·공군력과 위성첩보 등의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한국군의 방위능력 향상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자로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했다. 미국은 유사시 신속한 군사력 보강의 핵심 요소인 지속성 유지와 병참 기반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전투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지역안보체제 구축

강대국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한반도의 독특하고 장기적인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소규모 지역안보 대화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정부와 학계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안보회의에 참여해 왔다. 북한은 준비단계에서 단 한차례 참석했다.

지난해 제네바에서 타결된 북·미핵합의는 동북아안보대화에 호기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제네바 핵합의는 동북아에서 가장 현저한 안보불안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했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북한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만의 단독, 또는 다국간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할 것이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이 고립을 포기하는 경우 북·미 호혜적인 관계증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북위협에 대한 평가

북한은 경제난과 흉작에도 불구하고 군비증강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쏟고 있다. 공격형태로 배치된 지상군의 기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막강한 화력과 세계최대 특수부대를 강화하는 한편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지만 재래식 무기에 의한 위협도 감소하지 않았다.

향후 동아시아 안보전략

미국은 이 지역에서 영토확장의 야심이 없고 해상통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국가로 다국적연합을 주도할 수 있다. 미·일안보는 지역안정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한·일과의 협력으로 북한의 침공을 저지한다. 중국에 대한 「절제된 개입」정책은 장기적인 양국관계에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물론 이 지역에는 잠재적 불안요소가 상존한다. 역내국가들이 이룩한 경제적 번영은 그들의 자주의식과 자신감, 독자성 확보에 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그러나 미국이 안보공약에서 뒷걸음을 치고 있다는 우려도 가지고 있다. 이같은 독특한 여건 때문에 미군의 계속 주둔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지역안보 대화의 추진을 통한 통합노력, 아·태경제협력체(APEC)를 통한 자유무역과 투자의 확대 등을 위해서도 미군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제 냉전종식에 따른 미군감축은 끝났다. 현재로서는 전투력에 더 이상의 변화는 없다. 미국은 아시아에 10만 병력을 유지할 것이다. 미국이 21세기 태평양세력으로 남을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를 위해 신속배치군의 보강과 함께 전투력의 유연성·파괴력의 향상을 위한 현대화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주일미군 평가

주일미군은 이 지역에 대한 안보공약 이행에 결정적인(critical) 역할을 한다.

오키나와의 해병전단을 계속 유지하고 항공모함 전단과 수륙양용기동단의 전진배치를 계속할 것이다. 공군 전투비행단도 그대로 유지하고 7함대에 의한 통상 초계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일본 자위대의 결함은 해상수송로 방어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조기 공중경보와 함대함, 지대공능력의 보장이 필요하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제에도 결함이 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전역 미사일(TMD) 방어망구축을 위한 협조를 계속 요청할 것이다.

□ 국방부 보도자료, 『21세기의 새로운 동맹 : 한·미 안보협력의 미래』

(1995. 12)

연구배경 및 일정

- 1992년 10월 : 제24차 SCM에서 「21세기를 지향한 한·미 안보협력방향」 공동연구 합의
- 1993년 1월 : KIDA 및 RAND가 한·미 양국의 연구기관으로 지정
 - 연구책임자 KIDA측 차영구 박사, RAND측 Jonathan D. Pollack박사
 - 연구참여자 KIDA측 김창수, 성채기, 정춘일, 서주석, 차두현
 - RAND측 Noman D. Levin, James A. Winnefeld, Richard L. Kugler, Donald P. Henry, Kongdan Oh
- 1993년 8월 : '93 PRS시 공동연구계획 보고/승인
- 1993년 11월 : 제25차 SCM시 공동연구계획 및 1차연도 연구경과 보고
- 1994년 9월 : '94 PRS시 연구결과 보고
- 1994년 10월 : 제26차 SCM시 공동연구 최종결과 및 정책건의 보고
- 1995년 12월말 : 공동보고서(A New Alliance for the Next Century : The Future U. S.-Korean Security Cooperation) 발간

공동연구 목적 및 주요 전제사항

▲ 연구목적

- 장기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발전방향 설정·분석
- 21세기를 지향한 연합방위의 미래 기획구상을 한·미 양국정부에 제공
-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양국 정부가 고려하여야 할 정책상의 주요사안들을 부각

※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긴급사태 포함)가 일어날 경우에도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한·미 안보협력의 대안 설정

▲ 기본전제사항

- 통일이후에도 한·미 동맹은 양국 모두에 긴요한 존재
-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 현재의 동맹구조 유지는 한·미 양국의 국가이익을 위하여 필수적
- 현 단계에서 남북한 관계의 변화전망이 불투명하기는 하나, 한·미 양국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공동기획을 시작할 필요
- 향후 도래할 시기는 냉전시대보다 더 큰 불확실성과 잠재적 불안정성을 내포

▲ 장기 한·미동맹관계 유지의 전략적 필요성

- 동맹의 성격과 변화

위협대처 동맹

→

통합추진 동맹

→

이익창출 동맹

- 공동의 국가목표
 - 북한의 남침억제 및 격퇴,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평화적 통일과정 보장
 - 지역의 안정·평화유지, 지역 패권세력 부상 방지
- 한·미동맹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
 - 적은 비용의 효과적 국방, 통일과정의 안정적 관리, 동북아의 세력 균형

- 지역 평화유지 기능 수행, 지역분쟁 예방, 경제적 번영 보장
- ※ 장기적 차원에서 통일한국과 미국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할 기회 마련

○ 연구방법

- 2단계 접근

• 제1단계 : 한·미 안보관계의 발전 전망 및 미래 안보협력의 결정변수 식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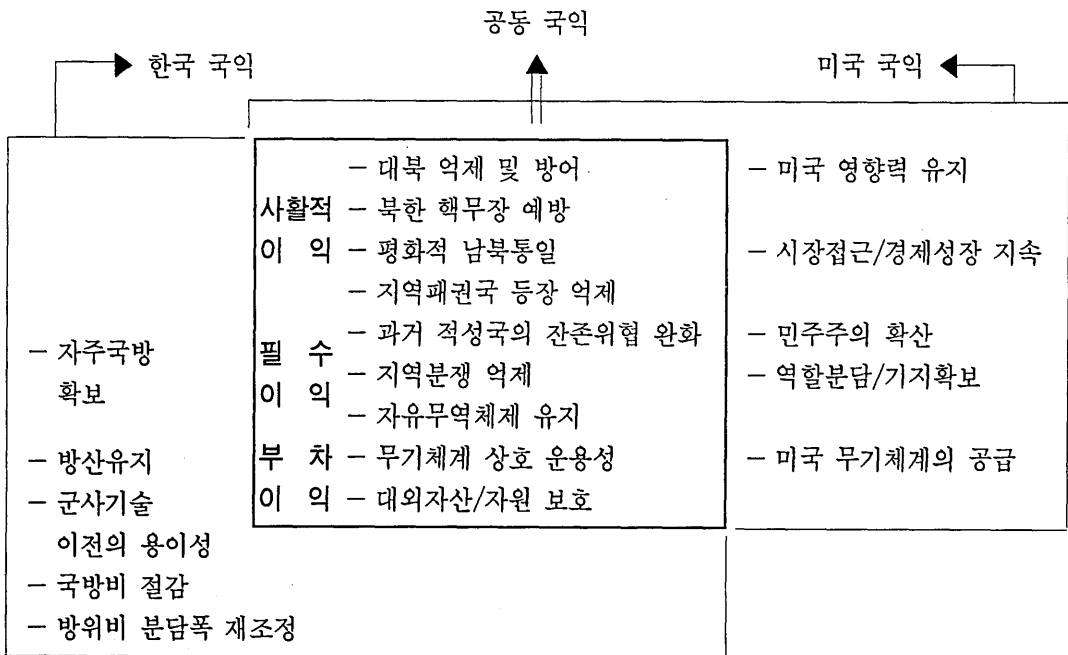
• 제2단계 : 한·미 안보협력 대안모형 설정 및 평가 →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발전방향 건의

- 한반도 내외 안보환경 관련 “기본가정”하 연구실시 (Assumption-Based Planning, ABP)

- 남북한관계를 3단계로 시기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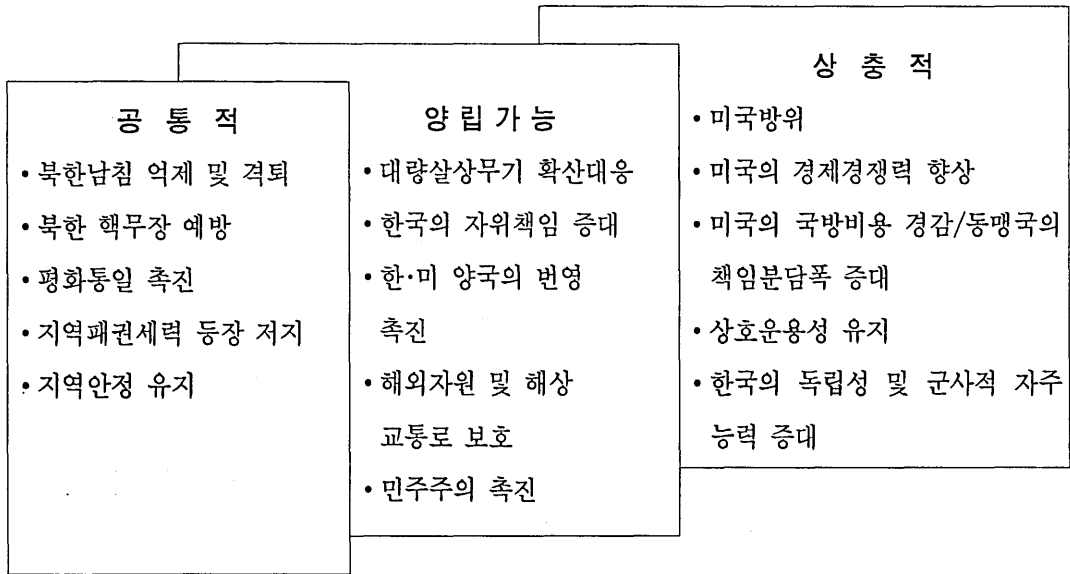
한·미 안보이익과 목표

▲ KIDA측 시각



※ 한반도 통일과정 진입에 따라 한·미 국익상의 차이점 표출 예상

▲ RAND측 시각



한·미 안보협력 대안 설정

▲ 남북한관계의 3단계(Three Phases)

- 제1단계 : 현상유지(The Status Quo)
- 제2단계 : 화해 및 통합(Accommodation and Intergration)
- 제3단계 : 통일이후(Post Unification)

▲ 안보협력 대안(Security Alternatives)

● 대안1 : 한반도 방위동맹(Robust Peninsular Alliance)

- 북한 도발의 억제 및 억제실패시 방어를 위한 한·미 양국의 긴밀한 군사 동맹 지속
- 북한 군사위협이 지속되는 한 견고한 전진방위에 최우선적 관심
-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한국의 책임과 작전지휘의 자주적 점진적 증대 예상
- 미국은 한국내에서 소요되는 지상·공군력의 한국배치와 특수 역할 및 임무에 초점

- 한국은 북한의 도발을 격퇴하기 위한 지상작전역할에 초점
- **대안2 : 증원대기 안보동맹(Reconfigured Peninsular Alliance)**
 - 한반도 방어 중심, 한국군이 1차적 책임
 - 동맹은 주로 위기관리와 유사시 재구축(reconstitution)에 중점
 - 주한미군은 미 본토 신속증원전력 수용/지원을 위해 주둔
 - 한국군은 한반도 방위동맹하에서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나, 국가방위에 대한 책임은 더욱 증대
- **대안3 : 지역 안보동맹(Regional Security Alliance)**
 - 쌍무 동맹관계에 추가하여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역할 및 임무 확대를 위한 협력
 - 주한미군은 주로 한반도 이외지역의 사태에 대한 신속대응 기능 수행
 - 전력배합 및 구조는 전략개념과 작전 소요에 따라 다양화
 - 미 본토 전력 중심형(CONUS-centered regional alliance)
 - 분산형(Distributed regional alliance)
 - 한반도 주둔전력 중심형(Peninsula-centered regional alliance)
 - 한국의 역할 및 임무는 지역 안보동맹의 유형에 따라 다양
- **대안4 : 정치적 동맹(Political Alliance)**
 - 상호방위조약 유지하 정치적 협의 지속
 - 주한미군은 상징적 의미의 수준에서 주둔

한·미 안보협력 대안 평가

▲ **대안평가기준(Criteria for Evaluation)**

- 안보협력 대안들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기준 설정(각 10개씩의 평가기준 설정)
 - 적합성(Suitability) : 국가목표에 대한 부합 정도
 - 실행가능성(Feasibility) : 국내상황 및 예상되는 동북아 지역의 현실을 감안한 목표의 실현가능성 전망

- 유연성(Flexibility) : 예상정책의 반전, 가정실패와 관련한 견고성/적응성
- ⇒ 4가지의 대안(한반도 방위동맹/증원대기 안보동맹/지역 안보동맹/정치적 동맹)들을 3개 단계(현상유지/화해 및 통합/통일이후)에 따라 비교·평가
- 적합성, 실현가능성, 유연성은 각 10개 세부기준(Subcriteria)으로 나뉘어짐
- 평가지(Assessment Matrix) 양식 예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

기 본 평가기준	제1단계 현상유지	제2단계 화해/통합	제3단계 통일이후
적합성 (국가목표 부합정도)	평가1	평가2	평가3
실현가능성 (설정목표 달성가능성)	평가4	평가5	평가6
유연성 (견고성/상황 변화 대처)	평가7	평가8	평가9

제3단계 대안별 유연성 평가
대안1 대안2 ... 대안4

세 부 평가기준	KIDA	RAND	KIDA	RAND	KIDA	RAND
1						
2						
:						
총H/M/L*						

- *)H(High) : 만족도 높음
- M(Medium) : 중간정도의 만족도
- L(Low) : 만족도 낮음

▲ KIDA 및 RAND 평가결과

- 각 연구팀 구성원들의 평가를 점수화·합산 → 양팀간 비교
- 각 단계별로 대안의 차별성·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나타났고, KIDA와 RAND측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같았음
- 제1단계(현상유지)에서는 「한반도 방위동맹」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KIDA-RAND팀은 이에 대해 의견일치
- 제2단계(화해 및 통합) 이후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는 「지역 안보동맹」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음

※ 〈단계별 대안 우선순위〉

	한반도 방위동맹		증원대기 안보동맹		지역 안보동맹		정치적 동맹	
	KIDA	RAND	KIDA	RAND	KIDA	RAND	KIDA	RAND
제1단계 : 현상유지	①	①	3	3	②	②	4	4
제2단계 : 화해 및 통합	3	②	②	3	①	①	4	4
제3단계 : 통일이후	4	3	②	②	①	①	3	4

한·미 안보협력관계 전환경로

▲ KIDA-RAND 양 팀은 4개의 주요 전환경로(Transition Paths)에 합의

- 상황 : 현재 ⇒ 화해와 통합 ⇒ 통일이후
 - 전환경로1 : 한반도 방위동맹 ⇒ 한반도 방위동맹 ⇒ 증원대기 안보동맹
 - 전환경로2 : 한반도 방위동맹 ⇒ 과도적 한반도/지역 안보동맹 ⇒ 지역 안보동맹

- 전환경로3 : 한반도 방위동맹 ⇒ 증원대기 안보동맹 ⇒ 지역안보동맹
- 전환경로4 : 한반도 방위동맹 ⇒ 증원대기 안보동맹 ⇒ 정치적 동맹
- 각 전환경로는 상황에 따른 안보협력대안과 정책의 선택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전환경로에 제시된 단계별 안보협력 대안은 경직된 순서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전환 경로는 불확실성과 변화하는 여건하에서 양국이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선택의 제시에 초점

▲ 전환경로 #1 : 한반도 방위동맹→한반도 방위동맹→증원대기 안보동맹

	제1단계 : 한반도 방위동맹	제2단계 : 한반도 방위동맹	제3단계 : 증원대기안보동맹
전략개념	한반도 연합방위	→	전력재구축, 위기관리
군사관계	미국주도/CFC체제	→	병렬 지휘체제 확립
미국역할 및 책임	한국의 전진방어 지원, 해양안보, 해외 전력증원	→	근본적으로 유사하나 수준 약화
한국역할 및 책임	지상작전역할 중심, 주둔국 지원 제공	→	지상작전역할 증대, 주둔국 지원 감소
기타체제	기존체제	→	폐쇄/재조정
방위분담	한국측 비용분담 유지	→	주한미군 축소에 따라 한국측 비용분담 감소

- 장점 : 각 단계 모두에서 한반도 방위에 집중함으로써 기존과 유사한 방위목적 최대한 달성 가능, 통일과정의 불안정성 대비에 유리
- 단점 : 2단계 이후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부족, 급격한 한·미 동맹의 약화초래 위험
- ⇒ 통일과정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불확실한 한반도 안보현황이 지속될 경우 고려가능한 전환경로

▲ 전환경로 #2 : 한반도 방위동맹→과도적 한반도/지역 안보동맹→지역안보 동맹

	제1단계 : 한반도 방위동맹	제2단계 : 과도지역안보동맹	제3단계 : 지역안보동맹
전략개념	한반도 연합방위	한국방위 위주, 부분적 지역안보 참여	한국방위, 지역안보 병행
군사관계	미국주도/CFC체제	개별지휘/지역임무 추가	개별지휘/한미 지역사
미국역할 및 책임	한국의 전진방어 지원, 해양안보, 해외 전력증원	한반도 방위에 80%, 지역안보에 20%(예)	지역분쟁시 전력 투사, 한반도내 제한적 역할
한국역할 및 책임	지상작전역할 중심, 주둔국 지원 제공	지상작전 역할 증대, 제한적 지역활동 참여	한국방위에 추가, 지역 분쟁시 기지/전력 제공
기타체제	기존체제	부분적 폐쇄/재조정	전면 조정 완료
방위분담	한국측 비용분담 유지	비용분담 유지, 방위책임분담 추가	주한미군 규모에 따라 비용분담/방위책임 분담

※ 현실적 우려와 장기적 발전방향을 모두 고려한 균형잡힌 전환경로로 평가

- 장점 : 2단계에서 방위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상황변화에 유연한 대처 가능, 3단계에서는 한·미의 장기국익을 융통성 있게 고려 가능
 - 단점 : 2단계에서 전환기적 주한미군의 역할과 전력구성에 대한 한·미간 이견발생 가능
- ⇒ 전반적으로 잠재적 위험과 장기적 사태진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전환경로. 단, 미래동맹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구체화 작업 필요

▲ 전환경로 #3 : 한반도 방위동맹→증원대기 안보동맹→지역안보동맹

	제1단계 : 한반도 방위동맹	제2단계 : 증원대기안보동맹	제3단계 : 지역안보동맹
전략개념	한반도 연합방위	전력재구축, 위기관리	한국방위, 지역안보, 병행
군사관계	미국주도/CFC체제	병렬 지휘체제 확립	개별지휘/광역지역사
미국역할 및 책임	한국 전진방어 지원, 해양안보, 해외 전력증원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수준 약화	지역분쟁시 전력 투사, 한반도내 제한적 역할
한국역할 및 책임	지상작전역할 중심, 주둔국 지원	지상작전역할 증대, 주둔국 지원 감소	한국방위에 추가, 지역 분쟁시 기지/전력 제공
기타체계	기존체계	폐쇄/재조정	전면조정
방위분담	한국측 비용분담 유지	주한미군 축소에 따라 한국측 비용분담 감소	주한미군 규모에 따른 비용분담/방위책임 분담

- 장점 : 2단계에서 유연성 있는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 및 주변국의 지지 획득 가능, 한·미 양국과 주변국의 이익이 조화된 지역안보체제 형성 가능
- 단점 : 2단계에서 주한미군의 급속감소 요인으로 작용 가능
⇒ 남북한 관계의 안정적 변화시 고려가능하나, 미군 역할에 대한 불확실성 초래 위험

▲ 전환경로 #4 : 한반도 방위동맹→증원대기 안보동맹→정치적 동맹

	제1단계 : 한반도 방위동맹	제2단계 : 증원대기안보동맹	제3단계 : 정치적동맹
전략개념	한반도 연합방위	전력재구축, 위기관리	고위급 정치안보 협의
군사관계	미국주도/CFC체제	병렬 지휘체제 확립	한국 독자방위, 전시증원
미국역할 및 책임	한국 전진방어 지원, 해양안보, 해외 전력증원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수준 약화	상징적 전력 주둔, 주기적 합동훈련
한국역할 및 책임	지상작전역할 중심, 주둔국 지원	지상작전역할 증대, 주둔국 지원 감소	한반도 방위에 대하여 거의 모든 책임
기타체계	기존체계	폐쇄/재조정	전면조정 완료
방위분담	한국측 비용분담 유지	주한미군 축소에 따라 한국측 비용분담 감소	전면폐지

- 장점 : 한국의 군사적 독자성 제고, 미국의 비용 절약
 - 단점 : 한·미 연합방위 노력에 상당한 위험 초래, 지역 세력균형의 중대한 불확실성 초래 가능, 미래 한·미간의 정책협조 훼손
- ⇒ 장기 한·미국가이익을 고려할 때 가장 부적절한 전환경로로 판단

결론 및 정책 건의

- 현재의 안보상황하에서는 견고한 「한반도 방위동맹」이 최선의 대안임을 한·미 양국이 재삼 인식할 필요
 - 북한의 불안정성 감안, 현재의 한·미 동맹은 한반도 안보와 안정유지에 필수적 존재
- 현재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주한미군 배치와 동맹개념의 변화는 시간표와 스케줄을 수립하여 경직되게 추진되어서는 안됨
 - 미래 동맹관계의 변화는 시간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 및 여건 변화에 따라야 함
-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변화 시나리오를 감안한 기획구상을 해야 할 필요
 - 북한체제의 급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더 나아가, 북한위협이 소멸된 이후를 대비한 구상 필요 : 미군의 한국내 지속적 주둔을 상정할 경우 그 임무는 무엇인가?
 - 미국으로 철수할 전력의 종류
 - 새로운 전략적/군사적 소요에 부응하기 위한 잔여 미군병력 재구성 방법(예 : 경량화/기동화)
 - 미국 해군력의 배치/기지에 관한 선택
 - 조정된 안보협력관계하에서 한국측의 기여방향
- 불확실성 및 잠재적 위협이 점증하는 시기에 대비, 한·미 동맹에 대한 새로운 전략개념을 개발할 필요
 - 위협대처 동맹(Threat-driven Alliance) → 통합추진 동맹(Integration-driven Alliance) → 이익창출 동맹(Profit-generating Alliance)

3. 참고 문헌·자료(무순)

- 김학준, “한국 정전협정의 성립과정”,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 1987)
- 국방정부본부, 『군사정전위 편람』 (1986)
- 『주한미군과 한반도 평화통일』: 경희대 국제평화연구소 학술토론회, 1996.
6. 13
 - 이기종, 「주한미군과 한반도 평화」
 - 류재갑, 「주한미군과 한반도 통일」
 - 구종서, 「주한미군과 동북아 평화」
- 강성철, 『주한미군』, 일송정, 1988
- 민중출판사 한국문제연구반, 『주한미군 문제』(민중출판사: 스위스 제네바, 1990)
- 하영선,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청계연구소, 1988
- 강성학외 4인, 『주한미군과 한·미 안보협력』, 세종연구소, 1996
- 오관치외 2인, 『한·미 군사협력관계의 발전과 전망』, 세계사, 1990
- 국방부, 『국방백서』, 1992~1997
- 유인택, 『한반도 군사문제의 이해』, 법문사, 1996
- 통일원, 『남북한 군사문제 쌍방 주요쟁점 자료집』, 남북회담사무국, 1995
- 통일원, 『남북간 군사문제 주장비교』, 남북회담사무국, 1993
- 국토통일원, 『한반도 군축과 평화』, 1989
 - 남주홍, 「한반도 긴장완화와 주한미군 철수」

- 한국국방연구원, 『한·미 안보관련 협정 요약집』, 1991
- 한국국방연구원, 『한·미안보 관계의 장래』(제1회 국제국방학술회의), 1988
- 국방대학원,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미의회보고서』, 1979
-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정보재평가』
(해외자료 제50호), 1979
- 맹기호, 「미국의 대한안보정책의 분석과 향후 전망」, 경희대 교육대학원,
1991
- 편동수, 『군비통제 그 인식의 새 지평』 참샘, 1992
- 외교안보연구원, 『주한미군의 장래와 한국의 안보』세미나, 1990
 - 박경서, 「주한미군의 장래와 한국의 안보」
 - 김국진, 「주한미군의 장래와 한국안보의 당면과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남북한 군비경쟁과 군축』, 1992
 - 곽태환, 「주한미군의 감축과 남북한 평화정책」
- 한국국방연구원, 『주한미군 주둔정책의 변화가능성과 대비책』세미나, 1990
 - 안병준, 「주한미군 주둔정책 변화의 전망」
 - 박용욱, 「주한미군 위상변화에 따른 안보적 대책」
 - 오관치, 「주한미군의 위상변화에 따른 군사적 대책」
- 이삼성,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당대, 1995
- 서주석, 「21세기 한국의 국익과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조정방향」, 『국방논
집』제33호 (1996. 봄)
- 하영선(편), 『한반도 군비경쟁의 재인식』, 인간사랑, 1988

1996년 11월 12일

40부 발간

발간업체	삼신인쇄주식회사			
대표자	대표이사 현 효 선			
전화번호	337-0014			
인가근거	조내 3. 510-20036('84. 5. 1)			
제목	주한미군 및 작전통제권 문제 현안과 쟁점			
발간부서	남북회담사무국 군사회담과			
참여자	직급	5급	성명	서정배

